

말레이시아

제조부문에의 투자 안내



투자유치정책, 장려정책 및 편의시설 ■

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저작권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전자, 사진 복사, 기록, 기타 어떠한 수단이나 형태로든 복제하거나 정보검색시스템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MIDA는 본 안내책자의 제작 시 모든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MIDA는 본 안내책자의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MIDA
웹사이트 www.mida.gov.my
를 방문하십시오.

©MIDA - All rights reserved



■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MIDA) 사무소의 위치

위치

말레이시아는 바로 적도 근처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11 개의 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대륙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자치 주인 사바주와 사라왁주는 각각 보르네오섬의 북부 해안과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The image shows a tall, modern glass skyscraper with a grid-like facade. At the top of the building, a large sign displays the MIDA logo in blue and red. The sky is a vibrant blue with scattered white clouds. A construction crane is visible on the roof of th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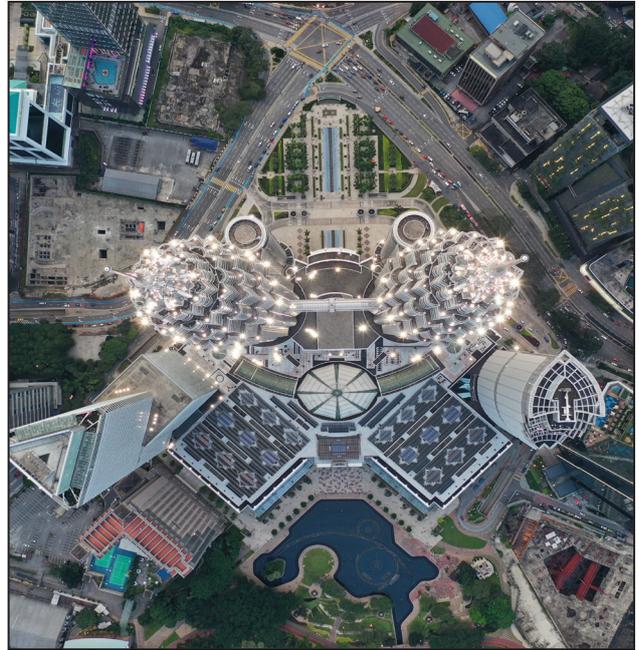
MIDA

말레이시아의 투자진흥청(MIDA)은 말레이시아 정부 국제통상산업부(MITI) 산하의 주요 투자 진흥 개발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내의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독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센트럴에 본부를 둔 MIDA는 12개 지역 사무소와 21개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MIDA는 이 시대의 기술 혁신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계속 기업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ida.gov.my를 방문해 보시고 Twitter, Instagram, Facebook, LinkedIn, Tiktok 및 YouTube 채널에서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번창하는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략적 위치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양과 남중국해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모든 주요 항공 노선 및 해운 노선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경제 기반, 포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 미래 지향적인 주안점 및 역동적이고 숙련된 노동력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는 이 지역에서 매력적이고 비용 경쟁력이 있는 투자처이며 공유 서비스 및 선두적인 기술 산업을 위한 선호받는 센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330,000 km²
(127,000 m²)

인구



인구
3,270만
(2020e)

통화



링깃 말레이시아(RM)
100 sen으로 나뉘어짐

주요 언어



비즈니스 영어가 널리 사용됨. 다국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영어, 북경어, 힌디어 및 타밀어에 능통합니다.

기후



열대성 기후로 일년 내내 따뜻하고 화창합니다. 일일 온도 범위는 늦은 저녁의 33°C (90F)에서 22°C까지입니다.

정부 시스템



의회 민주주의
입헌 군주제

주요 개 주



13개 주와 3
개 연방 준주로
이루어진 국가

주요 종교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 회교, 불교, 기독교 및 힌두교가 널리 실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

말레이시아는 고도로 다각화된 경제 및 수출 구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동 시장, 낮고 안정된 인플레이션, 튼튼하고 자금 공급이 원활한 금융 부문, 그리고 국제 수지 대비 건전한 경상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기업은 3,270만 명의 현지 시장과 그리고 6억 명이 넘는 아세안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펼칩니다.

2021년도의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지향적인 제품으로는

1. 전기 및 전자 제품
2. 석유 제품
3. 고무 제품
4. 화학 물질 & 화학 제품
5. 금속 제조품
6. 팜 오일
7. 기계류, 장비 및 부품
8. 광학 및 과학 장비
9. LNG
10. 팜 오일 기반 제조 제품

역동적이고 숙련된 노동력

말레이시아의 훈련 가능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다국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노동력으로 구성된 인재 풀은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의 기반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20개의 공립 및 50개가 넘는 사립 3차 교육 기관(대학 및 직업 교육 과정)이 있으며, 이에 덧붙여 말레이시아의 인재 풀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여러 정부 부처 산하에 설치된 1,400개가 넘는 기술 및 직업 교육 훈련(TVET) 대학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노동력은 주로 총 인구의 18%인 280만 명에 달하는 25-29세 사이의 젊은 인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뒤 이어 30-34세 사이 및 35-39세 사이의 나이 집단이 각각 15.8%와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총 1,570만 명의 근로자 인재 풀이 있으며, 노동력에서 910만 명이 남성이고 580만 명이 여성입니다. 노동력의 최대 4.8%가 3차 교육을 받았으며, 노동력의 28.2%가 숙련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의 다인종 구성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노동력은 다국어를 구사하며, Bahasa Malaysia(말레이시아 공식 언어), 영어, 표준 중국어 및 타밀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됩니다.

통화 및 금융 시스템

말레이시아의 공식 통화는 링깃 말레이시아(RM)이며 100센(sen)으로 나뉘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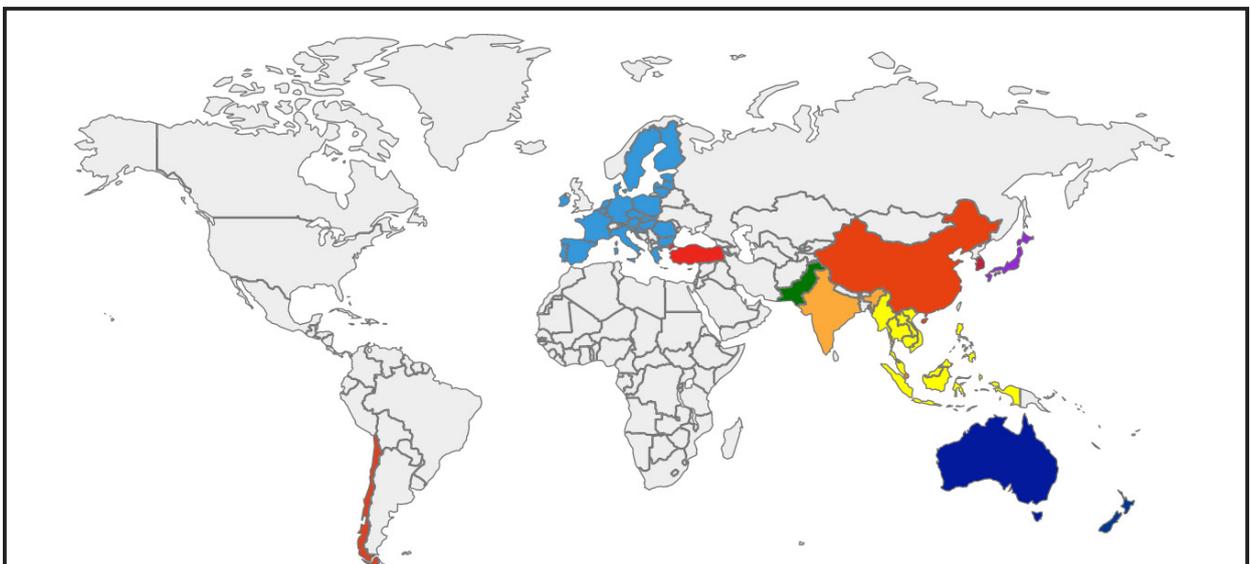
링깃 환율은 거래 가중 통화 바스켓에 대해 유동적 관리 체제에서 작동합니다.

무역 파트너십

2021년 전 세계 말레이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는

1. 아세안
2. 중국
3. 미국
4. EU
5. 일본

또한 말레이시아는 총 16개 국가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들 가운데 다음을 포함하여 14개 FTA를 이행했습니다.



양자 FTA

- 말레이시아 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MJEPA)
-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보다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MPCEPA)
-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MNZFTA)
- 말레이시아 인도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MICECA)
- 말레이시아 칠레 자유 무역 협정(MCFTA)
- 말레이시아 호주 자유 무역 협정(MAFTA)
- 말레이시아 터키 자유 무역 협정(MTFTA)

- 아세안-인도 자유 무역 협정(AIFTA)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AANZFTA)
- ASEAN-홍콩 자유 무역 협정(AHKFTA)

또한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은 협정 서명국이기도 합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관계를위한포괄적점진적협정(CPTPP)

그리고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역 FTA

- 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AFTA)
- 아세안-중국 자유 무역 협정
- 아세안-한국 자유 무역 협정(AKFTA)
-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AJCEP)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위상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최고로 부상하는 투자 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필요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응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위

동남아시아의 무역과 연결성

(DHL 글로벌 연결성 지수 2020)

2위

아세안 지역 내 사업 용이성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20)

2위

소액 투자자 보호 용이성

(글로벌 혁신 지수 2021,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WIPO)

2위

투자자 보호

(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 2020)

4위

제조 허브로서 가장 경쟁력 높음(17개 경제 국가 중)

(제조 운영 비용, KPMG 및 The Manufacturing Institute, 2020)

5위

2021년도 가장 매력적인 신흥 시장

(블룸버그, 2020)

6위

인재 채용 가능성

(글로벌 인재 경쟁력 지수 2020, GTCI 2020)

13위

클러스터 개발 현황 및 심도

(글로벌 혁신 지수 2021,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WIPO)

25위

대학과 산업의 연구 협력

(글로벌 혁신 지수 202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목차

제1장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설립	13	1.5.4 PENJANA에 따른 추가 RA	24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4	1.5.5 가속 자본 공제	25
1.1 1975년의 산업조정법	14	1.5.6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25
1.2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14	1.5.7 그룹 조세 감면	25
		1.5.8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	25
2.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등록	14	2.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25
2.1 단독소유기업 및 파트너회사의 등록	14	2.1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5
2.2 회사의 등록	14	2.2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6
2.2.1 회사의 유형	15	2.3 조선 및 선박 수리(SBSR)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6
2.2.2 유한주식회사	15	2.3.1 조선 및 선박 수리(SBSR)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26
2.2.3 회사 설립 절차	15	2.4 기계류 및 장비(M&E)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7
2.2.4 MyCoID	15	2.5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27
2.2.5 고객 현장	15	2.6 생명공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반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7
2.2.6 국내 설립 법인의 요건	16	2.6.1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27
2.3 외국 회사의 등록	16	2.6.2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 기반의 자금 조달	28
2.3.1 등록 절차	16	2.7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28
2.4 유한 책임 파트너회사 (LLP)	17	2.7.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28
2.4.1 LLP의 특징	17	2.7.2 농업 생산물(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28
2.4.2 LLP는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17	2.7.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29
2.4.3 등록 절차	17	2.7.4 농업 및 자원 기반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9
2.4.4 LLP로의 전환	17	2.8 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오일 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31
2.4.5 LLP의 요건	18		
2.5 E-서비스	18	3.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31
3.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관련 지침	18	3.1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31
4. 대표 사무소(RE)/지역 사무소(RO)의 설립	19	3.2 녹색 기술 인센티브	31
4.1 대표 사무소(RE)	19	4.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32
4.2 지역 사무소(RO)	19	4.1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33
		4.2 연구 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34
제 2 장		5. 교육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34
OBTENTION D'INCITATIONS AUX ET DE SERVICES DE FACILITATION POUR VO	21	5.1 근로자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34
1. 일반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22	5.2 채용 전 교육 훈련에 대한 공제	34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22	5.3 비직원 교육 훈련에 대한 공제	35
1.1.1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22	5.4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35
1.1.2 투자세 공제	22	5.5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35
1.1.3 1986년의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를 '열망하는'의 정의	22	5.6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35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22	5.7 인적 자원 개발 기금(HRDF)	35
1.3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23	5.8 승인받은 교육 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35
1.4 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3	5.9 구조적 인턴 프로그램(SIP)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35
1.5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24	6. 자동화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35
1.5.1 재투자 공제	24	6.1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본 공제	35
1.5.2 PENJANA(국가경제회복계획)에 따른 특별 조세 인센티브	24	6.2 스마트 자동화 보조금 (Smart Automation Grant, SAG)	35
1.5.3 PENJANA(국가경제회복계획)에 따른 제약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4		

목차

7. 기타 인센티브	36	7. 판매세 및 서비스세	45
7.1 산업용 건물 공제(IBA)	36	7.1 판매세	45
7.2 MSC Malaysia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IBA)	36	7.1.1 판매세 세율	45
7.3 감사 수수료 공제	36	7.2 서비스세	45
7.4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36	7.2.1 과세 가능한 서비스	45
7.5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36	7.2.2 과세	46
7.6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37	7.2.3 서비스 세율	46
7.7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	37	7.2.4 신용카드 및 고객카드에 대한 서비스 세율	46
7.8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37	8. 수입 관세	46
7.9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37	9. 소비세	46
8. 서비스 부문에 대한 촉진 및 인센티브	38	10. 이중과세방지협약	46
8.1 지역 운영 사무소	38	제4장	
8.2 연구 개발(R&D)	38	말레이시아 입국 및 취업	49
8.3 석유 및 가스(O&G) 서비스	38	1. 말레이시아 입국 요건	50
8.4 접객 서비스	38	1.1 비자 또는 여행 서류	50
8.5 교육 및 산업 교육 훈련 서비스	38	1.2 비자 요건	50
8.6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38	1.3 방문비자(Pass) 요건	50
8.7 물류 및 공급망 서비스	38	1.3.1 단기(단순) 방문비자	50
8.8 환경 관리	38	1.3.2 장기(단순) 방문비자	51
8.9 IP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38	1.3.3 (단기 취업) 방문비자	51
8.10 디지털 서비스	39	1.3.4 취업 방문비자	51
8.11 기타 서비스 산업	39	1.3.5 전문직 방문비자 (PVP)	51
제 3장		1.3.6 동반 방문비자	51
말레이시아의 법인세 납부 의무의 최적화	41	1.3.7 학생 방문비자	51
1. 말레이시아의 조세 제도	42	2. 해외 주재원의 취업	51
2.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42	2.1 해외 주재원의 보직 유형	52
3. 법인세	42	2.1.1 주요 보직	52
3.1 거주자 지위	42	2.1.2 한시 보직	52
3.2 소득세 세율	42	2.2 해외 주재원의 고용 지침	52
3.3 세금의 징수	42	3.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	53
3.4 세금 징수	42	3.1 MyFutureJobs	53
4. 개인소득세	43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54
4.1 거주자 지위	43	제5장	
4.2 거주자 개인의 세율	43	말레이시아의 산업 인력	57
4.2.1 인적 공제	43	1. 인력 개발	58
4.2.2 세금 환급	44	1.1 산업 기능 훈련 시설물	58
4.3 비거주자 개인	44	1.2 인적자원개발공사(HRDC)	59
5. 원천징수세	44	2. 노동 비용	59
6. 부동산 양도소득세	44	3. 취업 알선 시설	60

목차

4. 노동 기준	60	5.2.2 역내 및 역외 차입	75
4.1 1955년의 고용법	60	5.2.3 결제 및 수령	75
4.2 사바주(Sabah)의 노동 조례와 사라왁주(Sarawak)의 노동 조례	60	5.2.4 외환(FX) 헤지	75
4.3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EPF)	60	5.2.5 외화 계정	75
4.4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61	제7장	
4.5 1952년의 근로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952)	63	지적재산권 보호	77
4.6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63	1. 특허	78
5. 노사관계	64	2. 상표	78
5.1 노동조합	64	3. 산업 디자인	78
5.2 1967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65	4. 저작권	78
5.3 노조가 없는 단체의 관계	65	5. 집적회로(IC)의 배치 설계	79
제6장		6. 지리적 표시	79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67	7. 지적소유권 평가	79
1. 말레이시아의 금융 시스템	68	8. 지적소유권 금융	79
1.1 중앙은행	68	9. 지적재산권 시장	79
1.2 금융 기관	68	10. 지적재산권 개발 인센티브화	79
1.2.1 이슬람 금융 산업	68	제8장	
1.2.2 개발 금융 기관(DFI)	69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83
2. 수출 신용 재금융-i (EXPORT CREDIT REFINANCING-i)	70	1. 환경 정책	84
2.1 금융 지원 방법	70	2. 환경적 요건	84
2.2 금융 지원 기간과 마진	70	2.1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84
2.3 상황	70	2.2 부지 적합성 평가	88
3. 말레이시아의 자본 시장	71	제9장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71	기본시설 관리	91
3.2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	71	1. 산업 부지	92
4. 라부안 금융 서비스 (LABUAN FINANCIAL SERVICES)	73	1.1 산업 단지	92
4.1 라부안 금융서비스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abuan FSA)	73	1.2 자유지역	92
4.2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 내 사업 운영	73	1.2.1 자유상업지역(FCZ)	93
4.3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의 사업 활동	74	1.2.2 자유산업지역(FIZ)	93
5. 외환 관리 정책	74	1.3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	93
5.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74	2. 전력 공급	93
5.1.1 말레이시아 내 투자	74	3. 용수 공급	93
5.1.2 국내 금융 접근성	74	4. 통신 서비스	94
5.1.3 결제 및 수령	74		
5.1.4 외환(FX) 헤지	74		
5.1.5 링깃화 및 외화 계정	74		
5.2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74		
5.2.1 외화 자산 투자	74		

목차

5. 항공 화물 시설	94	부록	
6. 항만 시설	94	부록 I	125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7. 화물 운송	95	부록 II	129
7.1 컨테이너 운송	95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7.2 화물 운송 대형	95		
8. 고속도로	95	부록 III	131
9. 철도 운송 서비스	95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10. 디지털 인프라	95	부록 IV	133
제10장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기타 투자 촉진 기관	101	부록 V	135
1.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	102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2. 동부해안경제지역개발위원회(ECERDC)	102		
3. 할랄개발공사(HDC)	102		
4. InvestKL	102		
5. 이스칸다르지역개발청(IRDA)	102		
6.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	102		
7. 북부회랑시행국(NCIA)	103		
8. 지역회랑개발청(RECODA)	103		
9. 사바 경제 개발 투자청(SEDIA)	103		
유용한 연락처	105		
행정 부서	106		
관련 기관	108		
MITI 해외 지부	110		
MIDA 해외사무소	111		
MIDA 주 사무소	114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MATRADE) 해외사무소	116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주 사무소	122		

제 1 장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설립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 1.1 1975년의 산업조정법
- 1.2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2.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등록

- 2.1 단독소유기업 및 파트너회사의 등록
- 2.2 회사의 등록
 - 2.2.1 회사의 유형
 - 2.2.2 유한주식회사
 - 2.2.3 회사 설립 절차
 - 2.2.4 MyCoID
 - 2.2.5 고객 현장
 - 2.2.6 국내 설립 법인의 요건
- 2.3 외국 회사의 등록
 - 2.3.1 등록 절차
- 2.4 유한 책임 파트너회사 (LLP)
 - 2.4.1 LLP의 특징
 - 2.4.2 LLP는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 2.4.3 등록 절차
 - 2.4.4 LLP로의 전환
 - 2.4.5 LLP의 요건
- 2.5 E-서비스

3.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관련 지침

4. 대표 사무소(RE)/지역 사무소(RO)의 설립

- 4.1 대표 사무소(RE)
- 4.2 지역 사무소(RO)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설립

말레이시아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사업체들이 있어 사업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살펴본든 전적으로 제조 시설 설립에 전념하든 말레이시아에는 당신의 비즈니스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1 1975년의 산업조정법

1975년의 산업조정법(ICA)에 따라 제조회사는 제조업 허가증을 신청하여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제조회사의 자본금이 RM250만 이상이거나 또는 상근 유급 직원이 75명(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조정법(ICA)은 국가 제조 부문의 질서 정연한 발전과 성장을 유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제조활동”(Manufacturing activity)이라 함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송 또는 폐기 등과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무리 처리 또는 여타 방식으로 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도 포함되긴 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업과 관련된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Shareholders' funds)이라 함은 회사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적립금(reserves), 주식 프리미엄 계정(share premium account)의 잔액, 손익처분 계정(profit and loss appropriation account)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은 우선주(preferred share)와 보통주(ordinary share)를 말합니다.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적립금(reserves)이란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 그리고 감가상각, 갱신 또는 교체 그리고 자산 가치의 감소 등에 대비한 준비금 등을 제외한 적립금을 말합니다.
- “상근 유급 직원”이라 함은 통상 하루에 6시간, 한달에 최소 20일, 연 12개월 동안 근무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는 출장 영업, 엔지니어링, 유지 관리 및 수리 담당 직원으로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통제를 받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에는 또한 법인의 이사도 포함되나, 이사회 참석만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제외됩니다.

1.2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관련 정부의 지침은 다음의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 ✓ 프로젝트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CIPE)가 최소한 RM140,000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 ✓ 회사의 총 상근 인력의 80% 이상이 말레이시아인이어야 합니다. 외주 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현재의 정책에 저촉받으며, 또한
- ✓ 관리직, 기술직 및 감독직 직급(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levels, MTS)의 총 숫자가 전체 직원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최소한 40% 이상의 부가 가치(VA)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생산 용량의 확대 및 제품의 다변화

제조업 허가를 득한 기업이 추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생산 용량을 확대하거나 또는 제품 다변화를 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등록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sole proprietor). 또는
- ❖ 2명 이상(단,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로서 운영하는 파트너회사. 또는
- ❖ 국내 법인 회사 또는
- ❖ 외국인 회사 또는
- ❖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2.1 단독소유기업 및 파트너회사의 등록

첫도기업, 즉 단독소유기업 및 파트너회사는 1956년 의사업체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파트너회사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회사 증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 그게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회사 법인은 시민 또는 영구 거주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2 회사의 등록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는 2016년의 회사법(CA 2016)의 구속을 받습니다. 회사법(CA)에 따르면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SM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2.1 회사의 유형

1965년의 회사법(CA)에 따르면 다음 세(3) 가지 유형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a.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는 구성원의 책임이 만약 미지급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까지로 한정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 b.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서 구성원의 책임은 회사 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기여하기로 보증한 금액까지로 한정됩니다.
- c.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는 구성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2.2.2 유한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구조는 유한주식회사입니다. 유한주식회사로는 개인회사 또는 공개회사가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의 회사는 회사명의 끝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Sendirian Berhad” 또는 “Sdn. Bhd” 그리고 공개회사의 경우 “Berhad” 또는 “Bhd”로 끝납니다.

주식 자본을 가진 회사는 설립 후 다음의 경우에 개인회사로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 ❖ 주식 양도권의 제한
- ❖ 구성원의 수를 50 명으로 제한. 단,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종업원과 회사나 자회사의 전직 종업원은 제외합니다.
- ❖ 일반인들에게 주식 및 회사채의 공모 금지.
- ❖ 이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반인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예탁금 공모 금지.

회사는 공개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으로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의 회사법 41항에 따라 공개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했을 경우. 그리고
- ❖ 설립 취지서 1부를 주식 발행 당일 또는 그 전에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에 제출했을 경우

2.2.3 회사 설립 절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 MyCoID 2016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설립할 회사명
- ✓ 회사가 개인회사일지 공개회사일지
- ✓ 설립할 회사의 사업 성격

- ✓ 등록할 주소
- ✓ 회사의 책임사원의 성명, 신원, 국적 및 보통의 거주지
- ✓ 이사가 될 개인 모두의 성명, 신원, 국적 및 보통의 거주지
- ✓ 주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책임사원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의 세부 사항
- ✓ 보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책임사원이 회사 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기여하겠다고 보증한 최대 금액, 회사의 책임사원의 성명, 신원, 국적 및 보통의 거주지

주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RM1,000 또는 보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RM3,000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제공한 정보에 대해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가 만족할 경우, 등록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됩니다. 이 통지서는 등록 관련 요건과 그리고 등록에 선행하고 부수하는 문제가 준수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2.2.4 MyCoID

1회 제출로 일단 SSM에 회사 설립이 등록되면, MyCoID를 이용하여 근로자공제기금(EPF), 말레이시아 국세청(IRB), 사회보장기구(SOSCO), 중소기업개발공사(SME Corp) 및 인적자원 개발기금(HRDF)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2.5 고객 현장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승인 및 등록할 것을 약속합니다.

활동	기간
회사 등록	
*회사의 설립	1일
회사 지위의 변경	1일
회사 상호 변경	1일
공개회사 영업 개시	1일
담보 등록	2일
신탁증서 승인	5일
설립취지서 등록	3일
회사 문서의 미인증 사본	30분
회사 문서의 인증 사본	1시간

유의사항: 처리 기간은 대금 접수 순간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로 계산합니다.

*회사 상호의 사용 가능성 및 존속 신청은 회사 설립 전에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2.2.6 국내 설립 법인의 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회사법(CA)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인감과 공식 문서, 출간물 및 (만약 있을 경우) 웹사이트에 회사 번호와 함께 회사 상호가 읽을 수 있는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자사주를 거래하거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주식 보유 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결의 사항에 대해 거수로 투표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표할 경우 회사의 주식 1주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 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지정된 단체의 회원 또는 기업등록소(Registrar of Companies)의 허가를 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승인된 회사 감사로 말레이시아의 회사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 기업은 적어도 1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고, 반면에 공개회사는 적어도 2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수의 이사들은 각각 주 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최소 나이는 18세이며, 2016년의 회사법(CA)에서는 최대 나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2.3 외국 회사의 등록

외국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현지 회사의 설립 또는
- 말레이시아에 지점 등록

외국 회사는 2016년의 회사법(CA)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설립된 회사, 법인, 협회, 조합 또는 기타 단체. 또는
- 본국법상 비법인 협회, 조합 또는 기타 단체로서 당해 단체 또는 조합의 간사(secretary) 또는 이를 위해 적법하게 선임된 다른 임원 명의로 고소하거나 피소되거나 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 본사나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

2.3.1 등록 절차

- 신청인은 먼저 회사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할 회사 상호는 본국에 등록된 회사 상호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사 상호 예약을 위한 신청서는 MyCoID 2016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회사 상호 1개당 RM50과 함께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로부터 승인받은 회사 상호는 승인 일자로부터 30일 간 유효합니다.

- 회사명을 승인받자마자 신청인은 승인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다음의 등록 서류를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016년의 회사법(CA) 562(1)절에 따른 외국 회사등록 신청서
 - ✓ 외국 회사의 설립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 인증 사본 1부
 - ✓ 외국 회사의 현장, 규약 또는 정관, 부속 정관 또는현장을 정의하는 기타 법률 문서의 등본 1부
 - ✓ 만약 외국 회사의 현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이사일 경우, 외국 회사가 직접 또는 외국 회사의 대리인을 통해 그 이사의 권한을 기재한 서면을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대리인)으로 하여금 외국 회사를 대리하여 그러한 외국 회사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통지를 수락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선임 각서 또는 위임장
 - ✓ 외국 회사의 회사 상호 예약 신청서 사본과 회사 상호를 승인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서 수신한 이메일 사본으로 구성되는 추가 문서

유의사항: 상기 등록 문서 중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의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의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 수수료는 다음의 요율표에 따라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본금(RM)	지불 수수료(RM)
1,000,000 이하	5,000
1,000,001 - 10,000,000	20,000
10,000,001 - 50,000,000	40,000
50,000,001 - 100,000,000	60,000
100,000,001 이상	70,000

등록 수수료 산정 시에는 먼저 외국 회사의 자본금을 그 당시의 환율에 따라 말레이시아 링깃화(RM)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의 자본금이 없을 경우에는 정액으로 RM70,000을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d. d등록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작성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로부터 등록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 승인을 받는 즉시 회사 또는 회사 대리인은 반드시 2016년의 회사법(CA)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명세나 회사 상호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적정 수수료와 함께 SS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 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SSM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적절한 회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1년에 한번 회사 등록 일자 기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수익을 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추가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회계사 또는 전문직 회사 간사의 서비스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합니다.

2.4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2.4.1 LLP의 특징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는 2012년의 유한책임파트너회사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대체 업무용 차량의 일종으로 회사와 전통적인 파트너회사의 특징을 결합한 회사입니다.

LLP는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인 파트너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습니다.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LLP는 영속계승권(perpetual succession)을 가집니다. 파트너의 변동이 있더라도 LLP의 존립, 권리나 책임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LLP는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또한 고소하거나 피고소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취득, 소유, 보유 및 개발 또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듯이, LLP는 그와 같은 여타 행위와 일을 할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LLP는 회사의 설립, 유지관리 및 소멸의 관점에서 간단하고 유연한 절차를 제공할 일종의 업무용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LLP의 설립 및 LLP로의 전환에 필요한 등록 수수료는 RM500입니다. 회사 상호 예약 신청 수수료는 RM30입니다.

2.4.2 LLP는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LLP는 LLP 합의 조건에 따라 이윤 목적의 합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개인(전부 또는 일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LLP는 반드시 동일 직종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의 승인을 받은 효력있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LLP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 스타트업(신생기업), 또는
- ❖ 중소기업, 또는

- ❖ 전문직 회사, 또는
- ❖ 합작회사, 또는
- ❖ 벤처캐피털.

2.4.3 등록 절차

LLP를 등록하려면, 모든 신청은 MyLLP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RM500의 수수료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등록하고자 하는 LLP 상호명
- ✓ 업종
- ✓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
- ✓ 파트너의 성명과 세부 인적 사항
- ✓ 준법감시인의 성명과 세부 인적 사항
- ✓ 승인서(전문직 회사의 경우)

LLP 등록 신청 요건 충족 시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는 LLP를 등록시켜 주고 당해 LLP에 등록 번호와 함께 등록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등록 통지서는 당해 LLP가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결정적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당해 LLP의 사업 관련 기타 법규정이 충족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LLP의 회사 상호는 “Perkongsiian LiabilitiTerhad” 또는 그 약어인 “PLT”로 끝나야 합니다.

2.4.4 LLP로의 전환

신규 등록과는 별개로, 기존의 사업체도 LLP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이 허용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6년의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에 따라 등록된 전통적 파트너회사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에 의해 설립된 여타 파트너회사. 또는
- 2016년의 회사법(CA) 또는 여타 이전의 상응하는 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 회사.

전통적 파트너회사가 LLP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일한 파트너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일자에 전통적 파트너회사가 자체 부채를 정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 ❖ 전문직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개인 회사가 LLP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일한 파트너가 유지되고 추가 파트너는 없어야 합니다.

- ❖ 회사의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 신청일자에 개인 회사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 정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모든 미납 법정 수수료는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 널리 배포되는 일간 신문과 관보 (Gazette)에 LLP로의 전환 사실을 알리는 광고 게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 ❖ 모든 채권자가 LLP로의 전환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LLP로의 전환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전통적인 파트너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자산, 권리, 특권, 의무 및 책임이 LLP에 귀속됩니다.
- 계류 중인 소송은 LLP를 제소 또는 피소 당사자로 하여 계속 진행되고, 완료되며, 집행될 수 있습니다.
- LLP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LLP가 당사자가 되어 기존의 합의, 계약은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 전통적인 파트너회사가 LLP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파트너들이 계속 개인적인 책임(LLP와 함께 또는 여러 명과 함께)을 져야 합니다.
- 개인회사가 LLP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LLP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2.4.5 LLP의 요건

LLP는 2016년의 회사법(CA)에 따라 간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파트너 또는 개인 중에서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말레이시아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평생 시 말레이시아에 거주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또는 1965년의 회사법(CA)에 따라 이사나 간사로 활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LLP는 우편물과 통지서의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LLP는 이 회사법에 따라 발급된 등록 통지서, LLP 합의서 사본, 각 파트너와 준법감시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명부, 최신 연례 보고서와 그리고 담보권 설정 법률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 문서 사본 등을 등록된 사무소에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LLP는 당해 LLP의 재무 상태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회계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LLP 합의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5 E-서비스

창구 서비스 이외에 E-서비스로 SSM(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은 E-서비스를 온라인 제출과 제품 구매의 대안으로 도입합니다. E-서비스 포털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사업체 등록, 갱신, 상세사항의 변경 및 사업 종료를 위한 Ezbiz Online
- 회사 등록, 상세사항의 변경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MyCoID
- LLP 등록, 상세사항의 변경, 연례 선언(Annual Declaration) 및 해산을 위한 MyLLP
- 법인 및 사업 정보 문서 이미지 및 디지털 인증 진본(DCTC)와 같은 제품 구매를 위한 SSM E-info 및 MyData
- 회사의 연례 수익, 재무재표 및 보고서의 제출을 위한 MBRS

보다 자세한 정보는 SSM 웹사이트 www.ssm.com.my를 방문하십시오.

3.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관련 지침

말레이시아는 항상 제조 부문 투자를 환영해 왔습니다. 현지인의 제조 부문 참여 증대를 원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합니다.

신규, 확장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 관련 지분 정책

2003년 6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그리고 제품이나 활동의 예외 없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는 물론, 기존 회사의 확장/다변화 프로젝트 관련 투자에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정책은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전에 제조업 허가증 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RM250만에 달하거나 또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 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회사.
- 전에 지분 제한 조건을 면제받고 허가를 득한 기존의 회사로서 지금은 자본금이 RM250만에 달해 지분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회사.

기존의 회사에 적용되는 지분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 조건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 조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승인 여부는 각 사안별로 공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분 소유권

지분 참여를 승인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당해 프로젝트의 원래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대표 사무소(RE)/지역 사무소(RO)의 설립

대표 사무소/지역 사무소는 외국 회사/기구가 본사/본점을 위해 허용 가능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설립하는 임시 사무소입니다. 대표 사무소/지역 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 영구 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사업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 사무소/지역 사무소의 설립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대표 사무소/지역 사무소는 국외 거주자 직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국외 거주자는 관리자 및 기술 직책에 대해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며, 허용되는 직책의 수는 대표 사무소/지역 사무소의 기능과 활동에 달려 있습니다.

4.1 대표 사무소(RE)

대표 사무소는 말레이시아에서 특히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 기회에 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양국 교역 관계를 증진하며 말레이시아의 재화와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R&D)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외국 회사/기구의 사무소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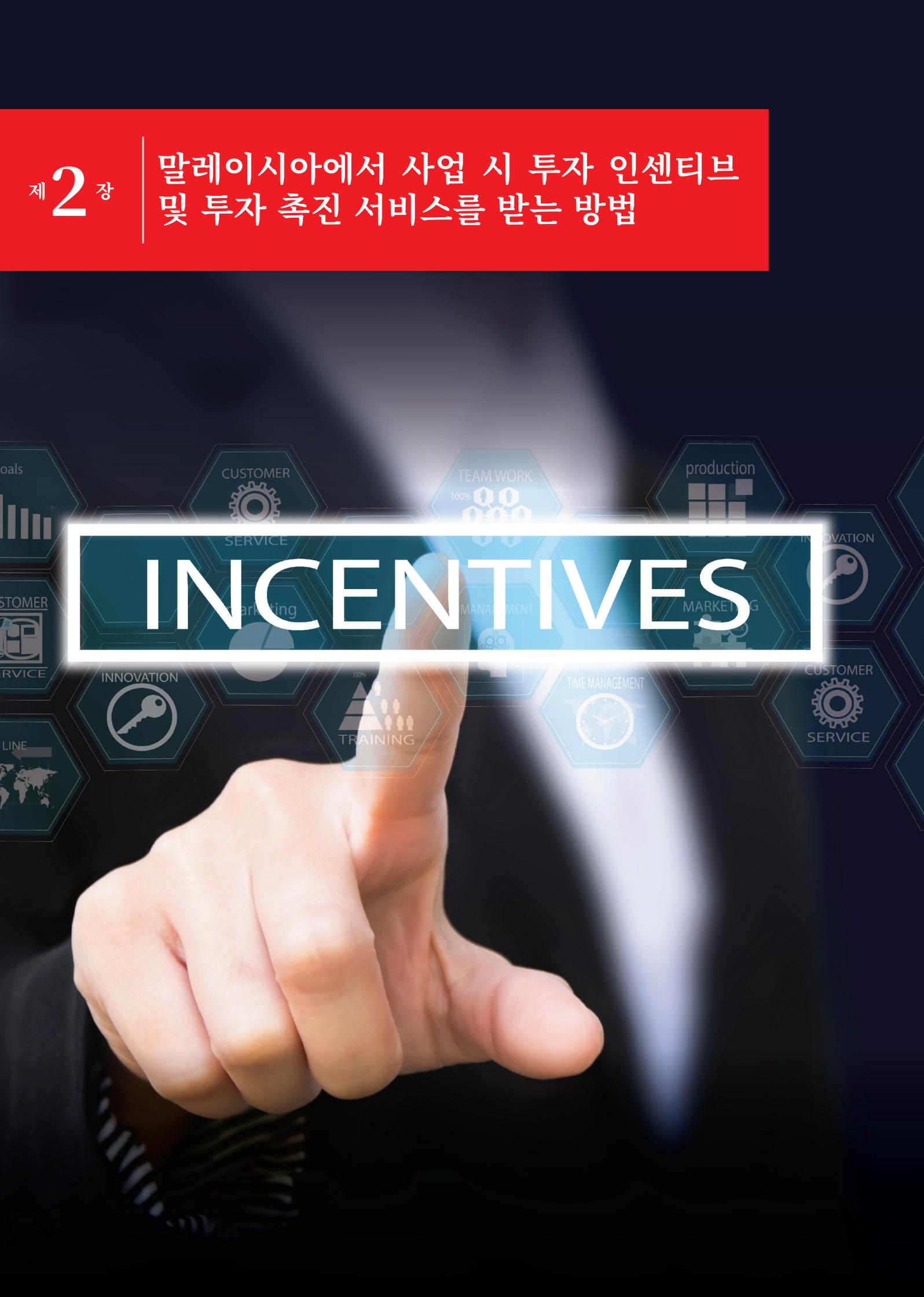
4.2 지역 사무소(RO)

지역 사무소는 동남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계열사, 계열사 및 대리점을 위한 조정 센터 역할을 하는 외국 회사/기구의 사무소를 말합니다. 설립된 지역 사무소는 운영 지역 내에서 회사/기구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조 및 서비스 하부 부문을 위한 RE/RO의 설립 신청서는 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시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 촉진 서비스를 받는 방법

A hand in a dark suit jacket points towards the center of the page. The background is dark blue with a grid of hexagonal icons containing business-related terms like 'CUSTOMER SERVICE', 'TEAM WORK', 'production', 'MARKETING', 'INNOVATION', 'TRAINING', and 'TIME MANAGEMENT'. A bright white glow surrounds the word 'INCENTIVES' which is written in large, white, sans-serif capital letters inside a white rectangular box with a glowing border.

INCENTIVES



1. 일반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1.1.1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 1.1.2 투자세 공제
 - 1.1.3 1986년의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를 '열망하는'의 정의
-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1.3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 1.4 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5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1.5.1 재투자 공제
 - 1.5.2 PENJANA(국가경제회복계획)에 따른 특별 조세 인센티브
 - 1.5.3 PENJANA(국가경제회복계획)에 따른 제약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1.5.4 PENJANA에 따른 추가 RA
 - 1.5.5 가속 자본 공제
 - 1.5.6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 1.5.7 그룹 조세 감면
 - 1.5.8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

2.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2.1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2.2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2.3 조선 및 선박 수리(SBSR)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2.3.1 조선 및 선박 수리(SBSR) 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2.4 기계류 및 장비(M&E)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2.5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 2.6 생명공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반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2.6.1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2.6.2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 기반의 자금 조달
- 2.7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 2.7.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2.7.2 농업 생산물(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 2.7.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 2.7.4 농업 및 자원 기반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 2.8 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오일 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3.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 3.1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 3.2 녹색 기술 인센티브

4.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 4.1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 4.2 연구 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5. 교육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 5.1 근로자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 5.2 채용 전 교육 훈련에 대한 공제
- 5.3 비직원 교육 훈련에 대한 공제
- 5.4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 5.5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 5.6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 5.7 인적 자원 개발 기금(HRDF)
- 5.8 승인받은 교육 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 5.9 구조적 인턴 프로그램(SIP)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6. 자동화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 6.1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본 공제
- 6.2 스마트 자동화 보조금(Smart Automation Grant, SAG)

7. 기타 인센티브

- 7.1 산업용 건물 공제(IBA)
- 7.2 MSC Malaysia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IBA)
- 7.3 감사 수수료 공제
- 7.4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7.5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 7.6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 7.7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
- 7.8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 7.9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8. 서비스 부문에 대한 촉진 및 인센티브

- 8.1 지역 운영 사무소
- 8.2 연구 개발(R&D)
- 8.3 석유 및 가스(O&G) 서비스
- 8.4 집객 서비스
- 8.5 교육 및 산업 교육 훈련 서비스
- 8.6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 8.7 물류 및 공급망 서비스
- 8.8 환경 관리
- 8.9 IP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 8.10 디지털 서비스
- 8.11 기타 서비스 산업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시 투자 인센티브 및 투자 촉진 서비스를 받는 방법

말레이시아에서는 1986년의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s Act, PIA), 1967년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 ITA), 1967년의 관세법(Customs Act), 1976년의 국내소비세법 (Excise Act) 및 1990년의 자유지역법(Free Zone Act) 등에 직접 및 간접 세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은 제조, 농업, (호텔을 포함한) 여행 및 승인받은 서비스 부문은 물론, R&D, 교육 훈련 및 환경 보호 활동 등에의 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세제 인센티브는 특정 기간 동안 소득세 납부에서 부분 또는 전체를 공제해 주는 한편, 간접 세제 인센티브는 수입 관세 및 국내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일반 제조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1 제조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세제 인센티브는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PS)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에 둘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척자 자격(Pioneer Status) 및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자격은 부가가치, 이용된 기술 및 산업계 연계 등의 수준을 비롯, 특정 우선순위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유자격 활동 및 제품은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으로 지칭됩니다. (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일반을 참조할 것).

기업은 운영/생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 개척자 자격

개척자 자격(PS)을 취득한 회사는 소득세를 5년 간 일부 면제받습니다. 개척자 자격(PS)을 취득한 회사는 법정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세금 면제 기간은 생산일(생산 수준이 생산 능력의 30%에 도달하는 날로 정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신청은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2 투자세 공제

개척자 자격(PS)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는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ITA)를 허가 받은 회사는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투자세 공제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득의 나머지 30 %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개척자 자격(PS) 신청은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InvestMalaysia portal.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3 1986년의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를 ‘열망하는’의 정의

1986년의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준은 해당 기업이 장려 활동을 구축 또는 참여하거나 또는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장려 제품을 생산하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3.1 설립/참여/생산의 정의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a. 제조 회사 - 회사는 시험 생산을 비롯한 운영/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b. 서비스 회사 - 회사는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을 시작한다는 것은 제안 프로젝트를 위한 첫번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3.2 말레이시아인 소유 기업을 위한 1986년의 투자촉진법(PIA)에 따른 세제 혜택을 ‘열망하는’의 정의.

이미 상업 생산 중인 말레이시아인 소유의 제조 및 서비스 회사는 1986년의 투자촉진법(PIA)에 따른 ‘열망하는’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3일부터 투자진흥청(MIDA)에 신청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 생산을 시작한 말레이시아인 소유 기업은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1.3.3 인센티브

1986년의 PIA에 따라 현재의 세율 및 자격에 바탕을 둔 PS 또는 ITA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1.2 하이테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 회사는 신흥 기술 분야에서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 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 iii '하이테크 기술'이란 신기술 및 부상하는 기술 분야에서 장려 활동이나 또는 장려 제품의 생산에 중사함을 말합니다.

(부록 II: 장려 활동 및 장려 제품 목록 - 하이테크 기술 기업 참조)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품 또는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략적 프로젝트는 구상 기간이 장기간으로 막대한 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으며, 기술 수준이 높고, 통합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연계를 생성시키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략적 프로젝트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개척자 자격,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하는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재 주주 기금이 RM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소기업은 1986년의 투자촉진법(PIA)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2년 7월 3일부터 소기업은 주주 기금이 RM250만을 초과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에서 100%까지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소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965년의 회사법(Companies Act, CA)에 따라 설립
- ✓ 주주 기금이 RM250만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음의 말레이시아인 소유권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 주주 기금이 RM50만 이하이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회사
 - 주주 기금이 RM50만을 초과하되 RM250만 이하이고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100%인 회사

소기업은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post PS)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매 평가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인 유한 회사가 설립되어 기존의 생산/활동을 인수할 경우 단독 소유권 또는 파트너십 회사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주주 기금이 RM50만 이하이고 장려 활동을 하거나 또는 소기업 장려 제품 목록이나(부록 III: 소기업 참조) 또는 일반 장려 제품 목록에(부록 I: 장려 활동 및 장려 제품 - 일반 참조) 들어 있는 장려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 ii 주주 자금이 RM50만을 초과하고 2RM50만 이하이며 장려 활동을 하거나 또는 소기업 장려제품 목록에(부록 III: 소기업 참조) 들어 있는 장려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 iii 주주 자금이 RM50만을 초과하고 2RM50만 이하이며 장려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일반 장려 제품 목록에(부록 I: 장려 활동 및 장려제품 - 일반 참조) 들어 있는 장려 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경우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제조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5.1 재투자 공제

재투자 공제(RA)는 확장,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일 산업 내 관련 제품으로의 다양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제조 활동 및 선정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로 적어도 36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투자 공제(RA)는 최초의 재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15년 동안 연속 주어집니다. 회사는 적격 프로젝트 완료 시, 즉 건물이 완공되거나 또는 플랜트/기계류가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만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9 평가연도로부터 동일 그룹 내에서 관련 회사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회사로 그러한 자산에 대해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한 회사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재투자 공제(RA)를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취득 일자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투자 공제(RA)는 회사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비율로 주어지며, 평가연도 동안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최대 7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이월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5년의 종료 직후 시작됩니다. 만약 재무부(MOF)가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생산성 수준을 확보하는 회사는 평가연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재투자 공제를 상쇄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하부 부문에 대한 지정된 생산성 수준에 관한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IRB)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유용한 주소 - 관련 기관 참조).

조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는 회사는 개척자 자격(PS) 또는 개척자 인증서(Pioneer Certificate)를 취소하기 위해 반납하고 재투자 공제(RA)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는 특정 평가연도(Year of Assessment, YA)에 RA, 또는 가속 자본 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 (1.5.5절 참조)), 또는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pital Allowance (1.5.8절 참조))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A 관련 신청서는 www.hasil.gov.my 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해야 하며, RA에 대한 개척자 자격(PS) 또는 개척자 인증서(Pioneer Certificate)의 포기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에서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5.2 PENJANA(국가경제회복계획)에 따른 특별 조세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의 주요 목적은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차질을 빚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말레이시아로 사업을 이전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별 세금 인센티브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규 제조 회사의 경우

- RM3억에서 RM5억 사이의 자본을 투자하는 제조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 10년 동안 0%의 특별 세율
- RM5억을 초과하는 자본을 투자하는 제조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해 15년 동안 0%의 특별 세율.

b) 기존 제조 회사의 경우

- RM3억 이상의 자본 투자로 해외 시설을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존 회사에 대해 5년 동안 100% ITA. 공제액은 각 평가연도의 법정 소득에 대해 100% 상쇄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1.5.3 PENJANA(국가경제회복계획)에 따른 제약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업체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첫 10년 간 0%에서 10%의 소득세율, 그리고
- ii 그 후 10년 간 10%의 소득세율.

원자재뿐만 아니라, 기계류 및 장비류(M&E)에 대한 보조금 제공 및 수입관세/영업세 면제를 포함하여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의 전략적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2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1.5.4 PENJANA에 따른 추가 RA

PENJANA에 따른 추가 RA는 기존의 제조 및 선정된 농업 활동에 대한 재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에 제공됩니다.

추가 RA는 3년의 평가연도(YA 2020-YA 2022) 이내에 이루어진 재투자 활동의 경우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비율로 제공되며, 단 제조 프로젝트 또는 선정된 농업 활동의 RA 인센티브 기간이(1.5.1에 따라) 평가 기간 이전에 만료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추가 RA 신청서는 www.hasil.gov.my 에서 2020 평가연도 (YA)에서 2022 평가연도(YA) 사이에 이루어진 재투자 활동으로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세청(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1.5.5 가속 자본 공제

a) 장려 활동 또는 장려 제품에 대한 재투자

15년 간의 재투자 공제(RA) 자격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장려 제품 제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ACA(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가속 자본 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ACA (가속 자본 공제)는 3년 이내 자본적 지출을 탕감할 수 있는, 즉 첫째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으로부터 회사 장려 활동 또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서신을 동봉하여 국세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폐기물 재활용

2001 평가연도부터는 사업 목적으로 적격 지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해 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전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또는
- 폐기물을 완제품으로 추가로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경우

회사는 특정 평가연도(Year of Assessment, YA)에 RA(1.5.1절 참조), 또는 가속 자본 공제 (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 또는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pital Allowance(1.5.8절 참조))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hasil.gov.my 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1.5.6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 구성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 회사는 2006 평가연도부터 초기 공제 40%와 연간 공제 20%의 비율로 가속 자본 공제(ACA)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www.hasil.gov.my 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1.5.7 그룹 조세 감면

그룹 조세 감면은 1967년의 소득세법에 따라 현지에 설립된 모든 거주민 회사에 제공됩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그룹 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사는 평가연도 3년 연속 조정 손실의 최대 70% 까지 반납하여 동일 그룹 내의 다른 회사의 소득에 대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 모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는 각각 기본 연도의 시작 시 RM250만을 초과하는 보통주의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는 모두 회계연도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그룹의 청구 회사와 반납 회사의 직간접 주식 지분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iv 70% 주식 지분은 전 연도와 관련 연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v 재산권 또는 외국인 소유 회사의 취득으로 인한 손실은 그룹 조세 감면의 목적으로 무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다음의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는 회사는 그룹 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개척자 자격
- 투자세 공제/투자 공제
- 재투자 공제
- 운송 이윤의 조세 감면
- 1967년의 소득세법의 127 절에 따른 소득세 감면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5.8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

말레이시아에서 최소한 3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기존의 사업체를 자동화/현대화할 목적으로 자동화 장비에 대한 적격 자본적 지출을 발생시킨 제조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 노동 집약 산업(고무 제품, 플라스틱, 목재, 가구 및 섬유 산업)은 2015 평가연도에서 2023 평가연도 사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로 최초 RM400만에 대해 200%의 자동화 C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타 제조 산업체들은 2015 평가연도에서 2023 평가연도 사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로 최초 RM200만에 대해 200%의 자동화 C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RA(1.5.1절 참조), 또는 가속 자본 공제 (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 1.5.5절 참조), 또는 자동화 자본 공제(Automation Capital Allowance, YA)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2.1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공우주산업 발전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정한 전략 및 하이테크 부문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MRO(정비, 수리 & 오버홀), 항공우주 제품 제조, 시스템 통합 및 엔지니어링 & 설계 등에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활동할 계획 중인 5년 또는 10년 동안 다음의 인센티브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i. 소득세 면제

또는

ii. ITA에 상당하는 소득세 면제

단

i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 제조업 활동, 시스템 통합, MRO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2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2.2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 효율 차량(Energy Efficient Vehicles, EEV)과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조립 및 제조를 장려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 차량(EEV) 또는 필수 구성품/시스템의 조립 및 제조 활동을 계획 중인 회사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음의 인센티브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세 면제

또는

• ITA에 상당하는 소득세 면제

단

'에너지 효율 차량(EEV) 및 주요 구성품/시스템의 조립 및 제조'는 다음을 가리킵니다.

i 에너지 효율 차량(EEV)의 조립

ii 차세대 차량(Next Generation Vehicles, NxGVs)의 조립

iii 다음으로 한정되지 않는 EEV 또는 비EEV용 주요 구성품/시스템, 변속기 및/또는 그 일부(클러치 페달 제외), 엔진 및/또는 그 일부(스파크 플러그, 교류 발전기, 타이밍 벨트 및 타이밍 체인, 전자 제어 장치 제외), 에어백 및/또는 그 일부, 핸들링 및 제어 메커니즘(서스펜션, 브레이크, 조향 시스템, 코너 모듈), 브레이크 메커니즘 및/또는 그 일부(브레이크 패드, 드럼 브레이크, 브레이크 슈 및 핸드 브레이크 제외), 흰색 바디 및/또는 EEV 제조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량 재료가 포함된 구성품 및 부품(첨단 고강도 강철, 초고강도 강철, 붕소, 마르텐사이트, 고강도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등), 터보차저 및/또는 그들의 일부

iv 다음으로 한정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용 구성품, 전기 모터, 전기 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EV 새시, 온보드 충전기 모듈, 열 관리 시스템, 배터리 팩

v NxGV용 구성 요소는 다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라이더(빛 탐지 및 범위 측정,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및/또는 그 일부, 복잡한 레이더(무선 감지 및 범위 지정, Radio Detection and Ranging, RADAR) 네트워크, 텔레매틱스(telematics) 장치 및/또는 그 일부, 마스터 컨트롤러 및 AACV(예컨대, 센서, V2X 모듈 등)의 주요 구성품

신청서는 온라인 포털 InvestMalaysia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5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2.3 조선 및 선박 수리(SBSR)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3.1 조선 및 선박 수리(Shipbuilding & Ship Repair)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새로운 SBSR 프로젝트는 다음의 인센티브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 5년 또는 10년간 70%의 소득세 면제. 개척자 자격(PS) 기간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post PS)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60%의 ITA(투자세 공제)에 상당하는 소득세 면제.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해당 평가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확장 프로젝트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60%의 ITA(투자세 공제)에 상당하는 소득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해당 평가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2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2.4 기계류 및 장비(M&E)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M&E 및 전문 M&E의 생산 활동을 시작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 중 하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 i 'M&E'는 공장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 및 모듈, 공장 기계와 로봇 및 공장 자동화 장비의 구성품을 말합니다.
- '특수 M&E'란 특정 산업의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 포장 기계류 및 모듈, 특정 산업 및 포장 기계류의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를 말합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록 IV: 선택된 산업의 장려 활동 및 장려 제품 목록 참조).

2.5 산업용 빌딩 시스템(IBS)에 대한 인센티브

IBS의 활용은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입니다.

IBS 제조 활동을 하는 회사는 첫 번째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ITA에 상당하는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단,

- i 'IBS'는 기둥, 보, 슬래브, 벽, 지붕 트러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스템, 거푸집 시스템, 철골 시스템, 블록워크 시스템, 목재 골조 시스템 및 혁신 시스템으로 구성된 기본 구성요소/제품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참고: IBS 제조업체는 IBS의 기본 구성품 중 최소 3개 또는 기본 IBS 구성품 중 최소 3개를 사용하는 IBS 시스템을 제조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5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2.6 생명공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반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2.6.1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생명공학기술 활동을 수행하고 말레이시아 바이오경제개발공사(Bio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로부터 바이오넥서스 자격(BioNexus Status)을 승인받은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략적 프로젝트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법정 소득의 70% 세금 면제:

- a. 회사가 신규 사업의 비 지적 재산권에서 법정 소득을 얻은 첫 평가연도부터 시작하여 연속 10년의 평가연도 기간 동안, 또는
- b. 회사가 확장 프로젝트의 완료 시 법정 소득을 얻은 첫 평가연도부터 시작하여 5년 연속 평가연도 기간 동안. 기존 사업 및 확장 프로젝트의 비 지적 재산으로부터 취득한 법정 소득은 면세 대상입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QCE)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세금 공제. 신규 사업 또는 확장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세금 공제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BioNexus 자격 회사는 소득세 면제 만료 시 연속 10년 동안 승인받은 적격 활동의 비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법정 소득에 대해 20%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BioNexus 자격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기타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수입 원자재/구성품 및 기계류 및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영업세의 면제
- ii R&D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iii 수출 장려를 위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
- iv 2006년 9월 2일부터 생명공학 활동의 목적으로만 사용된 적격 건물은 10년에 걸쳐 산업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v BioNexus 자격 회사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은 신규 사업의 상업화 단계 초기에 자금 조달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 가치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자는 BioNexus 자격을 신청할 시점에 다음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i 제안된 QA(제품/서비스)에는 상용화할 준비가 된 생명공학 요소와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 ii 제안된 QA는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 iii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R&D)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 iv 회사 최소 납입자본금 RM250,000(신규 및 기존 사업 모두) 이상.

보다 자세한 사항은 Bioeconomy Corporation website (BNX Framework)를 참조하십시오.

2.6.2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 기반의 자금 조달

2021년 하반기에 Bioeconomy Corporation은 RMK-12에 따라 두 가지 독특한 유형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출시할 예정으로, 그 첫 번째는 주식 자금 조달 프로그램이고, 그 두 번째는 더 넓은 표적의 고객을 위한 역동적 부채 자금 조달 프로그램입니다.

제안된 주식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대해 Bioeconomy Corporation은 재정 지원과 기술, 네트워킹, 마케팅 및 진흥뿐만 아니라, 해당되고 가능한 경우 인적 자본 개발 및 채용 지원도 제공할 것입니다. Bioeconomy Corporation은 주식 펀딩 프로그램 수혜자가 제3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보증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자금과 관리 지원을 모두 제공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부채 자금 공급 프로그램의 경우, 실행 가능한 초기 상업화 이니셔티브, 기존 사업 운영을 위한 운전자본 자금 공급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부채 자금 공급 요건의 더 넓은 목적을 수용하기 위해 가격 책정, 원금 유예 기간, 상환 기간 및 자금 공급 수익 활용이 수정 및 완화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고 기계류 구입에서 비즈니스 자산 취득에 이르기까지 자본 확장 요건이 있습니다.

두 자금 공급 프로그램은 더 이상 말레이시아가 통제하는 회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Bioeconomy Corporation website (Funding)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 농업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의 투자촉진법에서는 농업 관련 “회사” 라는 용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i 농업 기반 협동 조합 및 협회. 그리고
- ii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단독 사업체 및 파트너십.

농업 부문에서 장려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장려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부록 I: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일반과 부록 III: 소기업 회사 참조)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2.7.1 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위에서 정의된 농업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농업 생산물의 첫 번째 판매 일자로 정의되는) 생산일로부터 시작해서 5년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60%의 투자세 공제.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득의 나머지 30%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신청서는 <https://www.mafi.gov.my/insentif/-geran/-dana/-pelaburan>을 통해 농업식품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Industrie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7.2 농업 생산물(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농장 레벨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처리 레벨에서 식품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의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 가공 부문의 원자재 공급이 늘어나 그와 같은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승인받은 식품 생산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와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 모두에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세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식품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해당 평가연도에 해당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동등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ii 식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10년간의 평가 기간 또는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5년 간의 평가 기간 동안 법정 소득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mafi.gov.my/insentif/-geran/-dana/-pelaburan을 통해 농업식품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Industries)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2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농업식품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Food Industries)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2.7.3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a.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halal) 식품 생산에의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고품질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현대의 최첨단 기계류 및 장비 사용을 늘리기 위해 할랄(halal) 식품 생산에 투자하고 MS 1500:2004를 준수하여 이슬람교개발국(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이미 취득한 회사는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투자세 공제는 평가연도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비용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개발국(JAKIM)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www.halal.gov.my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랄개발공사(Halal Development Corporation, HDC) 또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b. 기타 할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 할랄 파크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할랄 파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파크 운영자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할랄(Halal) 산업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정된 할랄 파크에서 프로젝트 착수를 제안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ii 할랄 장려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영업세 면제.
- iii HACCP, GMP, Codex Alimentarius(FAO & WHO)의 식품 표준 지침, 위생 표준 운영 절차와 농장 돼지 고기의 식품 추적가능성과 같은 수출 시장 준수 규정 등과 같은 국제 품질 표준을 획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이중 공제.

• 할랄 물류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에 할랄 산업과 할랄 공급 체인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할랄 물류 운영자에게는 다음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post PS)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www.halal.gov.my 를 통해 HDC(할랄개발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www.hdcglobal.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7.4 농업 및 자원 기반 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a. 재투자 공제

재투자 공제(RA)는 확장, 자동화, 현대화 또는 동일 산업 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변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제조 활동 및 선정된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로 적어도 36개월 동안 운영되어 온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RA는 최초 재투자가 이루어진 연도로부터 시작하여 15년 동안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의 60%에 대한 공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투자세 공제는 평가연도의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최대 7년의 평가 기간 동안 연속 이월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5년의 종료 직후 시작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b. 자원 기반 산업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는 51% 이상이 말레이시아인 소유로 수출 잠재력이 있는 고무, 오일 팜 및 목재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제공됩니다. 확장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재투자 참조)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c. 식품 가공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장려 식품 가공 활동에 재투자하는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현지인 소유의 제조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5년 이내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 재투자 참조)

d. 가속 자본 공제

재투자 공제(RA)가 만료되자마자 장려 농업 활동 및 식품 제품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ACA(가속 자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쌀, 옥수수, 채소, 덩이줄기, 가축, 수산물 재배와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활동이 포함됩니다.

ACA(가속 자본 공제)는 2년 이내 자본적 지출을 탕감할 수 있는, 즉 첫 해 초기 공제 20%와 연간 공제 40%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공제를 제공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IRB)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회사가 장려 농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장려 식품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MIDA(투자진흥청)의 서신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 농업 공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해 1967년의 소득세법 (Income Tax Act)에 따라 자본 수당(CA) 및 특수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f. 승인받은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 공제

1967년의 소득세법 부속서 4A에서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농업 프로젝트의 자본적 지출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특정 최소 면적을 경작하고 활용하는 농장에 대해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농업 프로젝트는 야채,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 프루트, 스타 프루트, 구아바 및 망고스틴), 괴경류, 근채류, 허브, 향신료 작물, 동물 사료용 작물 및 수경 재배 작물의 경작,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 양식(지수식 양식, 육상수조 양식, 수중 가두리 양식과 해면 가두리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초류 양식, 새우, 참새우 및 어류의 부화, 그리고 특정 종의 산림 플랜테이션 등을 말합니다.

이 인센티브에 따라 위의 승인받은 농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은 다른 수입원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하여 자신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적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처리 지출은 차후 평가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자본 공제 또는 농업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1986년의 투자촉진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승인받고 세금 감면 기간이 시작되거나 만료되지 않은 회사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8 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오일 팜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바이오 기반 화학 약품, 바이오 연료,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보드, 합판, 펄프 및 제지와 같은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a. 신규 회사

- i 10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b. 재투자하는 기존 회사

- i 10년 동안 재투자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10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환경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3.1 폐기물 재생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가가치가 높고 하이테크를 사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i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 공제는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누적 손실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 소득에서 7년간 연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 ii 5년 이내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는 평가연도의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단,

- i '고부가가치·하이테크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활동'이란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화학 약품의 재활용, 재생 목판재 또는 제품의 생산을 말합니다. 회사는 자유산업지역/보세제조창고(FIZ/LMW)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내에서 취득한 폐기물/스크랩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회사는 해외로부터 스크랩/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녹색 기술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녹색기술기후변화센터(Malaysian Green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Centre, MGTC)는 녹색 성장 분야에서 국가를 주도하고 녹색 기술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도록 위임된 정부 기관입니다.

현재 투자진흥청(MIDA)은 인센티브 제공 및 촉진을 통해 녹색, 지속 가능 및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녹색 성장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녹색기술기후변화센터(MGTC)와 손을 맞잡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 예산 및 2021 예산에 따라 녹색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공급 계획을 비롯한 여러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습니다.

A. 투자진흥청(MIDA) 권한에 따른 인센티브

2020년 예산(Budget 2020)에서 정부는 녹색 기술 자산 구매에 대한 투자세 공제(ITA)의 연장과 녹색 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소득세 면제(ITE)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면제(ITE)는 태양광 임대 사업을 하는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인센티브의 연장은 말레이시아의 녹색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2025년까지 재생 자원 에너지에서 20%의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또한 2030년까지 강도를 45%까지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을 줄인다는 말레이시아의 약속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인센티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사업 목적 또는 자체 소비를 위한 프로젝트 기반의 녹색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선택된 서비스/시스템 제공업체의 녹색 기술 채택을 장려하기 위함
- ii 회사가 말레이시아녹색기술기후변화센터(MGTC)에서 녹색 기술 자산으로 확인되고 MyHijau 디렉토리에 등재된 자산을 취득/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그리고
- iii 태양광 임대 활동을 포함하여 녹색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녹색투자세공제(Green Investment Tax Allowance, GITA - 프로젝트)

- 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CAPEX)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년 동안 녹색 기술 프로젝트에 의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
- ii 최초의 적격 자본적 지출(CAPEX) 일자는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 일자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 iii 이 투자세 공제는 평가연도의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 iv 녹색 기술 프로젝트에는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녹색 건물, 녹색 데이터 센터 및 통합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3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녹색 소득세 면제(GITE)

- i 적격한 녹색 서비스에 대한 법정 소득의 70% 소득세 면제(ITE):-
 - 인센티브 기간은 녹색 기술 용역 관련 최초의 세금계산서 발행 평가연도로부터 시작하여 3년 간입니다. 그리고
 - 최초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는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 일자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 ii 適格グリーン・サービスと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エネルギー効率、電気自動車(EV)、グリーンビルディング、グリーン・データセンター、グリーン認証・検証、グリーン・タウンシップなどをいう。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3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임대

- i 최대 10년 평가 기간 동안 태양광 임대 활동에 대한 법정 소득의 70% ITE(소득세 면제). 이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계층에 따라 고려됩니다.

용량(MW)	인센티브 기간
>3MW - <10MW	5년
>10MW - <30MW	10년

- ii 이 인센티브 기간은 최초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로부터 시작되며 이 일자는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 일자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3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B. 말레이시아녹색기술기후변화센터(MGTC) 권한에 따른 인센티브

녹색투자세공제(GITA) 자산

GITA 자산 인센티브는 2020 예산(Budget 2020)에 따라 2020 평가연도에서 2023 평가연도로 연장되었습니다. MyHijau 디렉토리(www.greendirectory.com) 웹사이트에 열거된 녹색 기술 자산을 구매하는 회사는 승인받은 녹색 기술 자산에서 발생한 적격 자본 지출의 100%에 대해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투자세 공제는 평가연도의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www.mgtc.gov.my/our-services/green-investment-tax-incentives-gita-gite/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MGT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녹색 기술 자금 제공 계획(GTFS)

정부는 Danajamin이 보증하는 2022년까지 2년간 RM20억의 기금 규모로 2021 예산(Budget 2021)에 따라 녹색 기술 자금 공급 계획 3.0(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 3.0) 또는 GTFS 3.0을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서는 gtfs.my/page/submit-gtfs-application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MGTC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연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PIA 1986은 R&D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구 결과를 원자재, 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공정의

생산 또는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신규성 또는 기술적 위험을 포함하는 모든 체계적이고 조사적이며 실험적인 연구”라고 정의합니다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품질 관리 또는 원자재, 장치, 제품 또는 생산물의 통상적인 시험.
-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
- 통상적인 데이터 수집.
- 시장조사 또는 판매 촉진.
- 원자재, 장치,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대한 통상적인 수정 또는 변경. 또는
- 원자재, 장치,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대한 외형상의 수정 또는 변경. 또는
- 원자재, 장치,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대한 외형상의 수정 또는 스타일의 변경.

말레이시아의 보다 통합된 R&D를 위한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품의 설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영위하는 회사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1 연구 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a. 계약 R&D 회사

계약 R&D 회사란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 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1986년의 PIA(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관계 회사란 다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직접 혹은 간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약 R&D 회사는 다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법정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5년간 100% 전액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PS). 개척자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 연속 평가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10년 이내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ITA). 이 투자세 공제는 평가연도의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자본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b. 연구 개발(R&D) 회사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기타 회사에 대해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R&D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세금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차기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기타 회사에 대해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R&D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c. 사내 자체 연구

말레이시아에서 자체 사업 목적으로 사내 R&D 를 수행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50%의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세 공제(ITA)는 매 평가연도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처리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d. R&D 활동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재투자하는 기존의 R&D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척자 자격(PS) 또는 투자세 공제(ITA)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계약 R&D 회사

- 5년 동안 법정 소득의 100%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척자 자격(PS). 소득 기간 종료 후의 미처리 소득 손실은 7년간의 연속 평가 연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 최초의 적격 자본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 지출에 대해 100%의 ITA(투자세 공제). 이 ITA(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연구 개발(R&D) 회사

최초의 적격 자본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 지출에 대해 100%의 ITA(투자세 공제). 이 ITA(투자세 공제)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사내 R&D

최초의 적격 자본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발생한 추가의 적격 자본 지출에 대해 50%의 ITA(투자세 공제). 이 ITA(투자세 공제)

를 활용하여 평가연도마다 법정 소득의 70%에 대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는 전액을 사용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록 V: 재투자를 위한 장려 활동 및 제품 목록 참조)

신청서는 MIDA(투자진흥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R&D의 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과 민간 연구소의 자원 기반 및 비 자원 기반 R&D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R&D 성과 사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 R&D 성과 사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10년간 법정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개척자 자격 (P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척자 자격 기간(PS) 동안 발생한 미처리 자본은 이월되어 회사의 개척자 후(post PS)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 기간(PS) 만료 후 발생한 미처리 손실은 7년 간의 평가연도 기간 동안 연속 이월될 수 있습니다

자원 기반과 비 자원 기반의 연구 결과의 사업화는 1986년의 투자촉진법(Promotion Investment Act, PIA)에 따라 장려 활동/제품 목록의 저축을 받습니다.

유효 일자

- 자원 기반 R&D 결과의 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2004년 9월 11일부터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부터 유효합니다.
- 자원 기반 R&D 결과의 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0년 9월 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부터 유효합니다.

f.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R&D 연구 결과의 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가치 창출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에 착수하는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사업화로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 5년 동안 50%의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연구가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4.2 연구 개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연구 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에서 정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D에 착수하도록 권장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업 사이에서 R&D 장려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는 이중 공제 인센티브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다음의 형태입니다.

- i 1967년의 소득세법 34(7)항에 따라 본질적으로 자본이 아닌 지출에 대한 특별 조항
- ii 1967년의 소득세법(ITA) 34A절에 따라 사내 연구 지출에 대한 특별 공제
- iii 1967년의 소득세법 34B절에 따라 승인받은 연구 기관에 현금으로 기부하거나 또는 승인받은 연구 기관이나 회사 또는 R&D 회사 또는 계약 R&D 회사의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한 대금에 대한 특별 공제.

세금 공제의 유형	34(7)절	34(A)절	34(B)절
	1회	2회	2회
신청 자격자	R&D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활동을 아웃소싱하는 사람은 34A 절 및 34B 절에 따른 세금 공제 자격이 없습니다.	사내 R&D 활동을 하는 사람	승인받은 연구소에 현금으로 기부하는 사람
	즉, ITA 인센티브 승인을 받은 R&D 회사의 관계 회사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적극적인 R&D 활동을 승인받은 R&D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교육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5.1 근로자 채용 비용에 대한 공제

근로자 채용 비용은 세금 계산의 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채용 박람회 참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 고용 기관에 대한 대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이들 비용은 사업 개시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2 채용 전 교육 훈련에 대한 공제

사업 시작 전 발생한 교육 훈련 비용은 1회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교육 훈련생을 반드시 채용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3 비직원 교육 훈련에 대한 공제

회사가 자사 직원이 아닌 거주자에게 실무 교육 훈련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1 회 공제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4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승인받은 산업, 기술 또는 직업 교육 훈련용 건물에 대한 지출 발생 시, 당해 회사는 건물의 건축 또는 매입에 대한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5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승인받은 교육 훈련 기관과 사내 교육 훈련 프로젝트 그리고 모든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작업실, 방송실, 어학실습실의 실험실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기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 및 국내소비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5.6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 면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비거주자 (상표권자) 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7 인적 자원 개발 기금(HRDF)

말레이시아의 인재 풀 채용에 대해서는 제 5장을 참조하십시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8 승인받은 교육 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는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조회사는 사업 시작 전 또는 후 교육 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지출이란 투자진흥청(MIDA)에 의해 승인받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육 훈련 기관에서 수행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을 교육 훈련하고 또한 직원의 솜씨, 감독 및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거나 또는 제품의 생산성 또는 품질을 높이는 데 발생한 지출을 말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9 구조적 인턴 프로그램(SIP)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인재공사(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의 승인을 받은 구조화된 인턴 프로그램(SIP)을 실시하는 현지의 고등 교육 기관(IPTA 및 IPTS)의 풀타임 학부생과 기술 및 직업 교육 및 훈련(TVET) 인재를 고용하는 회사는 이중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중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지출의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모든 인턴/학생에 대해 월 RM500 이상의 인턴 수당
- b. 연간 RM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턴/학생에 대한 교육 훈련, 식사 및 여행 제공.

이 인센티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며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www.hasil.gov.my에서 국세청(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자동화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6.1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본 공제

기업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최신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격 지출에 대해 기업이 자본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격 지출	자본 공제율
정보 통신 기술 (ICT)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구매에 발생한 지출.	초기 공제: 20% 연간 공제: 20%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적격 자본 지출에 대한 연간 공제액이 40%로 증가했습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발생한 지출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 라이선스 비용 및 부대 비용으로 구성된 경우.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6.2 스마트 자동화 보조금(Smart Automation Grant, SAG)

SAG는 2020년 6월 국가 경제 회복 계획, 즉 PENJANA에서 도입되었습니다. SAG는 적격 지출에 따라 매칭 기준(1:1)으로 기업당 최대 RM1,000,000까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SAG 인센티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SME) 및 중간층 기업(Mid-Tier Companies, MTC)이 운영, 생산 및 무역 채널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 하도록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 저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 고부가가치 부문의 일자리 기회 제공하며
- 국제적 수준에서 중소기업(SME)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국가산업정책 4.0에 부합하며
-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기업은 1975년의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에 따라 제조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인센티브

이 절은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조업, 농업, 항공우주, 관광, 환경관리, 연구 개발(R&D), 교육 훈련, 정보통신기술(ICT),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와 제조 관련 서비스 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인센티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7.1 산업용 건물 공제(IBA)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제공됩니다. 그러한 특정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 농업, 항공우주, 광업, 기반시설, 연구,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 및 관광부(Ministry of Tourism)에 등록된 호텔업.
- 교육부 장관(Minister of Education) 또는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 훈련, 학교 또는 교육 기관, 유치원.
- 사회복지과(Department of Social Welfare)에 등록된 사립 아동 돌봄 센터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2 MSC Malaysia 건물에 대한 산업용 건물 공제(IBA)

사이버자야(Cyberjaya) 내에 MSC Malaysia 자격 회사들이 사용할 더 많은 건물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사이버자야 내에서 MSC Malaysia

자격 회사들이 입주한 신축 건물의 소유자들에 대해 10년간 산업용 건물공제 (IBA)가 제공됩니다.

대상 신축 건물에는 준공은 되었으나 아직 MSC Malaysia 자격 회사들이 입주하지 않은 건물도 포함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해야 합니다.

7.3 감사 수수료 공제

사업 비용의 절감과 기업의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감사 수수료 지급으로 발생한 지출은 소득세 산정 시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으로 봅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4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종자 자금, 창업 준비 자금, 또는 창업 초기 자금조달단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는 총투자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다 많은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엔젤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총투자액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3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 (MOF)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mastic.mosti.gov.my/sti-incentive/angel-tax-incentive 를 통해 MOF(할랄 산업개발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7.5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설비 및 기계류를 포함한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과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 비용은 1967년의 소득세법 별표 3(Schedule 3)에서는 자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공제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무보고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 FRS) 116에서는 자산 비용은 자산의 해체, 철거 및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추정 소요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7년의 소득세법과 재무보고기준(FRS) 116 상의 조세처리 통일을 위해 1967년의 소득세법 별표 3에 다음의 조건 하에 설비 및 기계류를 포함한 자산의 해체 및 철거 비용과 설치 장소의 원상 복구 비용에 대한 균형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 총균형공제액은 공장 설비 및 기계류의 해체 및 철거와 설치 장소 원상 복구 비용을 당해 자산 처분 당시 설비 및 기계에 대한 지출 잔액에 합산하여 정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6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특허, 산업 디자인 또는 상표와 같은 소유권의 취득 시 비용이 발생하는 (70% 이상) 말레이시아 시민이 소유한) 제조 회사.

그와 같은 비용에는 발생한 컨설팅 수수료, 법률 수수료, 인지세를 포함하여 소유권 취득 비용. 단, 로열티 지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 발생한 5년 간의 비용에 대해 매년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 형태로 나옵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7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

a. 기계류/장비/원자재/구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 신청

농업 부문에서 선별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고 직접 수입되는 M&E에 대한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완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며 직접 수입되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기계류/장비/원자재/구성품의 수입 또는 구매 전 InvestMalaysia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b.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를 위한 MIDA 확인서 [Surat Pengesahan MIDA (SPM)]

주요 관세 지역(Principal Customs Area, PCA)의 제조업체는 기계류/장비/예비 부품/원동기/컨테이너 트레일러에 대한 수입 관세 및/또는 판매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격 기업은 MIDA에 SPM을 신청한 후 뒤 이어 수입 또는 구매할 기계류/장비/예비 부품/원동기/컨테이너 트레일러 목록과 함께 말레이시아 세관(세관)에 제출하여 면세를 청구하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PM 신청서는 기계류/장비/예비 부품/원동기/컨테이너 트레일러의 수입 또는 구매 전 InvestMalaysia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관세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허가는 mysst.customs.gov.my 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가 세관 통제소(State Customs Control Station) 산업과 (Industrial Section)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 MRO 활동에 대한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MRO 활동에 대한 판매세 면제

스케줄 A, 판매세(납세 면제자)(수정)(2호) 명령 2018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항공우주 MRO 회사는 다음에 대해 판매세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3A 항목에 따른 기계류, 장비, 특수 도구 그리고

❖ 말레이시아 내 MRO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33B 항목에 따른 예비 부품, 구성품, 재료 및 특수 소모품

자체 신고 절차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수입 또는 구매 전에 MIDA에 SPM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사는 판매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PM과 기계류, 장비, 특수 도구, 예비 부품, 구성품, 자재 및 특수 소모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합니다.

SPM 신청은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세 면제 신청은 관세 포털 MySS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MRO 활동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등록된 항공우주산업 MRO 회사는 기계류, 장비, 특수 도구, 예비 부품, 구성품, 재료 및 전문 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입관세 면제에 대한 신청서는 재무부 (MOF)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d. 화물 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제조업체가 자사 상품을 사바주와 사라왁 주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의 항구로 해상 운송할 경우, 화물 운송료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e. 말레이시아 상표 촉진에 대한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 상표를 육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상표의 등록된 소유권자인 회사 또는 이와 같은 그룹 내 회사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당해 상표 광고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 회사는 말레이시아 상표의 등록 소유권이 5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 공제는 한 과세 연도에 1개 회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해 제품은 수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8 환경 보호를 위한 기부

오로지 환경 보호와 보존만을 위해 승인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단 한 차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9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업,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 호텔 또는 관광 사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당해 건물의 건축/매입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구서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IRB)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 서비스 부문에 대한 촉진 및 인센티브

제조 부문과는 별도로, 말레이시아는 서비스 부문의 선택된 산업에서 활동을 준비하는 회사에 유리한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책 중 일부(촉진 및 인센티브 형태)는 MIDA의 권한에 속합니다.

8.1 지역 운영 사무소

대표 사무소(RE), 지역 사무소(RO), 주요 허브 또는 글로벌 공유 서비스 중 하나의 형태로 말레이시아에 지역 사무소를 설립하는 회사는 MIDA로부터 촉진 서비스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및/또는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사무소 운영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 Booklet 2: Regional Operations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2 연구 개발(R&D)

말레이시아에서 R&D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MIDA의 촉진 서비스, 정부의 재정 지원,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및/또는 관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사무소 운영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 Booklet 3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ervices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3 석유 및 가스(O&G) 서비스

R&D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서비스 부문 투자 소책자 3 연구 및 개발 (R&D)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O&G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Tax Incentives: Compilation and Guide for Oil and Gas Services and Equipment (OGSE) Sector and Malaysia's Oil and Gas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4 접객 서비스

말레이시아의 접객 산업 회사는 MIDA의 촉진 서비스, 정부의 재정 지원 및/또는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접객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 Booklet 9: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5 교육 및 산업 교육 훈련 서비스

말레이시아에서 교육 및 산업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MIDA의 촉진 서비스,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및/또는 관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 및 산업 교육 훈련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 Booklet 10: Education and Industrial Training Services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6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말레이시아 의료 및 건강 관리 산업의 회사는 MIDA의 촉진 서비스 및/또는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 Booklet 15: Medical and Health Care Services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7 물류 및 공급망 서비스

말레이시아의 물류 및 공급망 산업 기업은 MIDA의 촉진 서비스,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및/또는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 및 공급망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 Booklet 4: Logistics Services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8 환경 관리

말레이시아에서 환경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MIDA의 촉진 서비스,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및/또는 관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환경 관리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 Booklet 7: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s 및 Malaysia's Green Technology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9 IP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에서 개발된 지적재산(IP)에서 파생된 소득만이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수정 넥서스 접근(Modified Nexus Approach)에 관한 지침의 저축을 받기는 하지만, 적격 지식재산(IP) 자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적격 지식재산(IP) 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회사는 최장 10년간 적격 지식재산 소득에 대한 완전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 '적격 IP 자산'은 1983년 특허법[법 29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른 특허 또는 유틸리티 혁신을 말합니다. 1987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가족 적격 IP(R&D에서 발생한 지출의 어느 부분이 해당 권리의 생성에만 발생했는지 식별할 수 없도록 상호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적격 IPR 특정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여 파생된 소득의 일부가 특정 권리를 사용함으로써만 파생되는 부분).
- '적격 IP 소득'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34A/34B 절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회사는 이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2년 12월 31일에 효력이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합니다.

8.10 디지털 서비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 기업은 MHODA(말레이시아 디지털 아세안의 심장부) 포털을 통해 MIDA 및 MDEC의 촉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포털은 디지털 투자 사무소(DIO, Digital Investment Office)의 후원 하에 디지털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 사정 및 평가하여 디지털 투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더 빠르고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는 단일 진입점을 통해 투자 관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진입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 MyDIGITAL의 목표에 맞추어 양질의 디지털 투자 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MHODA는 www.heartofdigitalasean.my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mdec.my/dio/>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8.11 기타 서비스 산업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MIDA는 서비스 부문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타 산업 분야에 관한 소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전문 기술 지원 서비스
소책자 5

정보 통신 기술 서비스
소책자 6

분배 무역 서비스
소책자 8

법률 서비스
소책자 11

회계, 감사 및 세무 서비스
소책자 12

건축 컨설팅 서비스
소책자 13

측량 컨설팅 서비스
소책자 14

경영 컨설팅 서비스
소책자 17

시장 조사 서비스
소책자 18

광고 서비스
소책자 19

이 모든 소책자는 MIDA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mida.gov.my/publications/malaysia-investment-in-the-services-sector/

기타 간행물도 MIDA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www.mida.gov.my/publications/

제 3 장

말레이시아의 법인세 납부 의무의 최적화





1. 말레이시아의 조세 제도
2.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3. 법인세
 - 3.1 거주자 지위
 - 3.2 소득세 세율
 - 3.3 세금의 징수
 - 3.4 세금 징수
4. 개인소득세
 - 4.1 거주자 지위
 - 4.2 거주자 개인의 세율
 - 4.2.1 인적 공제
 - 4.2.2 세금 환급
 - 4.3 비거주자 개인
5. 원천징수세
6. 부동산 양도소득세
7. 판매세 및 서비스세
 - 7.1 판매세
 - 7.1.1 판매세 세율
 - 7.2 서비스세
 - 7.2.1 과세 가능한 서비스
 - 7.2.2 과세
 - 7.2.3 서비스 세율
 - 7.2.4 신용카드 및 고객카드에 대한 서비스 세율
8. 수입 관세
9. 소비세
10. 이중과세방지협약



말레이시아의 법인세 납부 의무의 최적화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는 국가로의 투자 유치와 필요한 정부 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세수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소득이 과세되는 방식과 법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감세 및 세금 공제를 이해함으로써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금액의 세금을 확실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말레이시아의 조세 제도

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획득한 소득 또는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수령한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은행, 보험,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기업을 제외한 개인이 과세연도 동안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수령한 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조세 행정 제도를 현대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개인사업자, 파트너 회사, 협동조합 및 봉급생활자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 납세 (self-assessment) 제도가 시행되었고, 소득세 사정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행 기간이 어떻게 되든 사업에서 발생한 이득 또는 이윤.
- ❖ 고용으로 발생한 이득 또는 이윤(급여, 보수 등).
- ❖ 배당금, 이자 또는 할인금
- ❖ 임대료, 로열티 또는 할증 수익
- ❖ 연금, 보험 연금 또는 기타 정기 지급금
- ❖ 기타 소득 성격의 이득 또는 이윤

3. 법인세

3.1 거주자 지위

회사 업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당해 회사는 거주자 회사로 간주됩니다. 경영과 통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이사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행사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2 소득세 세율

2016년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4%입니다. 이 세율은 다음의 사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신탁 기관
- ❖ 사망 시 말레이시아 국외에 주소지를 두었던 개인의 재산에 대한 유언 집행자
- ❖ 법원이 지정한 수령인. 그리고
- ❖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과세 기준연도 초에 납입자본금/자본 기여 금액이 RM250만 이하이고 연매출이 RM5천만 이하인 말레이시아 거주자 회사와 유한 책임 파트너회사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최초의 RM60만 과세 소득에 대해 - 17%
 그 이후의 과세 소득에 대해 - 24%
 석유 공급 체인의 1차 부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38%의 석유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3 세금의 징수

어떤 평가연도(YA)에 대한 회사의 미지급 세금(CP204) 추정치는 다음을 제외하고 기준 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국세청 사무국장(DGIR)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납입자본금이 RM250만 이하인 새로 설립된 회사(SME)는 특정 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영을 시작한 평가연도(YA)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 평가연도(YA)에서 사업 운영을 시작하는 회사는 회사가 운영을 시작하는 평가연도(YA)의 기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금 추정치를 제공하거나 또는 분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회사 기준 기간의 2번째 달부터 시작하여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금의 잔액은 회사의 신고서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3.4 세금 공제

일반적으로 조정된 수입은 총소득에서 총소득 생산에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발생한 모든 유출과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확인됩니다.

zakat perniagaan의 납부는 회사의 총소득을 확인할 때 세금 공제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제 금액은 관련 평가연도에서 종합소득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정부, 주 정부, 지방 당국, 또는
- ✓ 말레이시아 국세청위원회(Inland Revenue Board Malaysia, IRBM) 사무국장이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또는

- ✓ 재무부장관 또는 체육청장이 승인한 스포츠 활동, 또는
- ✓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국익 사업

4. 개인소득세

4.1 거주자 지위

개인의 과세 거주자 신분은 1967년의 소득세법 제 7절에서 규정한 대로 말레이시아 체류 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은 과세 대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4.2 개인 거주자의 세율

개인 거주자는 2020 평가연도(YA)부터 0-30%의 누진세율로 인적 세금 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4.2.1 인적 공제

거주자 개인의 과세 소득은 총소득에서 인적 공제를 차감한 후 산출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개인 공제의 유형	2020 평가연도 (RM)
1.	본인 및 부양가족	9,000
2.	부모님 의료비, 특별 수요 또는 돌봄 서비스 비용	8,000 (한도)
3.	장애자 개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위한 기초적인 보조 기구	6,000 (한도)
4.	장애자 개인	6,000
5.	교육비	7,000 (한도)
6.	개인, 배우자 및 자녀의 중대질병 치료 및 개인 또는 배우자의 불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전체 건강 검진은 최대 RM1,000, 예방접종은 최대 RM1,000 포함)	8,000 (한도)
7.	생활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정기간행물, 잡지, 간행물 및 전자신문 구입 또는 구독 ✓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구입 ✓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 장비의 구입 ✓ 개인 명의로 등록된 광대역 인터넷 이용료 	2,500 (한도)

8	국립교육저축제도(SSPN)의 순 저축액(2022 평가연도까지)	8,000 (한도)
9	남편/아내/이혼 위자료 지급액	4,000 (한도)
10	장애인 배우자	5,000
11	일반 자녀 공제	2,000 (한도)
12	정식 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A" 레벨, 증명서, 대학 예비 과정)	2,000 (한도)
13	18세 이상의 미혼 자녀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에서 준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과정(대학 예비 과정은 제외) 재학 중 ❖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학위 또는 동등 학력 취득 과정(석박사 포함) 재학 중 	8,000 (한도)
<p>훈육 및 교육 기관은 해당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14	장애 자녀 <p>말레이시아에서 준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관련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 과정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미혼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RM 8,000의 추가 면세</p>	6,000 (한도)
15	생명 보험 및 EPF (근로자공제기금)	생명 보험: 3,000 (한도) EPF: 4,000 (한도) 연금 퇴직 제도를 선택한 공무원: 7,000 (한도)
16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SC)가 승인한 개인연금제도와 거치 연금 납부료	3,000 (한도)

17	교육 또는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보험료	3,000 (한도)
18	사회보장기구에 대한 기부(SOCSO)	250 (한도)
19	모유 수유 기구 구입	1,000 (한도)
20	어린이 돌봄 센터 및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3,000 (한도)
21	스포츠 용품 구입, 스포츠 시설 대여/입장료 및 체육 대회 등록비	500 (한도)
22	국내 여행비(2021 평가연도까지) (2020년 3월 1일과 2021년 12월 31일 사이 쓴 금액)	1,000 (한도)

4.2.2 세금 환급

거주자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다음의 환급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 과세 소득이 RM35,000 미만인 거주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 환급

과세 소득이 RM35,000 이하인 개인은 RM4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부인의 소득이 합산 사정될 경우, 부인은 Rm400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세금 환급	2009 평가연도부터 (RM)
a	별도 사정	
	아내 남편	400 400
b	통합 사정	
	아내 남편	400 400
	총계	800
c	남편 또는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의 사정	
	아내 남편	400 400
	총계	800

- 기타 세금 환급

번호	세금 환급	(RM)
a	자캇/피트라(Zakat/Fitrah)	최대 과세액까지
b	움라(umrah) 및 성지 순례 수행에 대해 납부하는 출국세(일생에 두 번)	실제 지출 금액

4.3 비거주자 개인

2020 평가연도부터 비거주자 개인은 인적 공제 없이 3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5. 원천징수세

비거주자 개인은 다음에 대해 원천징수세의 저축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 소득 유형에 대해 10%

- 재산 또는 권리의 이용, 플랜트, 기계류 또는 기타 기구의 설치 또는 운전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종업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
- 과학, 산업, 상업적 사업, 벤처, 프로젝트 또는 계획의 관리 또는 행정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문, 지원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임대료 또는 동산(moveable property)의 사용을 위한 계약/합의에 따른 기타 지불금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제공하거나 수행한 (a) 및 (b)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제공한 기술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말레이시아 내 호텔 숙박 관련 지급 비용 또는 정산 비용은 원천징수 목적의 총기술 수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납된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에 지급된 총액이 아니라 미납 세액에 대해서만 1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부동산 양도소득세(RPGT, Real Property Gains Tax)

말레이시아에서는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물권, 옵션 또는 기타 권리의 처분은 물론, 부동산 회사의 주식 처분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RPGT)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자산에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대한 모든 이권, 옵션 또는 기타 권리와 부동산 회사의 주식 처분이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 자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파트 I	파트 II	파트 III
파트 II 및 파트 III 이외 (예: 개인)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 또는 1966년 협회법 (Societies Act 1966)에 따라 등록된 신탁 또는 협회의 수탁자	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 유언 집행인, 비시민권자 및 비영주권자 또는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3년 이내	30%	30%	30%
4차 연도	20%	20%	30%
5차 연도	15%	15%	30%
6차 연도 및 이후 연도	5%	10%	10%

일반적으로 RPGT는 허용된 비용을 공제한 후 과세 가능한 이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세금 혜택이 부여됩니다.

- ❖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개인이 처분한 개인 주택 1개에 대해 일생에 한 번 면세.
- ❖ 개인이 부과할 수 있는 자산 처분에 대해 RM10,000 또는 부과 가능한 이익의 10%(둘 중 더 큰 금액) 면세.
- ❖ 증여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 사이의 증여를 통해 과세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데 대해서는 이득 및/또는 손실이 없습니다.

기업 및 개인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hasil.gov.my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판매세 및 서비스세

2018년 9월 1일부터 2018년의 판매세법(Sales Tax Act)과 2018년의 서비스세법(Service Tax Act)이 각각의 하부 법령과 함께 도입되어 2014년의 상품서비스세법(GST)을 대체했습니다.

7.1 판매세

2018년의 판매세법에 따라 판매세는 수입 또는 국내 제조 상품에 대해 수입 시점 또는 해당 상품의 판매 시점 또는 등록된 제조자에 의해 처분된 시점에 부과 및 징수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과되는 판매세는 단일 단계 세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완제품과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판매세는 상품이 판매되거나,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되거나, 또는 상품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된 시점에 등록된 제조자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과세 대상 상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수입 상품에 대한 판매세는 해당 상품이 신고되고, 관세가 납부되고, 또한 세관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부과됩니다.

12개월 이내에 RM500,000을 초과하는 판매금액의 과세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2018년의 판매세법(Sales Tax Act 2018) 제12절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매액이 RM500,000 이하인 과세 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2018년의 판매세법 제14절에 따라 자진 등록하여 이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12개월 이내 하청 공사의 총노임이 RM500,000을 초과하는 제조자는 2018년의 판매세법 제 12절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7.1.1 판매 세율

판매세는 증가세(ad valorem tax)의 일종으로 해당 조항에 나와 있듯이 과세 대상 상품 그룹에 따라 (5%~10%의)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석유 판매세는 여타 과세 상품과는 달리 특별 세율로 부과됩니다.

7.2 서비스세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세는 “과세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된 특정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 단일 단계 세금 형태입니다. 서비스세는 2018년의 판매세 규정의 첫 번째 요율표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정한 과세 가능한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에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2018년의 판매세법(STA 2018)은 지정 지역, 자유무역 구역, 허가받은 창고(LMW, 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허가받은 제조 창고 및 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Area, JDA)을 제외하고는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용됩니다.

7.2.1 과세 가능한 서비스

과세 가능한 서비스는 2018년의 서비스세 규정 (Service Tax Regulations 2018)의 첫 번째 요율표에 들어 있는 다양한 범주에 목록이 올라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과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에 규정된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과세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 범주에는 숙박, 식료품업자,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 센터, 개인 클럽, 골프 클럽 및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베틱 및 게임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그리고 보험, 통신, 주차장 사업자, 광고 등의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이 들어 있습니다.

7.2.2 과세

서비스세는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등록된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하는 과세 가능한 서비스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 부과됩니다. 서비스세는 등록된 개인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과세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대금을 수령했을 때 부과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7.2.3 서비스 세율

2018년의 서비스세(세율) 명령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서비스세율은 2018년의 STA(Sales Tax Act, 판매세법 2018) 제 9절에 따라 정해진 바와 같이 과세 가능한 서비스 대상이 되는 보험 증권 가격 또는 보험료, 배팅 및 게임료 등등의 6%입니다.

7.2.4 신용카드 및 고객카드에 대한 서비스 세율

신용카드와 고객카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세율은 주 카드 및 보조 카드에 대해 공히 연 RM25입니다. 서비스세는 카드 발급 일자와 그 후 12개월마다 또는 카드 발급 후 몇 개월마다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카드 갱신일자와 그 후 12개월마다 또는 카드 갱신 후 몇 개월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ysst.customs.gov.my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수입 관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는 대부분 증가세(ad valorem) 부과 대상이 되나, 많은 품목의 경우 종량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자유화에 발맞추어 광범위한 상품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상품교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의 회원국으로 이 협정에 따라 ASEAN 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99% 이상에 대해 수입관세가 2010년 1월 1일부터 효과적으로 폐지되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상품 교역, 원산지 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및 인도, 칠레 및 호주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또한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 홍콩 및 인도와는 아세안(ASEAN) 산하의 지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는 합의된 일정대로 인하되거나 폐지될 것입니다.

2012년 11월 출범한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0년 11월 15일 10개의 ASEAN 회원국(AMS)과 5개의 ASEAN FTA 동반자 국가(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가 서명했습니다. 현재 AMS와 AFP는 2022년 4분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RCEP를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정은 발효를 위해 최소한 6개의 AMS와 3개의 AFP가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소비세

소비세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선정된 품목, 즉, 담배, 담배 제품, 알코올 음료, 플레잉 카드, 마작용 타일과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소비세는 자동차, 플레잉 카드와 마작용 타일에 대해서는 증가세(ad valorem rates)가 부과되는 한편, 담배, 담배 제품과 주류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증가세를 결합한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해 소비세를 다음 도표의 내용대로 부과해 왔습니다.

관세번호	범주	전당	소비세	예:
2009	과일 주스, 야채 주스	>12 gram/100m	RM0.40/litre	오렌지 주스, 라임 주스
2202	a) 탄산음료, 낙농 제품 외의 비알코올음료	>5 gram/100m	RM0.40/litre	콜라, 아이소토닉 음료, 탄산음료
2202	b) 낙농 제품 기반 음료	>7 gram/100m	RM0.40/litre	초콜릿향 우유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다음 일정에 따라 전자담배, 베이핑(전자담배 흡연) 장치 및 흡연 장치에 대한 소비세를 시행해 왔습니다.

관세번호	범주	소비세	예:
3824.99.9910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 또는 젤 형태의 전자 및 기화기를 통한 흡연에 사용되는 제제	RM 0.40/ml	전자담배 흡연 액상
8573.70.9010	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기	10%	전자담배 장치, 베이핑(전자 담배 흡연) 장치
9614.00.9010	흡연 파이프(파이프 볼 포함)	10%	흡연 파이프

소비세 대상 상품 및 관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세 명령 2017(Excise Duties 2017)을 참조하십시오.

10. 이중과세방지협약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은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의 흐름에 관해 각국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세금 감면 또는 면제를 제공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양국 간에 체결되는 협약입니다.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외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 ✓ 말레이시아의 특별한 조세 인센티브가 자본 수출국의 납세자에게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 ✓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세금 감면에 비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 조세 포탈과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많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또한 국제조세협약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세계와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의 필요성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산업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외국인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조세 분야에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보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조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Countries

알바니아	핀란드	몰타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프랑스	모리셔스	슬로바키아공화국
호주	독일	몽골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홍콩	모로코	스페인
바레인	헝가리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나미비아	수단
벨기에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스웨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란	뉴질랜드	스위스
브루나이	아일랜드	노르웨이	시리아
캄보디아	이탈리아	파키스탄	태국
캐나다	일본	파푸아 뉴기니	터키
중국	요르단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칠레	카자흐스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한국	카타르	영국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루마니아	미국*
체코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라오스	산마리노	베트남
이집트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피지	룩셈부르크	세이셸	짐바브웨

*제한적인 협약

대만(말레이시아 주재 타이베이경제문화사무처(TECO,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Office)가 대리함)의 경우 다음의 소득세면제령(Income Tax Exemption Order)을 통해 이중과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 P.U.(A) 201 (1998)
- P.U.(A) 202 (1998)

말레이시아의 과세 관련 자세한 정보는 www.hasil.gov.my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또는 lhdn_int@hasil.gov.my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 4 장

말레이시아 입국 및 취업





- 1. 말레이시아 입국 요건**
 - 1.1 비자 또는 여행 서류
 - 1.2 비자 요건
 - 1.3 방문비자(Pass) 요건
 - 1.3.1 단기(단순) 방문비자
 - 1.3.2 장기(단순) 방문비자
 - 1.3.3 (단기 취업) 방문비자
 - 1.3.4 취업 방문비자
 - 1.3.5 전문직 방문비자 (PVP)
 - 1.3.6 동반 방문비자
 - 1.3.7 학생 방문비자

- 2. 해외 주재원의 취업**
 - 2.1 해외 주재원의 보직 유형
 - 2.1.1 주요 보직
 - 2.1.2 한시 보직
 - 2.2 해외 주재원의 고용 지침

- 3.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
 - 3.1 MyFutureJobs

-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말레이시아 입국 및 취업

말레이시아는 국가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다문화 구성을 풍부하게 하는 비즈니스 방문객과 해외 주재원 근로자를 환영합니다. 특정 수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자와 단기 체류 및 장기 고용을 위한 여행 패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외 거주자 커뮤니티는 활기찬 커뮤니티로 국가의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에 기여합니다.

1. 말레이시아 입국 요건

1.1 여권 또는 여행 서류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개인은 유효한 말레이시아 여권 또는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데 효력이 있고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여행 서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들 서류는 적어도 말레이시아 입국일자 6개월 전에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인정하지 않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반드시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물론, 해외의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는 각국의 가장 가까운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비자 요건

비자는 외국인의 여권 또는 기타 인정된 여행 문서에 당해 문서 소지인이 말레이시아 입국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날인된 승인 도장을 말합니다.

말레이시아 입국을 위해 비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은 반드시 입국 전 해외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에서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별 비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 아이보리코스트
• 앙골라	• 코소보
• 방글라데시	• 라이베리아
• 부탄	• 말리
• 부르키나 파소	• 모잠비크
• 부룬디	• 미얀마
• 카메룬	• 네팔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나이지리아
• 중국	• 니제르

• 콜롬비아	• 파키스탄
• 공고민주공화국	• 르완다
• 공고공화국	• 세르비아
• 코트디부아르	• 몬테네그로
• 지부티	• 스리랑카
• 적도 기니	• 유엔(Laissez Passer)
• 에리트리아	• 서사하라
• 에디오피아	• 신분증명서
• 가나	• 여행 목적
• 지니-비사우	• 旅行の名目
• 홍콩(신분증명서 또는 신분증빙서류)	
• 인도	

이스라엘 및 북한 국민의 경우 반드시 말레이시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상기 국가 이외의 여타 국가(이스라엘 제외) 국민은 1개월 이하 체류 시 방문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입국이 허용됩니다.

유의사항:

* 신원 조회를 거친 비자, 즉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1.3 방문비자(Pass) 요건

단순 방문 또는 사업상 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입국 시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도착 전에 방문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비자는 승인된 기간 동안 체류를 허가한다는 취지로 여권 속에 찍힌 승인 도장을 말합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인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서의 일시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비자를 입국 시점에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말레이시아 내에 후견인이 있어야 하며, 방문자의 말레이시아 체류 기간 동안 신원과 필요 시 본국 송환을 책임지겠다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국 시 외국인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체류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3.1 단기 (단순) 방문비자

단순 방문 또는/및 다음과 같은 사업상 방문 목적의 외국인에게는 방문비자가 발급됩니다.

- 회사의 회의, 총회 또는 세미나 참석, 회사의 회계 조사 또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회사의 소유주와 대표

- 사업과 투자 기회 또는 제조 공장 설립을 탐색하고자 입국하는 투자자 또는 사업가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기 위한 제품을 소개는 하되 직접 판매나 유통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회사 대표
- 재산의 판매 또는 임대 협상을 위해 입국하는 재산 소유자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취재할 목적으로 입국하는(말레이시아 내무부의 승인) 대중 매체의 외국인 언론인 또는 기자
- 스포츠 행사 참가자
- 말레이시아 현지의 대학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 또는 친선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
- 상기 활동 외에 이민국장이 승인한 여타 활동 목적으로 입국하는 방문객

이들 방문비자는 취업이나 신규 기계류의 설치 감독 또는 공장 설립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1.3.2 장기 (단순) 방문비자

장기 단순 방문비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의 자격에 따라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의 배우자로 장기 단순 방문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어떤 형태이든 그리고 자신의 단순 방문비자를 취업 방문비자 또는 (임시 취업) 방문 비자로 전환하지 않고서도 어떤 사업이나 전문 직업에 유급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는 승인 시 서명을 받습니다.

1.3.3 (단기 취업) 방문비자

2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단기 취업) 방문비자가 발급됩니다.

1.3.4 취업 방문비자

취업비자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신청자가 관련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외 주재원 지위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1.3.5 전문직 방문비자(PVP)

전문직 방문비자는 외국인이 대행회사와의 단기 계약 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PVP(Professional Visit Pass)는 말레이시아에서 단기간 특별(Professional)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재원에게 지급되며, 급여는 해외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이 방문비자는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실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 또는 해외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전문직 방문비자 허가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자격 외국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기술 이전 • 연구 • 훈련 등 https://esd.imi.gov.my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촬영 또는 공연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앨범이나 신제품의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epuspal.kkmm.gov.my
선교사(이슬람 또는 기타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푸트라자야(Putrajaya) 이민부, 비자, 방문비자 및 허가 부서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은 다양하나 어느 한 시점에서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신청은 관련 대행회사가 하여야 합니다.

1.3.6 동반 방문비자

동반 비자는 해외 주재원 공무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편의 제도입니다. 동반 비자는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18 미만의) 자녀, 부모 및 사실혼 관계의 부인에게 발급됩니다.

(장기) 단순 방문비자는 18세 이상의 자녀(생물학적, 의붓자식, 법적 입양), 부모, 시부모, 그리고 취업비자 소지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동반 비자는 취업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취업 비자가 발급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취업) 방문비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됩니다.

1.3.7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말레이시아 내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educationmalaysia.gov.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주재원의 취업

말레이시아 정부는 궁극적으로 말레이시아인이 모든 취업 직종에서 훈련을 받아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모든 직급의 취업 패턴이 말레이시아의 다민족 구성을 반영하도록 회사는 더 많은 말레이시아인을 훈련할 것을 권장받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은 말레이시아인이

부족할 경우, 회사는 해외 주재원을 ‘주요 보직’ 또는 ‘한시 보직’으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주요 보직은 영구적으로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보직인 반면, 한시 보직은 특정 기간 이내 충원되는 보직입니다.

해외 주재원의 보직 유형

해외 주재원은 다음의 보직에 충원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2.1.1 주요 보직

이 보직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소유의 개인 회사와 법인의 고위 관리직을 말합니다. 주요 보직은 회사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직입니다. 해외 주재원은 회사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방침을 결정할 책임을 집니다.

2.1.2 한시 보직

a. 임원 보직

이 보직은 중간급 관리자 및 전문가 보직을 말합니다. 이 보직은 해당 직종 관련 전문 자격, 실무 경험, 기술 및 전문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해외 주재원은 회사의 사업 집행과 직원 감독의 책임을 집니다.

b. 비 임원직

이 보직은 특정 또는 실무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기술직을 수행하는 보직입니다.

2.2 해외 주재원의 고용 지침

해외 주재원의 고용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 ❖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관련 인가 단체에의 파견직 보직 신청
- ❖ 해외 주재원에 대해 승인 기관이 승인하는 즉시 회사는 반드시 이민국에 취업비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제조 활동, R&D 활동 및 의료 기기 시험 연구소를 수행하고 운영하며 투자진흥청(MIDA) 관할의 조세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회사

제조 활동과 R&D 활동 및 의료기기 시험 연구소를 수행하고 운영하며 투자진흥청(MIDA) 관할의 조세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최저 납입자본금 요건을 구비한 해외 주재원 보직의 고려 대상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 100%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 RM25만
- 외국인과 말레이시아인 공동 소유: RM35만
- 100% 외국인 소유 회사: RM50만

주요 보직의 승인은 회사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설립되어야 하며 적어도 RM1백만의 외국인 납입자본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의 저축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요 보직의 숫자는 외국인 납입자본금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한시 보직에 대한 승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최저 기본급 RM5,000 이상
- ✓ 최저 학력 및 최저 경력

학력 자격 요건

제조회사 -

-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그리고/또는
- 준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그리고/또는
- 기술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제안하는 학력/경력 중 높은 자격.

계약 R&D 회사, R&D 회사 및 사내 R&D 회사

-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그리고/또는
- 준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제안하는 학력/경력 중 높은 자격.

해외 주재원의 수는 각 사안별 타당성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인이 전체 또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계약 R&D 회사, R&D 회사 및 사내 R&D 회사는 총 R&D 직원의 최대 50%, 즉 해외 주재원 대 말레이시아인 R&D 직원의 비율이 최대 1 대 1의 조건의 저축을 받습니다. 한시 보직의 기간은 최대 5년 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MIDA(투자진흥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및 국제조달센터(IPC) 그리고 주요 허브(Principal Hub)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국제조달센터(IPC) 및 주요 허브(Principal Hub)의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국제조달센터(IPC)는 최소한 납입자본금이 RM50만 이상인 경우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주요 허브(Principal Hub)는 RM250만 이상의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의 수는 회사의 요건을 기준으로 고려되며, 한시 보직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및 국제조달센터(IPC) 그리고 주요 허브(Principal Hub)의 해외 주재원의 승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해외 주재원의 최저 기본급 RM5,000 이상

✓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회사가 제안하는 학력/경력 중 높은 자격.

✓ 말레이시아인 소유의 운영본부(OHQ),
지역개발법인(RDC), 국제조달센터(IPC) 회사는
최저 납입자본금 RM50만의 저축을 받는 주요
보직에 대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MIDA(투자진흥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c.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의 해외
주재원(한시 보직) 신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운영 지출 최소 RM30만 이상

✓ 해외 주재원의 최저 기본급 RM5,000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출과 기본 급여는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의 제안대로 실행됩니다.

한시 보직의 수는 각 사안별 타당성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한시 보직 승인 기간은 투자진흥청
(MIDA)의 승인을 받은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의 지위 유지 기간과 같습니다.

지역 점포/지역 사무소의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은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d. 농업 - 원예학 및 화초 재배 포함

어업, 축산업 및 농업 분야의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신규 회사와 기존 회사를 위한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서는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주재원 보직에 대한 승인은 제조 부문에
대해 규정된 승인과 비슷한 승인 지침과
조건에 따라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3.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

제조 및 관련 서비스 부문의 신규 및 기존 회사(
확장 또는 다변화를 추진하지 않는 회사 포함)의
해외 주재원 보직 신청서는 말레이시아투자진흥청
(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조
허가를 취득해야 할 회사는 물론이고 제조
허가 취득을 면제받은 회사도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해외 주재원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투자진흥청(MIDA)에 해외 주재원 보직
지원에 앞서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의 권한 하에 MYFutureJobs 포털에서
최소 30일 동안 공석을 광고하여야 합니다.

3.1 MyFutureJobs

민간 및 공공 부문 채용 시 말레이시아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인적자원부
(MOHR)는 2020년 6월 4일 내각 결정에
따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 30일 동안 MyFutureJobs
포털에서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범주에 대해 구인 광고 면제가 허용됩니다.

a. 중요 직위

(C-Suite & Key Posts) 또는 월 소득이
RM15,000 이상인 국외 거주자(들).

b.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

회사/조직 본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해외 조직/기업의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
(RO). 지역 점포(RE)/지역 사무소(RO)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RE/RO
운영의 경우 회사는 1965년 회사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주재원을
고용하려면 MIDA의 승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c. 투자자 / 주주 / 소유자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개인입니다.

한편, 주주는 최소 3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이사로 임명되거나 회사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직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d. 기업 양도 / 배치 / 무역 계약

파견 주재원은 교육 훈련 또는 회사 간 지식/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의 지사
또는 회사 그룹에서 일하고 회사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기업에서 배정합니다.

e. 국제 기구

국제기구법(특권 및 면책)(법 485)의 저축을
받는 기구는 외국 국민 중에서 외국인 채용
직원(FRS)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기술직의 공석은 MYFutureJobs 구인광고
의무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전문 기술직에는
회사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고유한 기술과 전략적 역량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MYFutureJobs 포털에서 구인 광고 면제를 받기
위해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CO)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bit.ly/PDKKPERKESO를 통해 PDKK 양식(
전문 기술 파견직 주재원)을 작성하고 또한 이 PDKK
양식에 그와 같은 직위에 전문 기술 광고 면제가
필요한 정당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구(SOCSCO)가 해당 직책을 광고 면제
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MYFutureJobs
에 광고해야 하는 요건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만약
해당 직위가 전문기술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회사는 반드시 최소 30일 동안 MYFutureJobs
에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현지 인재 확보를 위한
면접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직의 경우
면제 상태 여부를 이메일로 회사에 알려 줍니다.

MYFutureJobs에 관한 질의는 사회보장기구(SOCSO)의 고객센터(1-300-22-8000/03-8091 5300)로 연락하거나 papd@perkeso.gov.my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 건설, 플랜테이션, 농업, 광업 및 채석업, 그리고 가사 도우미 부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은 6개 하위 부문으로 한정됩니다. (음식점, 청소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골프 클럽의 캐디직(남성만), 도/소매업, 호텔/리조트 섬 등).

승인은 각 사례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수시로 결정되는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청은 유자격 현지 시민 및 영주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만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간 부담금이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승인된 부문	연간 부담금 (반도) (RM)	연간 부담금 (사바주/ 사라왁주) (RM)
제조업	1,850	1,010
건설업	1,850	1,010
플랜테이션	640	590
농업	640	410
광업 및 채석장	1,850	1,490
서비스	1,850	1,490
서비스(섬 리조트)	1,850	1,010
국내 가사도우미	410	410

말레이시아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한 신청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청서는 모두 내무부, 원스톱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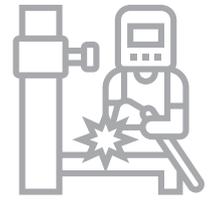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추가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 www.moha.gov.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위의 정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를 찾고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급변하는 특성과 정책 대응을 고려하여 상기 정보는 다른 행사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 보고 또한 www.imi.gov.my/portal2017/index.php/en/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5 장

말레이시아의 산업 인력





1. 인력 개발

- 1.1 산업 기능 훈련 시설물
- 1.2 인적자원개발공사(HRDC)

2. 노동 비용

3. 취업 알선 시설

4. 노동 기준

- 4.1 1955년의 고용법
- 4.2 사바주(Sabah)의 노동 조례와 사라왁주(Sarawak)의 노동 조례
- 4.3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EPF)
- 4.4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 4.5 1952년의 근로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1952)
- 4.6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5. 노사관계

- 5.1 노동조합
- 5.2 1967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 5.3 노조가 없는 단체의 관계



말레이시아의 산업 인력

말레이시아는 투자자에게 근면하고, 규율을 잘 지키며, 교육받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공급합니다. 인력 시장에 진입하는 말레이시아 청년층은 적어도 11년 간의 학교 교육, 즉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이수했으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동력의 27%가 제3차 교육(대학 및 직업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기술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제조 부문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술자, 기능공 및 기타 숙련된 기능 인력의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제공자와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산업계에 제공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있도록 졸업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이 강조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돈독하고 화목한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경쟁력 있는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노동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안정된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 증진 및 기술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된 국가들과 비교하여 말레이시아의 노동 비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동 생산성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연계된 급료제도, 자동화 및 기술 훈련을 비롯하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인력 개발

현재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의 인력국(Manpower Department)은 32 개의 기술 훈련 기관, 즉 23 개의 산업훈련대학(Industrial Training Institute, ITI), 8개의 첨단기술훈련센터(Advanced Technology and Training Centre, ADTEC) 및 일본말레이시아기술대학(Japan Malaysia Technical Institute, JMTI)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훈련대학(ITI)은 취업 전 또는 신입직원 단계에서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의 산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산업기술훈련 프로그램에는 기계, 전기 및 전자, 인쇄, 건축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및 비금속 기술 등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부는 기존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강사고급기술훈련센터(CIAST) 산하에 강사들에 대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 산업 기능 훈련 시설물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문학교, 기술학교, 종합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 및 산업훈련기관에서 다양한 산업 업종에서 근무할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나, 여러 민간 주도 기관들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근로자를 배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의 인력국과는 별도로, 훈련에 관여하는 기타 주요 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기술 직업 과정이 있는 기술학교를 9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 졸업자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취직하거나 또는 종합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의 준학사 학위(diploma) 과정이나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 또는 다른 정부 부서의 감독을 받는 기타 훈련 기관의 수료 과정으로 중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청년스포츠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는 22 개 국립청소년기술훈련센터(National Youth Skills Training Centre)와 고등국립청소년기술훈련센터(Higher National Youth Skills Training Centre)를 통해 초급, 중급, 고급 산업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과정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R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산하의 Majlis Amanah Rakyat (MARA), 즉, 원주민보호위원회(Council of Trust for the Indigenous People)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술훈련기관을 230 여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중급, 고급 및 전문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구에 맞는 인재의 맞춤형

투자진흥청(MIDA)은 산업계에 진출할 준비가 된 졸업생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학계, 기술 및 직업 기관, 지역 기반의 산업계 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상 중인 인더스트리 4.0 환경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서 지식을 두루 갖춘 숙련된 인재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재 파이프라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투자진흥청(MIDA)은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 제조 인턴십 프로그램(Manufactship)

고등교육부(MOHE)와의 협력 하에 제조 회사 및 서비스 회사는 구조적 인턴십 프로그램(SIP), 작업 기반 학습(WBL) 및 2u2i(대학 2년, 산업계 2년) 등과 같이 현재 고등교육부(MOHE)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부(MOHE)는 인턴 학생이 인턴으로 고용될 때까지 회사의 작업 환경에 통합될 수 있는 인턴십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회사를 지원합니다.

▶ 일대일 소통 프로그램

투자진흥청(MIDA)은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업계에 높은 수준의 현지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투자진흥청(MIDA)은 학생들에게 각자 일하던 직장에서 영구직 일자리를 제시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투자진흥청 견습 프로그램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게임 체인저로 밀어붙이려는 정치적 지지와 의지를 갖고 투자진흥청(MIDA)은 국가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의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니셔티브의 하나가 투자진흥청(MIDA), 견습프로그램인데, 이는 말레이시아 제조회사연맹(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 FMM)와 교육부(MOE) 간의 협력의 일종입니다.

이 견습 프로그램은 FMM 회원들이 강조하는 기술적 기능의 부족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에 직접 동화될 수 있는 숙련된 직업 근로자를 개발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2년 짜리 프로그램에서 해마다 6개월의 학업을 마친 후 추가로 6개월의 산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부(MOE)의 산하 직업 대학에서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최대 2~3단계의 말레이시아 기술 인증(MSC, Malaysian Skills Certification)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트레이너 훈련 프로그램

조호르(Johor)에 소재하는 총 7개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기관에서 총 23명의 마스터 트레이너가 NX Unigraphics(UG) 및 CAD/CAM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최신 정밀 기계 및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7개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호르 기술개발센터(PUSPATRI)
- 폴리테크닉 이브라힘 술탄(PIS)
- 산업연수원(ILP) 파시르 구당(Pasir Gudang)
- 산업연수원(ILP) 르당(Ledang)
- 고등 국립 청소년 기술 연구소(IKTBN) 파고(Pagoh)
- 마라 기술 연구소(IKM) 조호르 바루(Johor Bahru)
- 고급 기술 훈련 센터(ADTEC) 바투 파핫(Batu Pahat)

트레이너 훈련(Train-the-Trainer) 프로그램 후에는 일련의 'Cascading Workshops'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승수 효과'를 거두고 또한 트레이너가 새로운 기술 지식을 다른 트레이너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을 의료 기기 및 항공 우주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전진시키면서 기술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1.2 인적자원개발공사(HRDC)

인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인적자원개발공사(HRD Corp)는 2001년의 인적자원개발기금법(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 Act)의 통제를 받으며 또한 고용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고 또한 말레이시아 노동력을 위한 훈련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인재 개발 열망을 주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적자원개발공사(HRD Corp)는 다양한 범위의 기술, 배경, 능력을 가진 말레이시아 국민을 위한 고용 및 산업 훈련 배치, 직업 코칭 및 카운셀링, 소득 창출 기회 개발 등의 추진도 포함하도록 사명을 확대했습니다.

2001년의 PSMB Act 법(인적자원개발기금법)

2001년의 인적자원개발기금법(Pembangunan Sumber Manusia Act)(법 612)은 인적자원 개발공사(HRD Corp)의 역할, 책임, 기능 및 권한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직원, 견습생 및 훈련생의 교육 및 개발, 기금의 설립 및 관리, 기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 법의 첫 번째 별표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 부담금을 월 급여의 1% 비율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고용주 등록을 위한 자격 기준

강제적 범주 (1% 부담금)	말레이시아인 직원이 10명 이상인 고용주
자발적 범주 (0.5% 부담금)	말레이시아 직원이 5-9명인 고용주

2021년 3월 1일부로 이 법은 더 많은 부문과 하위 부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체 부문 목록은 www.hrdcorp.gov.my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노동 비용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부가 급부는 업종, 지역과 고용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공통적인 휴가 종류로는 연차 휴가, 공휴일, 병가, 입원 휴가, 출산 휴가 및 특별 휴가가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근무복 무상 지급, 교통비, 인센티브, 교대수당, 보험료와 같은 추가적인 부가 급부를 제공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사 실적과 개인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령 (Minimum Wages Order) [P.U. (A) 305/2018]이 2020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민간 부문의 모든 고용주는 그들이 고용한 직원의 숫자에 상관없이 새로운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최저임금	
	근무일 수	시급
RM1,200	6	RM46.15
	5	RM55.38
	4	RM69.23
		RM5.77

제조 부문의 급여 및 부가 급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 고용주연맹(Malaysia Employers Federation, MEF) 웹사이트 www.mef.org.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취업 알선 시설

등록된 민간 고용 기관 외에도 고용주와 구직자는 MYFutureJobs 포털 (www.myfuturejobs.gov.my)을 통해 무료 등록하여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적합한 후보자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노동 기준

노동국(Department of Labour)은 노사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법의 시행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따라야 할 최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상 다소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국(Department of Labour)의 노동국장(Director of Labour)에게 이 규정의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1 1995년의 고용법

주요 법 중의 하나인 199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은 말레이시아 반도 (Peninsular Malaysia)와 라부안연방령(Federal Territory of Labuan)의 월 급여 RM2,000 이하를 받는 모든 근로자와 모든 육체 노동자에게는 급여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작성할 수 있으나 고용 계약이 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급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여, 근무의 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 청구, 퇴사 시 혜택, 출산 혜택 등과 같은 근로자에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원(Labour Court)을 통해 금전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 외에도, 월 급여가 RM2,001-RM5,000 사이인 근로자는 고용 계약의 조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995년의 고용법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는 고용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을 비롯, 고용 조건을 담고 있는 서면 고용 계약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신상 명세, 급여 지급 및 급여 공제에 관한 근로자 명부의 보관.
- 야간 근무 및 여성 근로자에 대한 혜택(maternity benefit)과 관련하여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조항.
- 정상 근무 시간과 작업 시간 수와 관련한 기타 조항.
- 유급 연차 휴가, 병가, 입원 휴가 및 공휴일을 사용할 권리. 근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의 책임
- 근무 장소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특별 조항

4.2 사바주(Sabah)의 노동 조례와 사라왁주(Sarawak)의 노동 조례

사바주 노동 조례(Sabah Cap. 67)와 사라왁주 노동 조례(Sarawak Cap. 76)는 그들 주에서 노동법(Labour Laws)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바주 노동 조례와 사라왁주 노동 조례의 조항들은 195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조항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서로 다르고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195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에서는 월급이 RM2,000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를 다루고 있는 반면, 사라왁주(Sarawak) 노동 조례의 경우 월급이 RM2,500까지로 확대됩니다. 사바주(Sabah) 노동 조례에 관한 한, 일부 가사 도우미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주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RM2,500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월급은 불문하고 육체 노동이나 또는 운송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기계로 추진되는 차량의 운전과 보수에 종사하거나 또는 육체 노동 근로자의 감독으로 종사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선박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고용 관련 특별 조항

조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란 1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반도에 적용되는 1966년의 아동 및 청소년(고용)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적용 대상입니다.

비거주자 근로자의 고용

'비거주자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먼저 사바주/사라왁주 노동국장으로부터 '비거주자 근로자' 고용허가를 득하여 합니다. 비거주자 근로자'란 1959/1963년의 이민법(Immigration Act) 제 71절(Section 71)에 규정한 대로 사바주/사라왁주에 주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근로자 공급 관련 정보

1955년의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고용한지 14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노동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3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2021년 1월 1일부터는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mployee Provident Fund (EPF) Act 199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자공제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0세 이하

- 고용주 부담 (a) 월급 RM5,000(US\$1,171) 이하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법정 비율 13%
- (b) 월급 RM5,000(US\$1,171) 초과인 경우
근로자 월급의 법정 비율 12%
- 근로자 부담 근로자 월급의 법정 비율 9%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세 번째 별표(Part A) 참조]

60-75세

말레이시아 국민

- 고용주 부담 고용주 월급의 법정 비율 4%
- 근로자 부담 근로자 월급의 법정 비율 0%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세 번째 별표(Part E) 참조]

영주권자

- 고용주 부담 (a) 월급 RM5,000(US\$1,171) 이하의 경우
근로자 월급의 법정 비율 6.5%
- (b) 월급 RM5,000(US\$1,171) 초과인 경우
근로자 월급의 법정 비율 6%
- 근로자 부담 근로자 월급의 법정 비율 5.5%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세 번째 별표(Part C) 참조]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파견직 외국인 및 그들의 고용주는 의무 가입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하

- 고용주 부담 근로자별 월 RM5.00(US\$1.17)
- 근로자 부담 근로자 월급의 9%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세 번째 별표(Part B) 참조]

60-75세

- 고용주 부담 근로자별 월 RM5.00(US\$1.17)
- 근로자 부담 근로자 월급의 5.5%

[1991년의 근로자공제기금법(EPF) 세 번째 별표(Part D) 참조]

4.4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는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에 따라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 가족의 복지 보호를 위해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 Injury Scheme)

고용상해보험제도는 업무상 사고 또는 관련 산업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혜택을 보장해 줍니다. 고용상해보험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의료혜택, 단기장해혜택, 영구장해혜택, 상시간병수당, 부양가족혜택, 장례혜택, 재활혜택 및 교육혜택 등입니다.

b. 상병제도(Invalidity Scheme)

상병제도는 고용과 관련 없는 원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시의 근로자에 대해 24시간 적용됩니다. 단, 근로자는 반드시 상병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병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상병 연금, 상병 보조금, 상시 간병 수당, 유족 연금, 장례 혜택, 재활 혜택 및 교육 혜택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자격을 갖춘 고용주 및 근로자의 경우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Employees' Social Security Act 1969)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두 가지 범주의 기여로 분류됩니다.

• 첫 번째 범주

고용상해보험제도(Employment Injury Insurance Scheme)와 상병연금제도(Invalidity Pension Scheme) 부담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납부합니다. 본 범주에 따른 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의 1.75%이고, 부담금 납부 당시 근로자 월급의 0.5%입니다.

• 두 번째 범주

본 범주에 따른 부담금은 부담금 납부 당시 근로자 월급의 1.25%로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60세에 이르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상해보험제도의 경우에만 본 범주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자격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한 대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SOCSO(사회보장기구)에 등록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격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 또는 훈련생 계약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연방/주 정부는 물론 연방/주 법정 단체의 계약직/임시직 직원은 SOCSO에 등록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은 월급이 최고 RM4,000 이하에서만 적용됩니다.

1969년의 근로자사회보장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및 주 정부 영주권 소지 근로자
- 가사 도우미
- 자영업자
- 단독소유기업 또는 파트너회사 소유자의 배우자

2017년의 자영업사회보장법(Act 789)

2017년의 자영업사회보장법(Act 789)은 2017년 6월 1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자영업사회보장법은 자영업 택시 운전기사 그리고 GrabCar와 같은 차량 공유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물론이고, 무대 버스, 전세 버스, 급행 버스, 미니 버스, 회사 버스, 지선 버스, 스쿨 버스 및 공항 버스 등과 같은 자영업 버스 운전기사를 자영업고용상해보험제도에 따라 보호합니다. 이 제도는 그 후 2020년 1월 1일부터 19개의 추가 비공식 부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업무 관련 활동 중 업무상 질병 및 사고를 포함한 고용 상해로부터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그 피부양자를 보호합니다. 이 제도는 택시 운전기사와 그 부양가족에게 의료 서비스, 신체 재활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현금 혜택도 제공합니다. 보호 기간은 부담금을 납부한 일자 및 시간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규정된 부담금은 보험 급여 옵션에서 정한 급여의 월 1.25%입니다.

2017년의 고용보험제도법(Act 800)

이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는 피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즉시 금융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새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을 받고 또한, 필요할 경우,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훈련도 제공받습니다.

고용보험제도(EIS)의 목적

- ❖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즉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 ❖ 실직 중인 근로자가 재취업프로그램(Re-Employment Placement Program)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하며
- ❖ 직업 훈련을 통해 실직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고용보험제도(EIS)의 적용 범위

- ❖ 민간 부문의 모든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직원은 고용주와 서비스 또는 훈련 계약을 맺어 급료를 받도록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 또는 훈련 계약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으며,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18세에서 60세까지 모든 근로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57세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57세 이상의 근로자는 면제됩니다.
- ❖ 부담금은 보장된 급료 RM4,000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고용보험제도(EIS) 부담율

고용주: 0.2%

근로자: 0.2%

고용보험제도(EIS) 혜택

- ✓ 일자리 찾기 수당(Job Search Allowance, JSA)
- ✓ 줄어든 소득 수당(Reduced Income Allowance, RIA)
- ✓ 훈련비(Training Fee, TF)
- ✓ 훈련 수당(Training Allowance, TA)
- ✓ 조기재취업수당(Early Re-Employment Allowance, ERA)
- ✓ 재취업 프로그램
- ✓ 경력 카운슬링

사회보장혜택의 연장

• 배우자

2018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는 근로자사회보장법(Act 4)과 고용보험제도법(Act 8)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일할 때 사회보장보호 혜택을 배우자에게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보호 혜택의 확대로, 근로자사회보장법(Act 4)과 고용보험제도법(Act 8)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일하는 자격을 가진 부인이나 남편은 이들 두 개 법에 따라 사회보장보호 혜택을 받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장기구(SOCSO)는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사회보장법(Act 4)에 따라 고용상해보험제도(EI)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사 도우미 제외)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담율은 보장된 월 급여의 1.25%로, 부담금은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고용상해보험제도(EI)는 사고나 근로 중 발생한 직업병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장합니다.

직장복귀프로그램(Return to Work, RTW)

직장복귀프로그램(RTW)은 고용 상해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보장기구(SOCSO)의 피보험자를 도와 주는 선제적 접근책으로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구(SOCSO)의 직장복귀프로그램(RTW)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는 이제 재정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국가의 생산 인력의 일부가 되어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구툰라작재활센터(SOCSO Tun Razak Rehabilitation Centre, TRRC)는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근로 세계로 되돌아와서 가족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피보험 참여자에게 종합 시설물을 제공함으로써 직장복귀프로그램(RTW)을 지원합니다.

건강심사프로그램(Health Screening Programme, HSP)

사회보장기구(SOCSO)는 40세가 되는 피보험자에게 건강 심사 바우처를 배포하는 건강심사프로그램(HSP)을 2013년 도입하였습니다. HSP 프로그램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운동을 장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근로자 사이에서 비전염성 질병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4.5 1952년의 근로자보상법 (Workmen's Compensation Act)

이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고용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겪고 있는 상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평생 완전 불구, 영구 부분 불구 및 사망의 경우 등 세 가지 보호 유형이 있습니다.

4.6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인적자원부 산하 직업안전보호국(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OSH)은 직업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OSH는 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는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근로 부문의 근로 활동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제조업

- 광업 및 채석업
- 건설업
- 농업, 임업, 어업
- 공익사업(가스, 전기, 수도 및 위생 서비스업)
- 운수업, 저장업 및 통신업
- 도소매업
- 호텔업과 요식업
- 금융, 보험,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그리고
- 공공 서비스 기관 및 법정 기관

이러한 집행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정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 1967년의 공장기계법(Factories and Machinery Act). 그리고
- 1984년의 석유법(안전조치)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은 특정 산업 또는 조직에 적합하게 설계된 자율 규제 제도를 통해 모든 말레이시아 고용주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보건과 안전한 근로 문화를 촉진하고 장려하며 권장하기 위한 입법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1994)은 고용주, 근로자, 자영업자, 설비 또는 물질의 설계자, 제조자, 수입자 및 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 1994)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히 안전한 설비와 근로시스템의 제공과 유지에 적용됩니다.

설비와 물질의 사용, 취급, 보관과 수송 시에는 반드시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설비’에는 모든 기계류, 장비, 기구, 도구와 구성품이 포함되는 반면, ‘물질’이라 함은 고체, 액체, 가스, 증기 또는 이의 혼합물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적 또는 인위적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의 사용, 취급, 보관과 수송 시에는 반드시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특별한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해 언급하고 법적 요건에 관한 정보를 비롯, 안전한 실행에 필요한 정보, 지시, 훈련과 감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4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주 기능은 반드시 안전 및 보건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한 사태, 직업성 중독 또는 질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직업안전보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는 유자격자가 화학적 건강 위험 평가, 개인별 모니터링 및 안전을 실시하는 한편, 직업 보건 전문가가 작업장의 적절한 의료 감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994년의 직업안전보건법(OSHA)에 따라 직업안전보건국(DOSH)은 다음과 같은 8 가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1995년의 고용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정책성명서(특례) 규정
- 2) 1996년의 산업주요사고위험관리규정
- 3) 1996년의 안전보건위원회규정
- 4) 1997년의 안전보건책임자규정
- 5) 2000년의 건강에 위험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노출 기준에 관한 규정
- 6) 2004년의 사고, 위험상태 발생, 직업상 중독 및 직업병의 통지에 관한 규정
- 7) 2013년의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안전 데이터시트에 관한 규정
- 8) 2019년의 소음 노출 규정

이 법의 요건을 위반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1967년의 공장기계법(FMA)은 사람의 안전, 건강 및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공장의 관리는 물론, 기계류의 등록과 검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일러, 비폭발 압력용기, 승객용 승강기, 천정형 이동 크레인 및 곤돌라와 같은 인증 받은 기계류는 반드시 설계 요건, 기술 규격, 시험 및 검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회사는 직업안전보건국(DOSH)의 설계 승인을 받기 위해 Sistem Kawal Urus Dokumen, 즉 SKUD 시스템(www.dosh.gov.my)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면, 기술계산서, 제조회사 인증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공장과 일반 기계류는 반드시 설치 가동 전에 직업안전보건국(DOSH)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수 장비와 공정의 작동, 설치, 유지관리 및 해체는 유자격자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크레인, 리프트 및 사다리와 같은 기계류와 장비의 설치 도중에는 안전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증기 보일러와 같은 고위험 장비는 보일러 기사와 증기 기사와 같은 관련 유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전보건국(DOSH)은 1967년의 공장기계법(FMA)에 의거하여 15 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1970년의 승객용 및 화물용 전기승강기 규정
- 2) 1970년의 기계류의 방호책 설치 및 안전 규정

- 3) 1970년의 통지, 적합성 증명서 및 검사 규정
- 4) 1970년의 담당자 규정
- 5) 1970년의 안전, 건강 및 복지 규정
- 6) 1970년의 안전, 건강 및 복지 규정
- 7) 1970년의 자격 증명서-시험 규정
- 8) 1970년의 관리 규정
- 9) 1978년의 화해가능범죄(Compoundable Offenses) 규정
- 10) 1978년의 범죄의 화해 규칙
- 11) 1984년의 납 규정
- 12) 1986년의 석면 공정 규정
- 13) 1986년의 건물 관리 및 토목 건설 공사(안전) 규정
- 14) 1989년의 광물 분진 규정
- 15) 2014년의 특수검사제도(위험 기반 검사) 규정

1984년 이래 석유(안전조치)법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석유(안전조치)법은 석유의 수송, 보관과 이용상의 안전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석유(안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도로와 철도, 선박, 파이프라인에 의한 석유의 수송 그리고 석유의 보관과 취급 등입니다.

석유 운송과 관련하여 본 석유(안전조치)법에 따라 두 개의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1) 1985년의 석유 파이프라인 수송 규정
- 2) 1985년의 석유 선박 수송 규정

5. 노사관계

5.1 노동조합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는 둘 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특별 조직, 업종, 직업 또는 산업 내의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노조원 자격은 지리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반도의 근로자나 고용주는 반도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조에만 가입하여야 하는 한편, 사바주(Sabah)나 사라왁주(Sarawak)의 근로자나 고용주는 사바주나 사라왁주에 설립된 노조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조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좋은 노사 관계를 촉진하거나,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또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정함.
- 근로자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규정함.

- 노사 분쟁에서 근로자나 고용주를 대리함.
- 노사 분쟁 및 그와 관련된 문제의 실행 또는 처리. 또는
- 어떤 업종이나 산업에서든 파업이나 직장폐쇄의 추진, 조직화 또는 금융 지원 또는 파업이나 직장폐쇄 도중인 회원에 대한 급료 제공 또는 기타 혜택 제공

노조의 결성, 기능, 의무 및 활동에 대한 방침과 지침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노동조합문제국(Trade Unions Affairs Department)의 관할 하에 1959년의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과 1959년의 노동조합규정(Trade Union Regulations)에 그 특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5.2 1967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말레이시아의 노사관계제도는 1967년의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 1967)의 법적 틀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은 말레이시아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Malaysia, DIRM)에 의해 시행되고 국내의 고용주, 근로자 및 노조 간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개략적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권 인정 청구 절차와 대표권 범위에 관한 개략적인 조항
-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의 효과적인 단체교섭과 후속 단체 협약 체결의 원활한 진행에 관한 조항
- 판결을 위한 인적자원부 및 노사관계법원(Industrial Court)에의 회부를 포함한 노사 간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항
- 피켓 시위, 파업 및 직장폐쇄 등과 같은 쟁의 행위에 관한 조항
- 노동자의 복직 청구 대리인 관련 조항
- 말레이시아 노사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RM) 소속 공무원의 조사권에 관한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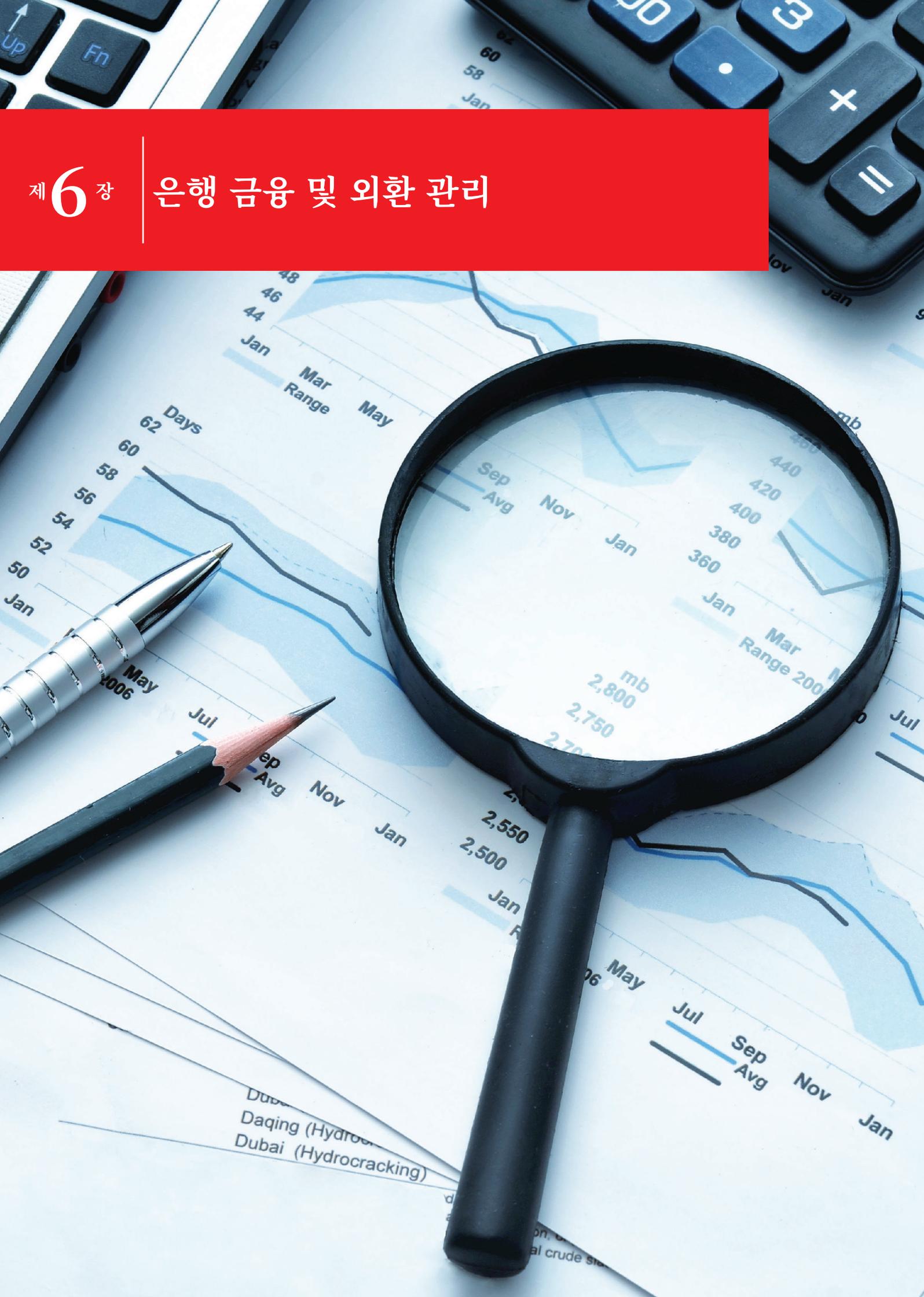
추가로, 노사관계국(DIRM)은 전국에 소재하는 지국을 통해 노사관계 관련 제반 사항과 문의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3 노조가 없는 단체의 관계

노조가 없는 단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직원이 자신의 상사, 십장 또는 고용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은 또한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인적자원부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 6 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 금융 시스템

- 1.1 중앙은행
- 1.2 금융 기관
 - 1.2.1 이슬람 금융 산업
 - 1.2.2 개발 금융 기관(DFI)

2. 수출 신용 재금융-i(EXPORT CREDIT REFINANCING-i)

- 2.1 금융 지원 방법
- 2.2 금융 지원 기간과 마진
- 2.3 상황

3. 말레이시아의 자본 시장

-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 3.2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

4. 라부안 금융 서비스(LABUAN FINANCIAL SERVICES)

- 4.1 라부안 금융서비스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abuan FSA)
- 4.2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 내 사업 운영
- 4.3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의 사업 활동

5. 외환 관리 정책

- 5.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 5.1.1 말레이시아 내 투자
 - 5.1.2 국내 금융 접근성
 - 5.1.3 결제 및 수령
 - 5.1.4 외환(FX) 헤지
 - 5.1.5 링깃화 및 외화 계정
- 5.2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 5.2.1 외화 자산 투자
 - 5.2.2 역내 및 역외 차입
 - 5.2.3 결제 및 수령
 - 5.2.4 외환(FX) 헤지
 - 5.2.5 외화 계정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말레이시아는 무엇보다도 전통적 금융 기관과 이슬람 금융 기관, 자본 시장, 역외 은행, 외환 시장으로 구성된 총체적이고 잘 발달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미소 기업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자본 및 운영 지출을 위한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더 멀리서 물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말레이시아의 금융 시스템

투자자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국내 경제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기관들로 구성된 말레이시아의 성숙되고 통합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체의 금융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스템은 재래식 금융시스템과 이슬람 금융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공존하며 평행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 중앙은행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 즉,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지속 성장에 도움을 주는 화폐의 안정성과 금융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은 2009년의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의 화폐 정책의 수립과 실시
- 말레이시아 통화의 발행
-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법들의 저축을 받는 금융 기관들의 관리 및 감독
- 화폐 시장 및 외환 시장 전반에 걸친 관리 및 감독
- 결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관리 및 감독
-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의 추진
- 말레이시아의 외환 보유고의 유지 및 관리
- 국가의 외환 관리 체제의 관리. 그리고
- 정부, 특히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

1.2 금융 기관

다음의 도표는 2020년 12월말 현재 말레이시아 네가라은행(Bank Negara Malaysia), 즉, 중앙은행의 관할 하에 있는 금융 기관의 개략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계	말레이시아의 통제를 받는 금융 기관	외국의 통제를 받는 금융 기관
상업 은행	26	8	8
이슬람 은행	16	11	3
국제 이슬람 은행	1	0	1
투자 은행	11	11	0
보험 회사	36	13	23
타카풀 사업자 (이슬람 보험 회사)	15	11	4
재보험 회사	7	2	5
리타카풀 사업자(이슬람 재보험 회사)	2	0	2
개발 금융 기관	6	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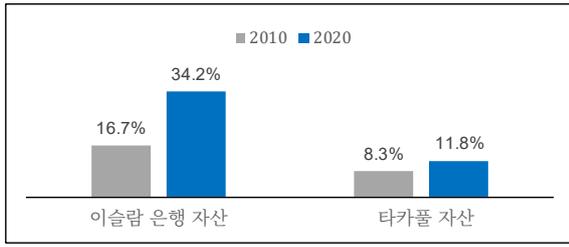
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이슬람 은행으로 구성되는 은행 시스템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주는 1차 자금 조성 수단이자 주된 자금 조달원입니다. 은행 기관들은 전국에 걸쳐 2,316여 개 지점과 5,085 여 개 대리점 은행망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18개 외국 은행이 있습니다. 총 8 개 말레이시아 은행 그룹이 아세안 국가 전체를 비롯,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지점, 대표사무소, 계열사, 지분 참여 및 합작회사를 통해 진출해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즉, 개발 금융 기관, 보험 회사 및 타카풀 운영자는 저축을 동원하고 경제의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은행 기관을 보완합니다. 전국적으로 932개 사무소와 192,006명의 등록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보험 회사와 타카풀 운영자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위한 위험 관리 및 재무 계획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2.1 이슬람 금융 산업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은 포괄적인 규제, 법률 및 샤리아(Shariah) 통치방식 체제, 다양한 업계 선두주자 및 전문 보조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이거와 고급 인재 등의 지원을 받는 견고한 성장을 계속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의 시장 점유율 % 이슬람 은행 자산 및 타카풀(Takaful) 펀드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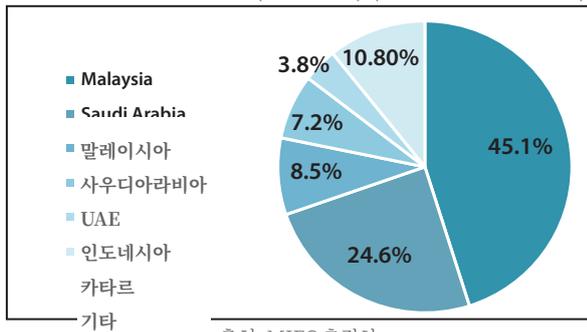
출처: Bank Negara Malaysia

이슬람 은행 산업은 2020년 말 기준 총 은행 자산의 34.2%¹ (RM1조 898억)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 청사진 2011-2020 시행 후 말레이시아 전체 금융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40여 개 금융기관(이에는 이슬람 은행, 전통 은행 및 투자 은행의 이슬람 창구, 국제 이슬람 은행, 개발 금융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에서 광범위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지역사회, 경제 및 환경에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타카풀(takaful) 부문의 경우, 2020년 말에 총 타카풀 펀드 자산이 총 보험 및 타카풀 부문의 13.7% 시장 점유율(RM53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타카풀 시장 침투율이 16.9%이며, 이는 타카풀 계획이 제공하는 혜택을 일반 대중이 점점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융의 추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의 이슬람금융서비스법(IFSA)에 따라 투자 계정이 도입되어 샤리아(Shariah)를 따르는 투자 활동에서 얻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투자 계정은 또한 기업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현재로서는 7개 이슬람 은행이 투자 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별 총 수쿠크(Sukuk)(2020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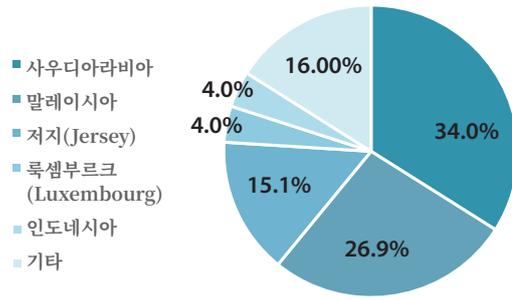


출처: MIFC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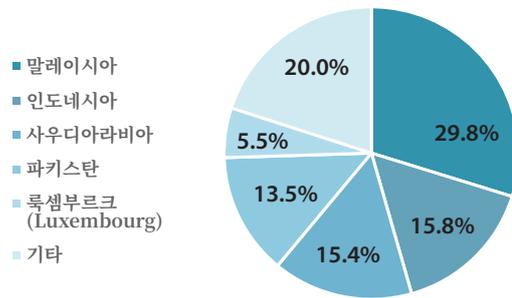
글로벌 전선에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선두적 글로벌 허브(hub)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의 최대 수쿠크(sukuk) 시장의 본고장으로 2020년 말 기준 USD2,584억에 달하는 글로벌 수쿠크 총액 중 4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2020년도에 총 글로벌 기업 수쿠크(sukuk) 발행량의 45.4%를 차지했습니다.

1 개발 금융 기관(DFI) 포함

거주지별 이슬람 관리 펀드 자산(AuM) (2020년 말 기준)



거주지별 이슬람 펀드의 개수 (2020년 말 기준)



출처: MIFC 추정치

이슬람 부의 관리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시장의 26.9%를 차지하고 2020년 말 기준 관리하의 자산(AuM)이 USD351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펀드 개수의 측면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점유율이 29.8%에 달하고 등록된 총 펀드 수가 39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 창구가 있는 이슬람 펀드 운용사가 23개 그리고 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1.2.2 개발 금융 기관(DFI)

말레이시아의 DFI(개발 금융 기관)는 국가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 발전 목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요 부문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고유의 권한을 갖고 정부가 설립한 전문 금융 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 부문에는 농업, 중소기업, 인프라, 해양 및 수출 지향 부문뿐만 아니라 자본 집약적 산업 및 첨단 기술 산업이 포함됩니다.

전문 기관으로서 개발 금융 기관(DFI)은 목표로 삼은 전략 부문 고유의 수요에 맞추어 광범위한 전문 금융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별된 부문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DFI에서는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형태의 보조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따라서 DFI는 은행 기관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식별된 전략적 지역에 대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는 전략적 통로 역할을 합니다.

2002년의 DFIA(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Act, 개발금융기관법)가 제정됨으로써 DFI가 지속 가능한 실천과 필수 규제 및 감독 체재를 통해 자체의 재무 및 운영 건전성을 증진하고 지정받은 역할을 신중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FIA의 제정으로 BNM은 DFI를 위한 중앙 규제 감독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DFIA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DFIA는 6개 있습니다.

- 중소기업개발은행 말레이시아 Berhad나 또는 제조, 서비스 및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SME Bank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발전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인프라 프로젝트, 해양, 자본 집중적이고 첨단 기술 산업 및 기타 부문에 중기 및 장기 금융을 제공하는 Bank Pembangunan Malaysia Berhad
- 회원 및 비회원에게 모두 저축을 장려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 조합 은행인 Bank Kerjasama Rakyat Malaysia Berhad
- 상품의 수출입과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신용 보험 및 보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 위한 신용 대출을 제공하는 Export-Import Bank of Malaysia Berhad, 즉 수출입은행(EXIM Bank)
- 특히 소액 저축자를 위한 소매 금융 및 개인 금융에 중점을 두고 소매 금융 및 에이전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통합 의제를 지원하는 Bank Simpanan Nasional
- 저축 예금을 받아들이고 금융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 부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Bank Pertanian Malaysia Berhad, 즉 Agrobank

DFI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DFIA를 개정하여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운영 환경에서 전략적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이 금융 기관의 중간 역할을 더욱 고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더욱 강화하고 DFI가 권한을 부여받은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DFIA에 대한 개정안이 2015년 7월 의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1월 3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 수출 신용 재금융-i(Export Credit Refinancing-i)

수출 신용 재금융(ECR)은 직접 또는 간접 수출자에게 링깃화 또는 미국 달러화로 샤리아(Shariah)를 따르는 전통적인 선적 전과 후 금융을 단기로 제공합니다. 이 금융은 수출 및 국제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제조회사 또는 무역 회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금융 기관(ECR 은행)과 함께 수출 신용 재금융(ECR-i) 신용 한도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금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선적 전 ECR

선적 전 ECR 금융 지원은 선적 전에 말레이시아 제품의 수출과 구매와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수출 지향 산업에서 수출자와 현지 공급사 간의 후방 연계(backwards linkage)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은행(EXIM Bank) 금융 촉진책입니다.

- 선적 후 ECR.

선적 후 ECR 금융 지원은 수출자의 수출 또는 무역에 선적 후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 촉진책입니다.

2.1 금융 지원 방법

선적 전 ECR-i 금융 지원 제도에 따르면, 직접/간접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지원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a. 주문서 기준 방법

직접 수출자의 경우 선적 전 ECR 금융 지원은 수출 구매 주문서를 근거로 지급하는 사전 금융인 반면, 간접 수출자의 경우에는 수출자 앞으로 발행된 ECR-i 내국 신용장(dlc), ECR 내국 발주서(DPO) 또는 현지 발주서(DPO)를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 지원되는 금융 촉진책입니다.

b. 수출실적증명서(Certificate of Performance, CP)에 근거한 금융 지원 방법

직접/간접 수출자의 경우 선적 전 금융 지원은 수출입은행(EXIM Bank)이 발행한 CP를 근거로 제공됩니다. 금융 지원의 한도는 유효 기간 1년의 CP의 한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선적 후 ECR 금융 지원 제도에 따라, 이용되는 금융 지원 방법은 수출 어음 할인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편 금융 지원은 수출 서류를 ECR 은행에 제출할 때 제공됩니다.

2.2 금융 지원 기간과 마진

선적 전과 선적 후 금융 지원의 최장 기간은 각각 4개월(120일)과 6개월(183일)입니다.

선적 전 구매주문서에 근거한 금융 지원 방법의 경우, 유자격 최대 금융 지원 금액은 직접 수출자의 경우 수출 구매주 문서의 95% 또는 간접 수출자의 경우 ECR DLC, ECR DPO 또는 LPO의 95%입니다.

선적 전 수출실적증명서(CP)에 근거한 금융 지원 방법의 경우, CP 한도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자격 금액이 될 것입니다. 수출실적증명서(CP)에 근거한 금융 지원 한도는 세 가지 기간으로 나뉘어지며, 각 기간은 4개월입니다. 제조와 무역에 관여하는 직접 수출자에 대한 유자격 금융 지원 금액은 직전 12개월 동안의 수출 금액의 100%입니다. 제조 및 무역에 관여하는 간접 수출자에 대한 유자격 금융 지원 금액은 직전 12개월의 수출 금액의 80%입니다.

선적 후 금융 지원의 경우, 금융 지원 금액은 수출송장 금액의 100%입니다.

2.3 상환

직접 수출자의 경우, 선적 전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은 해외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수출 수익금/ ECR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선적 후 수익금에서 이루어집니다. 간접 수출자의 경우, 선적 전 금융 지원 금액의 상환은 ECR 이용자, 자유무역지역(FTZ)

또는 인가받은 제조업체 보세창고(LMW) 회사로부터 수령한 국내 판매 수익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적 후 금융 지원의 경우, 금융 지원 금액은 수출 수익금 수령 시 또는 선적 후 어음의 만기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EC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exim.com.my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말레이시아의 자본 시장

3.1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말레이시아 자본시장의 규제와 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규제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는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증권위원회(SC)의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투명한 증권 및 파생 상품 시장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본 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증권위원회(SC)는 접근 가능하고, 활기차며, 책임을 지는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자본 시장의 발전

말레이시아는 상장기업이 900여 개에 달하는 주식시장,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채권시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이슬람 자본시장, 팜유(CPO)의 선도적인 가격 발견 센터인 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이 지역 최대 규모의 국내 단위 신탁 산업 등으로 구성된 다각화가 잘 이루어진 자본시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의 자본 시장은 RM3조 4000억으로 말레이시아 국내 경제 규모의 2.4배에 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자본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샤리아(Shariah) 규정을 따르는 주식과 총 수쿠크(sukuk)가 RM2조 3천억에 달하며, 계속해서 세계 최대의 수쿠크(sukuk)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 펀드 운용 산업의 AUM이 RM9,055억으로 성장했으며, 총 이슬람 AUM은 RM2,168억에 달했습니다.

SC는 이슬람 자본 시장의 강점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를 지속 가능한 지역 금융 센터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2017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녹색 수쿠크 발행에 이어 SC는 녹색 SRI 수쿠크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여 SC의 SRI 수쿠크 체제에 따라 발행된 모든 수쿠크와 그리고 ASEAN 녹색, 사회 및 지속 가능성 채권 기준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 당시 총 8개의 녹색 SRI 수쿠크 보조금이 승인되어 RM31억의 기금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물경제 지원

말레이시아 자본 시장은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끔 자금을 제공합니다. 2020년에는 채권, 수쿠크,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 총 자금이 RM3,767억에 달했습니다. 주식 크라우드펀딩 및 P2P 파이낸싱과 같은 미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 자금 마련 채널이 7,840개의 캠페인을 통해 RM6억 3,100만을 조성했습니다.

SC는 투자자 보호 및 중개 효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활성화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의 핵심 명령, 즉, 시장 성장의 규제와 보장이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행됩니다. 여기에는 금융 및 투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www.sc.com.my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부르사 말레이시아

1976년 설립 이후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50여 종류의 경제 활동에 걸쳐 900여개 상장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아세안(ASEAN) 최대의 증권거래소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포괄적인 시장으로서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많은 투자 상품 및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시장 참여자를 모든 유형의 기회와 연결하여 확장 또는 투자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상품군에는 주식, 파생 상품, 선물 및 옵션, 역외 및 이슬람 자산은 물론, 증권거래소 거래 채권 및 수쿠크(Exchange Traded Bonds and Sukuks, ETBs)와 그리고 증권거래소 거래 펀드(Exchange Traded Funds, ETFs) 및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과 같은 집합 투자 계획을 포함한 기타 투자 옵션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상장, 거래, 청산, 결제 및 예탁과 같은 증권거래소 관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아세안이 선호하는 펀드 조성 목적지 중의 하나로서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자본 조달 수요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발행인에게 효율적인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대자본으로 설립된 기업들을 위한 메인 시장(Main Market)에, 또는 모든 규모의 신흥 기업을 위한 ACE 시장(ACE market)에 상장됩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들이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LEAP라는 새로운 시장이 도입되었습니다. LEAP는 아세안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시장으로서는 최초로 자본 시장 혁신의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를 이 지역의 선두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지역 기업과 그리고 천연 자원 기반 부문에서 최대 기업 중 일부의 본거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FTSE 부르사 말레이시아 KLCI(FBMKLCI)를 자체의 벤치마크 지수로 채택합니다. 지난 10년(2011-2020) 간에 걸쳐 벤치마크지수 FBMKLCI는 7% 성장한 반면,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모든 상장 기업의 총 시가총액은 42%가 성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주식 시장은 글로벌 주식 시장의 변동성 및 도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관심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외국인 자본도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2005년 3월 18일자로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가 상장 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증권거래소는 몇 가지 광목할만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샤리아(Shariah) 투자에서 가장 혁신적인 최고의 거래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엔드-투-엔드 샤리아

(Shariah) 증권 투자 플랫폼인 Bursa Malaysia-i와 그리고 세계 최초로 샤리아를 따르는 상품 거래 플랫폼인 부르사 수크-알-실라(Bursa Suq-Al-Sila)와 같은 이슬람 금융의 다양한 혁신을 개척하여 얻은 명성입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또한 세계 최대의 팜유 선물 거래 허브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팜유 원유 선물 계약은 오랫동안 팜유 산업의 글로벌 가격 벤치마크로 인식되어 오고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책임 있는 거래소, 기업 지배 구조의 강력한 옹호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의제의 챔피언으로 이 지역의 최전선에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FTSE4Good Bursa Malaysia Index를 도입하여 우수한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관행을 보여주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했으며, 2015년에는 유엔지속가능주식 거래소(UN Sustainable Stock Exchanges)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발행자와 시장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2018년에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기업 지배 구조, 지속 가능성 및 책임 투자 등과 관련한 윈스톱 온라인 지식 저장소인 BursaSUSTAIN을 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전파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아세안의 지속 가능하고 전 세계로 연결된 선도적인 시장이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으므로, 이 거래소는 활동 범위와 제공 제품을 확대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성장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전도성 자본 시장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계속 중점을 둘 것입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ursamalaysia.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참여자

a. 증권 중개회사

2018년 12월 31일자로 증권 중개회사는 29개였으며, 그 가운데 투자은행으로 분류된 중개회사는 10개였습니다. 이들 증권 중개회사는 부르사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Securities)에 상장된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 은행은 2013년의 금융서비스법(FSA) 및 IFSA에 따라 BNM(Bank Negara Malaysia),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상업 은행 면허는 물론, 2007년의 자본시장서비스법(Capital Markets & Services Act)에 따라 증권위원회(SC)에서 발행한 자본 시장 서비스 면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은행은 기업 금융, 채무증권 거래 및 유가증권 거래를 포함한 전 범위의 통합된 자본 시장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 증권 중개업(종합 자본 시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중개업체) 지위를 유지하는 주식 중개회사가 아직도 하나가 있습니다.

b. 거래 참여자

거래 참여자는 파생 상품 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부르사 말레이시아 파생상품(Bursa Malaysia Derivatives)의 규칙에 따라 거래 참여자로 인정됩니다. 거래 참여자는 2007년의 자본 시장 및 서비스법에 따라 증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선물 중개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파생상품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인가받은 거래 참여자는 17개입니다.

투자 교육 및 보호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기능을 잘하고, 활기차며, 지속 가능한 자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 교육, 보호 및 시장 무결성에 최고의 주안점을 둡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을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튼튼한 규제 틀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무결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6월 증권 시장, 파생 상품 시장 및 이슬람 자본 시장 전반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e-러닝 플랫폼 "부르사 아카데미(Bursa Academy)"를 출시했습니다. 부르사 아카데미(Bursa Academy)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수요, 전문 지식 및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총체적인 학습 여정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 윈스톱 학습 포털의 일종으로서 이 포털은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지식 세션과 대화형 게이밍을 모두 결합합니다. 이 플랫폼은 거래소의 교육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시장 데이터와 거래 아이디어가 있는 Bursa Marketplace 앱과 그리고 Central Depository System 계정 관리 거래를 단순화시키는 Bursa Anywhere 앱 등과 같이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디지털 툴을 보완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가끔 검토하는 명확하고, 종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규칙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국제 시장 규제 기준과 대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벤치마크 대상으로 유지되게끔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 규칙이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기준 준수에 드는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업 영위의 용이성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또한 시장에서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상장 회사와 중개회사들의 거버넌스와 행위를 개선하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공개 기준은 물론, 무엇보다도 감독 접근책과 기업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 관례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몰셀름없는 감시와 선제적인 대책을 통해 불법 또는 비보장성 기업 및 거래 활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탐지와 관리를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규정부서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에 의해 뒷받침되는 잘 규율된 시장에 기여해 왔고,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 규제 문화와 관례 품질이 계속 강화되고, 시장이 계속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제의 강도가 국제 인증을 받았고, 주목할만한 성과 중 일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업 거버넌스 부문에서 말레이시아는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에서 유지 관리하는 지역 기업 거버넌스 순위인 CG Watch 2018에서 7위에서 4위로 급부상했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소액주주감시그룹(Minority Shareholders Watch Group)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 거버넌스 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100개 말레이시아 상장 기업의 평균 점수를 2015년 80.41점에서 2019년 98.40점으로 크게 개선했습니다.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자본시장포럼(ASEAN Capital Markets Forum)이 2020년 12월 발표한 2019년의 아세안기업거버넌스상(ASEAN Corporate Governance Awards 2019)에서 상위 20개 아세안(ASEAN) 상장 기업(Top 20 ASEAN Publicly Listed Companies) 중 가장 많은 상장 기업(7개)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 말레이시아는 2019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의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에서 소수자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부문에서 190개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위험 관리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발행한 금융 시장 인프라 지침과 기업 거버넌스 구조 관련 말레이시아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ISO 31000: 2018 위험 관리 - 원칙과 지침과 같은 최고의 운영 방식, 그리고 지불및시장인프라위원회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s Infrastructure) 및 국제증권위원회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발행한 금융 시장 인프라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등을 채택하여 사업과 운영상의 위험을 관리하고 또한 사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그룹 내의 위험, 무결성,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 관리 등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된 전사적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는 중앙 집중식 위험 관리 기능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총리의 지령(2018년 1호)에 따라 2020년 청렴거버넌스부서의 설립으로 시장 운영자와 최전선 담당 기관한테는 필수적인 청렴성을 지키고 훌륭한 거버넌스와 윤리를 제도화하려는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의 약속이 재확인됩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전사적 위험 관리 틀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 관리에 대해 확립된 명확한 기능상의 책임으로 구성된 3개 방어선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위험 관리 틀은 부르사 말레이시아 내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전사적 위험 관리와 원칙 및 틀(Enterprise Risk Management and Principles & Framework, ERMPF) 문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 관리와 원칙 및 틀(ERMPF)은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검토됩니다.

위험 관리 틀의 확립으로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실행과 유지는 물론 모든 통제의 적절성, 효과 및 효율의 보장을 비롯한 위험 관리에 대해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윤곽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틀 안에는 확인, 평가, 통신, 모니터링은 물론 부서 및 기업 수준에서 위험 완화 전략 및 통제의 위험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위한 확립되고 구조화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승인된 위험 매개변수에 따라 안내됩니다.

4. 라부안 금융 서비스(Labuan Financial Services)

4.1 라부안 금융서비스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abuan FSA)

라부안 금융서비스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라부안 FSA)은 라부안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Labu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re, 라부안 IBFC)의 발전과 행정을 담당하는 법정 기관입니다.

라부안 FSA의 주요 역할은 라부안 IBFC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허가받은 법인의 인가와 규제, 그리고 당해 법인이 관할 당국에 의해 채택된 내부적, 국제적 최고의 기준을 계속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라부안 IBFC 내 규제 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부안 IBFC의 규제 당국으로서, 라부안 FSA는 라부안 IBFC의 잘 규제되고 평판이 높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약속을 하는 한편, 산하 마케팅 조직인 Labuan IBFC Incorporated Sdn. Bhd.(라부안 IBFC Inc.)를 통해 라부안 IBFC의 홍보도 맡고 있습니다. (라부안 IBFC Inc.), 라부안 FSA가 단독 소유한 계열회사.

라부안 IBFC Inc.는 규제 기관, 시장 참여자 및 업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시아 진출을 바라보는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전담 마케팅 팀을 자랑합니다. 라부안 IBFC Inc.의 궁극적인 목표는 라부안 IBFC의 핵심 가치 제안이 이해되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4.2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 내 사업 운영

라부안 IBF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고, 역내외 투자의 관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부안 IBFC는 역내외의 중간 관할권에 위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에게 국제 표준 및 최고의 운영 방식을 준수하는, 잘 규제되고 감독되는 관할권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또한 확실히 역내외의 중간 관할권에서 투자자에게 재정 중립의 이상적인 균형을 제시합니다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법적 틀에 의해 잘 뒷받침되는 라부안 IBFC는 전통적이고 샤리아(Shariah)을 준수하며 디지털로 제공되는 형태로 국경 간 거래 및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광범위한 구조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매 금융 중개 센터로서의 라부안 IBFC의 역할은 실용적인 역내외의 중간 관할권에서의 제안으로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에서 발견되는 높은 국제 규제 및 감독 표준과 결합된 비즈니스 수행의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관할권의 비용 효율성과 함께 결합된 이 센터는 아시아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자들에게 이상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라부안 IBFC에 설립/등록된 법인체는 낮은 운영비용에서부터 편리한 과세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부안 IBFC의 조세 체계에 따라 라부안 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라부안 법인은 경제적 실질적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감사받은 순이익의 3%를 매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비 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라부안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한 원천징수세 및 인지세 면제 등과 같이 투자자들이 라부안 IBFC에서 입지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면세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라부안 법인은 또한 1967년의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거하여 취소 불가능한 세금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라부안 법인체는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거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3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IBFC)의 사업 활동

라부안 IBFC는 디지털 솔루션을 포함하여 국가 간 거래 및 국제 비즈니스 거래에 적합한 광범위한 비즈니스 구조 및 투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는 위험 관리, 상품 거래, 자산 관리, 국제 비즈니스 회사, 이슬람 금융 서비스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틈새 영역에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라부안 IBFC는 자산 관리 솔루션으로서 민간에 토대를 제공하는 아시아 유일의 관할권이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관할권 중의 하나로 캡티브(captives) 보험, 즉 자가 보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라부안 IBF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labuanibfc.com 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외환 관리 정책

말레이시아는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Negara Malaysia(BNM), 즉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보다 광범위한 도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진보적인 외환 관리 정책(FEP) 체제를 유지합니다. 외환 관리 정책(FEP)은 국가 통화의 지불 지위 및 가치의 균형을 보호하는 한편 국경 간 실물 경제 활동을 위한 보다 유리한 환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외환 관리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nm.gov.my/fep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5.1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칙

5.1.1 말레이시아 내 투자

말레이시아 시장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하며, 말레이시아 내 투자를 위한 자본의 유출입 이동은 자유롭습니다.

- ❖ 비거주자는 직접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로 모든 형태의 링깃화 또는 외화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비거주자는 주식 매각 수익금, 이윤, 배당금 또는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외화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한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5.1.2 국내 금융 접근성

a. 외화 차입

- ❖ 비거주자는 인가받은 역내 은행에서 외화를 금액 한도 없이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 수익금은 역외 또는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 비거주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자유롭게 외화 표시 수쿠크/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b. 링깃화 차입

비거주자(금융 기관은 제외)는 말레이시아의 실물 부문 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인가받은 역내 은행(인가받은 국제 이슬람 은행은 제외) 및 기타 거주자로부터 링깃화 금액을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습니다.

5.1.3 결제 및 수령

비거주자는 인가받은 역내 은행 또는 지정 해외 사무소(AOO)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위해 링깃화 또는 외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1.4 외환(FX) 헤지

비거주자는 자신의 계정 또는 관련 법인을 대리하여 인가받은 역내 은행과의 경상 및 금융 계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화 리스크를 자유롭게 헤지할 수 있습니다.

5.1.5 링깃화 및 외화 계정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체 운영 및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인가받은 역내 은행에 링깃화 또는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계좌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5.2 거주자에 적용되는 규정

5.2.1 외화 자산 투자

- ❖ 국내 링깃화 차입²이 없는 거주자는 금액 한도 없이 역내 또는 해외의 외화 자산에 대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내 링깃화 차입이 있는 거주자 법인은 링깃화를 환전하여 확보한 외화 자금을 사용하여 기업 그룹 기준으로 연간 총 RM5천만 상당의 건전성 한도 내에서 해외 또는 해외 외화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² 국내 링깃화 차입은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받은 링깃화로 차용하거나 외화 고시에서 국내 링깃화 차입으로 간주되는 모든 의무를 의미합니다.

- a. 링깃화의 외화 환전
- b. 무역 외화 계정(FCA)
- c. 해외 직접 투자와는 다른 목적으로 인가받은
역내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외화 차입
- d. 말레이시아의 금융 자산을 말레이시아
밖의 금융 자산으로 스왑

5.2.2 역내 및 역외 차입

- a. 외화 차입
 - ❖ 거주자 기업은 다음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습니다.
 - 인가받은 역내 은행.
 - 기업 그룹 내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회사.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직접 주주. 그리고
 - 외화 표시 채무 증권의 발행을 통한 기타 거주자.
 - ❖ 거주자 기업은 기업 그룹 기준으로 건전성
한도인 RM1억 상당까지 비거주 금융 기관
및 기업 그룹 밖의 비거주 기업으로부터
외화를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습니다.
- b. 링깃화 차입

거주자 법인은 링깃화 차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 금액에 상관없이 다음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습니다.
 - a. 말레이시아의 실물 부문 활동의 금융
지원을 위해 기업 그룹 내의 비거주자
법인 및 비거주자 직접 주주 또는
 - b.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가능한
우선주 또는 기업 채무 증권의 발행을 통해
모든 비거주자(관련 없는 비거주자 법인
또는 비거주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거래 불가능한 기업채무증권은 제외) 또는
 - ❖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비거주자(
금융 기관 제외)로부터 총 RM100만까지.

5.2.3 결제와 수령

- ❖ 거주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
대해 링깃화 또는 외화로 결제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경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 거주자 수출자는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수출 물품 수익금을 전액 말레이시아
국내로 송금해야 합니다. 거주자 수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연성이 주어집니다.
 - 거주자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나 인가받은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24개월까지
수출 상품의 수익금 국내 송금; 그리고
 - 인가받은 거래 또는 사유에 의한 물품
수출 수익금의 상계 또는 상쇄
- ❖ 거주자 수출자는 글로벌 공급망³에서 사업하는
다른 거주자와 직접 또는 거주자 중간 법인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 무역을 외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제는 거주자
대금 지불자와 수취인의 무역 외화 계정
(Trade FCA)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링깃화의 환전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5.2.4 외환(FX) 헤지

거주자는 자신의 계정으로 또는 관련 법인을 대리하여
인가받은 역내 은행(인가받은 국제 이슬람 은행은
제외)과의 경상 및 금융 계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 리스크를 자유롭게 헤지할 수 있습니다.

5.2.5 외화 계정

거주자는 인가받은 역내 은행과 비거주자 금융
기관에 외화 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³ 거주자 수출자가 수출 활동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 수입자가 해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REGISTER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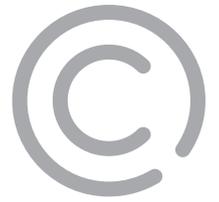
PROPERTY

COPYRIGHT

IDEA

LICENSE

PATENT



1. 특허
2. 상표
3. 산업 디자인
4. 저작권
5. 집적회로(IC)의 배치 설계
6. 지리적 표시
7. 지적소유권 평가
8. 지적소유권 금융
9. 지적재산권 시장
10. 지적재산권 개발 인센티브화



지적재산권 보호

말레이시아는 독점적 지식과 지적 재산(IP)의 보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은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MDTCA) 산하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My-IPO)에 의해 관리됩니다.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 보호는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위치 표시 그리고 집적 회로의 배치 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으로 지적재산권을 통제하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의 서명국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후ئن 하에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서명국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 및 외국 투자자를 모두 적절히 보호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지적재산권 법령들은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TRIPs 이사회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1. 특허

말레이시아의 특허권은 1983년의 특허법과 1986년의 특허규정에 따라 통제받습니다.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특허 신청은 신청자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과 비슷하게 발명이 새롭고, 발명 단계와 관련이 있으며, 산업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 보호 기간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거하여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 간 보호를 받으며 또한 사용 여부에 따라 1회에 5년씩 2회에 걸쳐 추가로 연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허가 받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강제 실시권과 병행수입 같은 특허에 대한 예외도 포함됩니다.

2. 등록상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의 등록상표법(Trade Marks Act)과 1997년의 등록상표규정(Trade Marks Regulations)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등록상표법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상표와 서비스 상표를 보호합니다.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그 후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거래 또는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등록상표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자는 등록 상표 대리인(trademark agents)을 통해 출원하여야 합니다.

3. 산업 디자인

말레이시아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는 1996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과 1999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의 규제를 받습니다. 산업디자인법은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법률의 작용에 의해 양도 및 이전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산업디자인은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단지 기능에 의해서만 지정된 구성 방법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의 디자인은 반드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형상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내국인 산업디자인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디자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디자인 출원자는 반드시 등록된 산업디자인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산업디자인은 1차적으로 5년 간 보호를 받으며, 이는 5년씩 4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25년 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96년의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 1996)을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 세계적인 신규성이 포함되고, 보호 기간이 연장되며, IP 저널 시스템과 산업디자인의 화폐화 및 증권화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4. 저작권

1987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성격, 보호의 범위 및 보호 방법을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자격 있는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작물에 유효합니다.

문학, 음악 또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입니다. 음반, 방송과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기간은 출간 또는 제작 후 50년 간입니다.

또한 동법은 공연자의 실제 공연 권리에 대해 실제 공연을 하거나 녹음을 한 해 그 다음 역년 초부터 기산하여 50년 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독특한 특징은 강제 집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10월 1일 시행된 1987년의 저작권법(Copyright Act)의 개정안은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DTCA,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의 소속 집행 공무원들에게 체포 권한(영장 없는 체포 포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거래소비자문제부(MDTA)의 공무원 특별팀은 이 법을 집행할 목적으로 지명되며 또한 저작권 침해 의혹이 있는 건물 구내에 들어가 침해 복제물과 복제장치를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012년의 저작권(개정)법은 2012년 3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제 IP 협약/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에는 저작권의 자발적 통지 시스템의 도입, 저작권의 집중 관리 단체(CMO)의 규율,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의 기능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 저작권자는 iponline2u.myipo.gov.my 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집적회로(IC)의 배치 설계

2000년의 집적회로배치설계법(Layout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ct 2000)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한 집적회로 배치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적회로 배치 설계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호 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간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 간입니다. 동법은 또한 동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치 설계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에 의해 또는 법집행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동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의 투자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6. 지리적 표시

2000년의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은 특정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에 생산지의 명칭을 딴 상품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천연 또는 농업 제품 또는 수공업품 또는 공산품과 같은 상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 신청자는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청자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청(MyIPO)은 또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온라인 검색 및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물의 통지에 대한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myipo.gov.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지적재산권(IP) 가치 평가

투자자는 현지 지적재산권 가치 평가사를 활용하여 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가치 평가사는 세계무역연구소(WTI), 스위스 베른대학교(University of Berne)의 공동 협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평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 평가사는 금융 및 대출 목적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외국 IP 가치 평가사를

지명하는 비용과 복잡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중소기업(SME)과 IP 소유자가 자체의 IP를 평가받는 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차례로 생태계의 전반적인 활력에 기여합니다.

8. 지적재산권(IP) 금융

국내 중소기업(SME)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 전략의 일환으로 MyIPO(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는 중소기업(SME)의 대출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담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SME) 지적재산권(IP)에 기초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및 대출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여러 결정권자와 주요 플레이어, 특히 대출자와 금융 기관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9. 지적재산권 시장

IP(지적재산권)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전반적인 추진력의 일환으로 IP의 건강한 수요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IP 창출과 기타 형태의 노하우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MyIPO(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청)는 자신의 권리를 허가 내주고 판매하기를 원하는 IP 소유자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IP 시장이라고 불리는 파일럿 플랫폼을 개발하여 출범했습니다. 이 포털은 IP 소유자가 자신의 IP를 알리고 잠재적 허가 임대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MyIPO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IP 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및 중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IP 시장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보다 적절한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향후 이 네트워크에 추가될 것입니다.

IP 시장과 참여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www.iprmarketplace.com.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지적재산권(IP) 개발 인센티브화

지적재산권 개발 인센티브화의 목적은 연구원이 특허 지식의 라이선스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연구 및 지식 창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연구 개발(R&D) 활동을 수행할 기업을 유치하고 현지 연구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이는 연구 개발 후 경제 활동을 더 많이 고정시켜 일자리와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것입니다.

적격 지식재산 자산의 권리를 소유하고 적격 지식재산 활동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은 최대 10년 동안 적격 지식재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발된 지적재산으로 얻은 소득만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정 넥서스 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 지침에 따릅니다.

단,

- '적격 지식재산권 자산'은 1983년 특허법[법 29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른 특허 또는 공공 설비 혁신, 1987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가족 적격 지식재산권(연구 개발(R&D)에서 발생한 지출 중 어떤 부분이 해당 권리의 생성에서만 발생했는지 또는 그 권리를 사용하여 얻은 소득의 어떤 부분이 특정 권리를 사용함으로써만 얻어졌는지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 연결된 둘 이상의 적격 IPR)를 의미합니다.

- ‘적격 지식재산권 소득’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34A/34B 절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기업은 위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InvestMalaysia portal을 통해 온라인으로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흥청(MIDA) 웹사이트의 Forms and Guidelines 절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센티브는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청서는 이 날짜 또는 그 이전에 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1. 환경 정책

2. 환경적 요건

- 2.1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 2.2 부지 적합성 평가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프로젝트 기획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염 통제에 공정 라인에서 가능한 수정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오염 방지를 생산 공정의 일부로 보고 자율 규제 문화를 비롯한 재활용 옵션에 초점을 맞추어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환경 보호는 환경상수도부 산하 환경과에서 감독합니다 Department of Environment. 기업은 프로젝트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와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레이시아의 환경과(DOE)를 참조해야 합니다.

환경과(DOE)는 다음의 위치에 있는 다양한 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환경 요건에 관한 투자자 안내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https://www.doe.gov.my/portalv1/wp-content/uploads/2010/12/A-Guide-For-Investors.pdf>

1. 환경 정책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다음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환경
- 사회 전 부문의 효과적인 참여에 의한 국가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 및 국가 유산의 보존
-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과 소비 및 생산 패턴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에 따라 경제 발전 목표와 긴급한 환경 과제를 조화시키는 원칙이 8 가지 있습니다.

- 환경 관리
- 자연의 활력과 다양성의 보존
- 환경의 질의 지속적인 개선
-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 통합적 의사 결정
- 민간 부문의 역할

- 약속과 책임
- 국제 지역사회에의 적극적 참여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개발 활동과 모든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합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인적 개발을 촉진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환경정책(DASN)은 삼림 및 산업 정책 등과 같은 기타 국가 정책의 환경적 차원을 보완하고 높이며 또한 글로벌 우려 사항들에 대한 국제 관례를 인식합니다.

2. 환경적 요건

1974년 환경질(質)법(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과 그 부수 규정들은 환경 영향 평가(EIA), 부지 적합성 평가, 오염 관리 평가, 환경 모니터링 및 자율 규제 준수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은 프로젝트 시행 전 환경질(質) 담당 청장 (Director-General of Environmental Quality)으로부터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EIA)
- ✓ 산업 폐수 또는 혼합 폐수의 새로운 배출원과 새로운 배출원이 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서면 통지
- ✓ 규정된 건물 및 규정된 운송 수단을 건설, 점유 및 운영하기 위한 서면 허가 및 면허.

2.1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투자자는 자신이 제안한 산업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EIA)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EIA) 연구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승인 기관의 평가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2단계 승인을 형성합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획득한 EIA 승인은 관련 기술 기관의 기타 승인 요건과 함께 원스톱 센터(OSC)를 통해 프로젝트 승인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5년 환경의 질(지정된 활동)(환경영향평가) 명령에 의거하여 프로젝트를 승인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EIA)를 받도록 지정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일정

1. 농업

- (a) 20 헥타르 이상 500 헥타르 미만의 삼림 지역을 농업 생산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지 개발 계획
- (b) 농업 용도 유형의 변경이 수반되는 500 헥타르 이상 면적의 농업 부동산 개발

2. 공항

1,000m 이상의 활주로가 포함된 공항의 확장

3. 배수 및 관개`

- (a) 인공 호수의 건설 및 100 헥타르 이상의 표면적을 가진 인공 호수의 확장
- (b) 500 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달하는 관개 계획

4. 수산업

20 헥타르 이상 50 헥타르 미만의 면적에 달하는 맹그로브림(mangrove),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의 소제가 수반되는 육상의 수산 양식 프로젝트

5. 임업

- (a) 평균해수면상 300m 이상의 삼림을 20 헥타르 이상 100 헥타르 미만의 기타 토지 용도로의 전환.
- (b) 100 헥타르 이상 500 헥타르 미만의 삼림 지역을 기타 토지 용도로 전환할 목적의 목재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c) 영구 보존 삼림 밖에서 100 헥타르 이상, 평균해수면상 300m 미만의 삼림 지역으로부터 목재의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d) 다음 지역의 전환 -
 - (i) 맹그로브림.
 - (ii) 토탄 늪지림. 또는
 - (iii) 20 헥타르 이상

50 헥타르 미만의 산업, 주택 또는농업 용도를 위한 신선한 물 늪지림

- (e) 100 헥타르 이상 500 헥타르 미만의 조림 삼림의 개발

6. 공업

- (a) 화학 부문

1일 100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제품 또는 제품군

- (b) 시멘트

1일 200 톤 이상의 시멘트 생산 용량을 가진 시멘트 분쇄 공장

- (c) 석회

회전식 석회 소성로의 경우 1일 생산 능력 100 톤 이상 또는 수직형 소성로의 경우 1일 생산 능력 50 톤 이상

- (d) 석유화학 부문

1일 50톤 미만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제품 또는 제품군.

- (e) 조선소

중량톤(Dead Weight Tonnage, DWT)이 5,000 톤 이상

7. 토지 개간

50 헥타르 미만 지역과 관련된, 강둑을 따라 펼쳐지는 해안의 개간 또는 토지 개간

8. 광업

- (a) 미네랄 공동 주택 지역 바깥의 알루미늄, 구리, 금, 철, 탄탈럼 또는 희토류 원소의 선광을 포함한 광석 처리.
- (b) 육상이나 강 또는 해안 지역 또는 20 헥타르 이상으로 저조선에서 측정된 3 해리 이하의 영해상의 모래 채광(sand mining).
- (c) 대륙붕 구역의 모래 채광

9. 석유

- (a) 개발
 - (i) 유전
 - (ii) 가스전 또는
 - (iii) 오일 가스전
- (b) 30km 이상의 건설
 - (i) 근해 파이프라인
 - (ii) 내륙 파이프라인 또는
 - (iii) 근해 파이프라인 및 내륙 파이프라인
- (c) 건설 -
 - (i) 오일 분리, 가공, 취급 및 저장 시설
 - (ii) 가스 분리, 가공, 취급 및 저장 시설 또는
 - (iii) 오일 가스 분리, 가공, 취급 및 저장 시설
- (d) 상업, 공업 또는 주거 지역에서 3km 이내 (주유소 제외) 휘발유, 가스 또는 경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한 총60,000 배럴 이상의 연결 저장 능력을 가진 석유 제품 저장시설의 건설

10. 항구

- (a) 연간 취급 능력이 50% 이상 증대하는 항구의 확장
- (b) 연간 어류 하역 능력이 50% 이상 증대하는 어항의 확장

11. 발전 및 송전

- (a) (석탄 이외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송전선 유무와 관계 없이 발전 용량이 10MW 이상인 증기 발전소의 건설
- (b) 전송선 유무와 관계 없이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 (c)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송전선 건설

12. 해안 및 언덕 지역의 개발

- (a) 해안 지역에서 80 개 이상의 방을 가진 건물 또는 시설물의 건설
- (b) 20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평균해수면상 300m 이상에 고원 피서지 휴양시설 또는 호텔의 건설

13. 경사 지역의 개발

25° 이상 35° 미만의 경사도를 가진 지역에 대한 50% 미만의 개발 또는 개간.

14. 폐기물 처리 및 처분

- (a) 폐기 일정
 - (i) (근해의) 회수 공장의 건설.
 - (ii) (근해의) 폐수 처리 공장의 건설.
 - (iii) (근해의) 저장 시설의 건설.
- (b) 고체 폐기물
 - (i) 퇴비화 공장의 건설
 - (ii) 회수 공장 또는 재활용 공장의 건설
- (c) 하수
 - (i) 인구 20,000 명 이상을 위한 하수 처리 공장의 건설
 - (ii) 슬러지 처리 시설물

15. 준설

- (a) 개발 준설
- (b) 폐기물 준설 자재의 처분

16. 주택

50 헥타르 이상의 주택 개발

17. 산업 단지 개발

20 헥타르 이상의 산업 단지 개발

18. 신도시

2,000 호 이상의 주택 또는 100 헥타르 이상의 부지로 구성된 새로운 군구(郡區)의 건설

19. 채석장

바위 원자재 채석장

20. 도로

- (a) 고속도로의 건설

- (b) 고가도로의 건설

- (c)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횡단하거나 또는 근처의 도로, 터널 또는 다리의 건설

21. 급수

1일 4,500m³ 이상의 산업용, 농업용 또는 도시 급수를 위한 지하수의 개발

2차 일정

1. 농업

- (a) 삼림을 농업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500 헥타르 이상의 토지 개발 계획
- (b) 서서 있는 돼지가 2,000 마리 이상인 새로운 양돈 지역

2. 공항

- (a) 1,000m 이상의 활주로가 있는 새로운 공항의 건설
- (b) 주 공원, 국립 공원, 국립 해양공원, 해양 공원을 둘러싼 섬 또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의 공항 건설.

3. 배수 및 관개

- (a)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의 50 헥타르 이상의 표면적을 가진 인공 호수 및 인공 확장 호수의 건설.
- (b) 20 헥타르 이상의 습지대, 야생 생물 서식지 또는 건조한 내륙 삼림의 배수.

4. 수산업

50 헥타르 이상의 맹그로브림(mangrove),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의 소제가 수반되는 육상의 수산 양식 프로젝트

5. 임업

- (a) 평균 해수면상 300m 이상의 삼림을 100 헥타르 이상의 기타 용도의 토지로 변경하는 전환.
- (b) 다음 지역 내에서 삼림의 벌채 또는 기타 용도의 토지로의 전환
 - (i) 도시의 급수, 관개 또는 수력 발전에 사용되는 저수지 집수 지역
 - (ii) 주 공원, 국립 공원 또는 국립 해양 공원 근처 또는가까이의 지역
 - (iii) 주 공원, 국립 공원 또는 국립 해양 공원. 또는
 - (iv) 1984년 국가임업법(National Forestry Act) [313 법]에 따라 집수 삼림으로 관보에 발표된 지역.
- (c) 영구 보존 삼림 밖에서 100 헥타르 이상,

평균해수 300m 이상의 삼림 지역으로부터
목재의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d) 500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이르는
목재의 벌채, 절단 또는 운반
- (e) 500 헥타르 이상의 조림 삼림의 개발
- (f) 다음 지역의 전환 -
 - (i) 맹그로브림.
 - (ii) 토탄 늪지림. 또는
 - (iii) 20 헥타르 이상

50 헥타르 미만의 산업, 주택 또는 농업
용도를 위한 신선한 물 늪지림

- (g) 국립 해양 공원 근처 섬의 맹그로브림, 토탄
늪지림 또는 신선한 물 늪지림의 소제.

6. 공업

- (a) 비철 부문
 - (i) 1차 제련 알루미늄(모든 크기)
 - (ii) 1차 제련 구리(모든 크기)
 - (iii) 1차 제련 기타 비철(1일 50톤 이상 생산)
 - (b) 시멘트
시간당 클링커 생산 능력 30톤 이상 시
 - (c) 제철 제강 부문
 - (i) 1일 100톤 이상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 철광석의 이용.
 - (ii) 1일 200톤 이상의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 고철의 이용.
 - (d) 석유화학 부문
1일 50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제품 또는 제품군
 - (e) 펄프 또는 펄프 및 종이
1일 50톤 이상의 생산 능력
 - (f) 재활용 제지산업
1일 50톤 이상의 생산 능력
- ## 7. 토지 개간
- (a) 50 헥타르 이상의 지역과 관련된 강둑을 따라
이루어지는 해안 개간 또는 토지 개간
 - (b)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의
강둑을 따라 이루어지는 해안 개간 또는 토지 개간

- (c) 인공섬의 개간

8. 광업

- (a) 대규모 운영이 관련된 새로운 지역의 광물 채광
- (b)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근처
또는 가까이에서의 광물 채광

9. 석유

- (a) 정유공장의 건설
- (b) 가스 정제공장의 건설
- (c) 오일 및 가스 정제공장의 건설

10. 항구

- (a) 새로운 항구의 건설
- (b) 새로운 어항의 건설

11. 발전 및 송전

- (a) 전송선 유무에 관계 없이 10 MW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 (b) 전송선 유무와 관계 없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12. 해안 지역, 국립 공원 및 주 공원의 개발

관광 시설, 휴양 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개발 -

- (a) 국립 공원 또는 주 공원. 또는
- (b) 1985년 수산업법(Fisheries Act [317
법])에 따라 국립해양 공원으로 관보에
게재된 주위에 물로 둘러싸인 섬

13. 경사 지역의 개발

- (a) 25° 이상 35° 미만의 경사도를 가진 지역에
대한 50% 이상의 개발 또는 개간.
- (b) 경사도가 35° 이상인 지역을 횡단하거나
또는 근처의 도로, 터널 또는 다리의 건설

14. 폐기물 처리 및 처분

- (a) 폐기 일정
 - (i) 열처리 공장의 건설.
 - (ii) 근해의 납전지 폐기물 회수 공장의 건설
 - (iii) 공공 수도 유입구 2차측에 위치한
상당 양의 폐수를 생성하는 근해의
회수 공장 또는 처리 시설의 건설
 - (iv) 안전한 쓰레기 매립지 시설의 건설

(b) 고체 폐기물

- (i) 열처리 공장의 건설.
- (ii) 위생 쓰레기 매립지 시설의 건설
- (iii) 쓰레기 선별시설의 건설

15. 댐 건설

- (a) 관개, 홍수 조절, 매립 제어, 휴양, 급수를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100 헥타르 이상의 댐 또는 저류용 저수지의 건설
- (b)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댐 및 수력발전소 계획
 - (i) 15m 이상의 댐과 총 면적 40 헥타르 이상의 보조구조물
 - (ii) 표면적 100 헥타르 이상의 저수지

16. 운송

- (a) 대량 고속 운송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노선 또는 지선의 건설
- (b) 새로운 철도 노선 또는 철도 지선의 건설

17. 방사능 물질과 방사능 폐기물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고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이 도표와 첫번째 도표에서 지정된 활동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 제출 단계

- i. 배서를 받기 위한 TOR 제출(2차 일정에 속하는 활동의 경우)
- ii. 승인을 받기 위한 EIA 제출(1차 일정 또는 2차 일정에 속하는 활동의 경우)

두 문서 모두 유자격자(DOE에 등록된 EIA 컨설턴트)가 준비해야 하며, 환경질(質) 담당 청장 (Director-General of Environmental Quality)이 지정한 지침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기타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2016년 말레이시아 환경영향평가 지침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 in Malaysia, 2016)은 프로젝트 제안자가 EIA의 목적, EIA 연구 수행 절차 및 EIA 보고서 준비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2.2 부지 적합성 평가

어떤 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안된 부지의 위치가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환경에 대한 우려 사항이 설계 및/또는 기획을 통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산업 활동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 선정을 통하여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통제와 오염 방지를 고려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특히 오염 관리에 필요할 수도 있을 불필요한 투자 비용을 줄이고 관련 프로젝트나 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국이 발간한 2012년의 산업 및 주거 지역의 부지 선정 및 구역화를 위한 지침 (SZIRA, Guidelines for the Siting and Zoning of Industries and Residential Areas)과 2017년 말레이시아 산업 부지 선정을 위한 환경적 필수 사항 (EESIM, Environmental Essentials for the Siting of Industries in Malaysia)이 제조 시설 또는 산업 시설 설립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 개발자들을 위한 안내 문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안한 산업 활동은 반드시 산업 단지 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통제 대책을 세우고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부지의 적합성을 고려할 때는 관보에 게재된 구조 및 현지 계획, 주위 토지 이용, PLANMalaysia (Jabatan Perancangan Bandar dan Desa)에 의해 설정된 건축 후퇴(set-back) 또는 완충구역(buffer zone)의 마련, 추가 오염 하중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지역의 용량 그리고 폐기물 처분 요건 등과 관련하여 호환성의 관점에서 관심있는 부지를 평가합니다.

제 9 장

기반시설 관리





1. 산업 부지

1.1 산업 단지

1.2 자유지역

1.2.1 자유상업지역(FCZ)

1.2.2 자유산업지역(FIZ)

1.3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

2. 전력 공급

3. 용수 공급

4. 통신 서비스

5. 항공 화물 시설

6. 항만 시설

7. 화물 운송

7.1 컨테이너 운송

7.2 화물 운송 대행

8. 고속도로

9. 철도 운송 서비스

10. 디지털 인프라

기반시설 관리

1. 산업 부지

1.1 산업 단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사업의 용이성이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소규모 산업, 할랄(Halal) 산업, 바이오기술 및 '하이테크'와 같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600여개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단지는 투자자에게 도전적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됩니다. 주요 시내로의 용이한 접근, 충분한 전기 및 물 공급, 최대 1Gbps의 고속 광대역(HSBB), 가스 배관, 물류 및 저장 시설, 공장 보안, 기성 복층 시설 및 "플러그 앤 플레이" 구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 덕분에 투자자는 초기 스타트업 비용을 절감하고 말레이시아에서의 프로젝트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단지는 전체 산업 가치 사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반 기지입니다. 저명한 클러스터 기반 산업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림하이테크파크(KHTP)

구림하이테크파크(KHTP)는 복합 물류 연결성과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초의 첨단 산업 단지로 자본 집약적인 하이테크 제조, 첨단 기술 및 R&D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및 의료 산업 분야의 기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투자 장소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바투카완산업단지(BKIP)

바투카완산업단지(BKIP)는 국내 최고의 기술 허브이며, 전자 및 자동화 클러스터로의 R&D 투자를 포함하여 하이테크 및 고부가가치 투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고품질 인프라 시설과 공항 및 항구 접근성을 가진 종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이 단지는 많은 말레이시아인 소유 기업과 저명한 다국적 기업(MNC)을 끌어들여 이들이 바투카완산업단지(BKIP)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아이파크(I-Park)

아이파크(I-Park)는 조호르(Johor)에서 개발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지 개념입니다. 현재까지 3개의 아이파크가 개발되었습니다. 즉, I-Park SICC, I-Park Senai @ Airport City 및 I-Park Kulai가 그 3개 아이파크입니다. 이들 단지는 국제 표준을 따라 건설되었으며 우수한 편의 시설과 완벽하게 통합되었고 투자자에게 워크숍 솔루션을 제공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가스 연결, 근로자 기숙사 및 HSBB에의 접근성 등과 같은 플러그 앤 플레이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운영을 간소화하고 투자자를 지원합니다.

아이파크는 하이테크 제조, 연구, 물류 및 혁신 활동 등에 관여하는 현지 및 다국적 기업 모두에게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또한 세나이 국제 공항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통해 비행기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말레이시아에 재투자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POIC, 라하드 다투(Lahad Datu)

POIC 라하드 다투는 팜유 산업 클러스터 전용 구역입니다. 이것은 경질, 중(中)질, 중(重)질 팜유 기반 산업을 수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통합 산업 단지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드라이 벌크 터미널, 액체 벌크 터미널, 바지선 부두와 같은 시설도 POIC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팜유와 직접 연결된 투자 외에도 POIC 라하드 다투는 항만 및 물류, 바이오매스, 바이오 정제소, 오일 & 가스(O&G) 및 기타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와 같은 광범위한 지원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말라주 산업단지(SIP)

사라왁주 빈톨루에 있는 사말라주 산업단지(SIP)는 알루미늄 제련, 철강, 정유, 실리카 기반 산업, 해양 엔지니어링 및 광범위한 산업 및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중공업을 위한 7,000헥타르의 전용 산업 단지입니다.

우수한 시설과 공익 시설 외에도 이 단지에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화물 취급 장비를 갖춘 사말라주 산업항(Samalaju Industrial Port)으로 알려진 전용 항만 시설이 있습니다. 이 항구는 사말라주 산업 단지에 위치한 많은 다국적 기업과 현지 기업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합니다.

보다 포괄적인 말레이시아 산업 단지 목록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청(MIDA)과 말레이시아제조회사연맹(Federation of Malaysian Manufacturers)이 공동으로 발행한 말레이시아 산업 단지 주소록(Malaysian Industrial Park Directory)을 참조하십시오.

www.fmm.org.my/images/articles/publication/Malaysia%20Industrial%20Park%20Directory.pdf

1.2 자유지역

자유지역은 1960년 자유 지역법 섹션 3(1)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자유 상업 지역 또는 자유 산업 지역으로 선언한 말레이시아의 모든 지역입니다. 자유지역은 주로 중계무역(entrepot trade)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로 수출용 제품을 생산 또는 조립하는 제조회사들을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습니다.

자유지역의 활동 및 산업체들은 1967년 관세법(Customs Act) 2 (1A) 절에 따라 기본 관세 구역(Principle Customs Area)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따른 수출입 금지, 파트 IVA에 따른 통과 및 환적, 파트 V에 따른 항구 통관, 파트 VI에 따른 영해의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조항 및 1967년 관세법 파트 VII에 따른 적하목록 등도 자유지역에 적용됩니다.

1.2.1 자유상업지역(FCZ)

자유상업지역(FCZ)은 거래(소매 거래는 제외), 소분(breaking bulk), 등급매기기, 재포장, 재라벨작업, 환적과 환승 등의 상업 활동을 위해 할당된 자유지역입니다. 일부 자유지역의 소매 거래는 1990년 자유 지역법 6A절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포트 클랑(Port Klang)의 남부 및 서부 항구, 플라우 인다(포트 클랑 자유지역-PKFZ); MILS 물류 허브(MLH), 버터워스(Butterworth), 재바얀 레파스(Bayan Lepas),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 란타우 판장(Rantau Panjang), 평칼란 쿠보르(Pengkalan Kubor), 스텔랑 라우트(Stulang Laut), 부킷 카유 히탐(Bukit Kayu Hitam), 타식 케니르(Tasik Kenyir), 관탄항(Port of Kuantan), 파시르 구당 항(Port of Pasir Gudang), 탄중 펠레파스 항(Port of Tanjung Pelepas) 등에 23개의 자유상업지역(FCZ)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2 자유산업지역(FIZ)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s, FIZ)은 최소한의 통관 절차 외에도 수출주도형 제조회사들에 대해 제조 공정에 직접 소요되는 원료, 구성 부품, 기계와 장비류의 면세 수입 및 완제품 수출에 있어서 최소의 절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파시르 구당(Pasir Gudang), 탄중 펠레파스(Tanjung Pelepas), 바투 베렌담(Batu Berendam), 탄중 클링(Tanjung Kling), 텔록 팡리마 가랑(Telok Panglima Garang), 플라우 인다(Pulau Indah, PKFZ); 에스찌 웨이(Sg. Way), 울루 클랑(Ulu Klang), 젤라팡 키타(Jelapang; Kinta), 바얀 레파스(Bayan Lepas), 세베랑 페라이(Seberang Perai), 사마 자야(Sama Jaya) 등에 22개의 자유산업지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산업지역 입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체 생산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 ✓ 원자재/구성품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산업지역 회사들한테 국산 원자재와 구성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3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

자유산업지역 구축이 실용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자유산업지역과 같은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사는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LMWs)에 제공되는 편의는 자유지역(FIZs)에서 운영 중인 공장장에서 제공되는 편의와 비슷합니다.

보세제조창고(LMW)로 승인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체 생산 또는 제품의 80% 이상이 수출용인 기업
- ✓ 원료/구성품을 주로 수입하는 기업

관세의 납부

2011년 1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FIZ)과 허가받은 보세제조창고(LWM) 회사는 다음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 아세안물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에 상응하는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 ✓ 국내산 부품의 가치가 40% 이상일 때. 그리고
- ✓ 국내산 부품의 가치가 40%에 미달할 경우, FIZ/LMW 기업이 생산된 최종 제품의 비국내산 원자재가 규정된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 변형 공정을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내산 인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전력 공급

말레이시아의 전력 공급은 지역 및 전 세계의 다른 공익시설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하고 고품질이며 신뢰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서부의 전력 공급은 국가 공익시설 회사인 Tenaga Nasional Berhad의 의해 이루어지며, 반면 말레이시아 동부, 즉, 사바주(Sabah)와 사라왁주(Sarawak)의 전원 공급은 각각 사바 전력 센디리안(Sabah Electricity Sendirian Berhad(SESBB))과 사라왁 에너지(Sarawak Energy Berhad(SEB))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말레이시아의 발전은 주로 화력발전, 가스발전 및 수력발전의 혼합입니다. 발전소는 공익시설 업체와 독자 전력 생산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규모 수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매스로부터 나오는 재생에너지 또한 말레이시아의 녹색기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송전 전압은 500kV, 275kV와 132kV이며, 배전 전압은 33kV, 11kV와 400/230V입니다.

전기 연결, 규정 및 관세/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방문해 보십시오.

- ❖ Tenaga Nasional Berhad
- ❖ Sabah Electricity Sendirian Berhad
- ❖ Sarawak Energy Berhad

3. 용수 공급

말레이시아반도와 라부안 연방령의 용수 공급 및 서비스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의 공동 관할 하에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말레이시아 상수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국가상수도서비스법(Suruhanjaya Perkhidmatan Air Negara 2006 Act (Act 654))와 2006년 상수도서비스산업법(Water Service Industry Act 2006 (Act 655))이 각각 2007년과 2008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반도와 라부안연방령의 소비자는 신뢰성 있고 안전한 수도 공급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수도 공급 운영자가 식수의 품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보건부(MOH)는 면밀한 감시와 정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수도 사용자는 모두 수도계량기로 사용량이 계량됩니다. 수도 요금은 주마다 다릅니다.

동부 말레이시아에서 용수 문제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바주 용수와 (Sabah State Water Department)는 주의 용수를 감독하는 반면, 사라왁주(Sarawak)에서는 여러 기관이 각 지역의 용수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통신 서비스

말레이시아에는 사실상 전국을 망라하는 유선 통신과 이동 통신을 모두 제공하는 수많은 통신 공급업체(통신업체)가 있습니다. 통신 산업은 말레이시아 통신 다매체 위원회(MCMC,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의 규제를 받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유선 통신 회사로는 소매 및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Unifi 브랜드와 기업 및 공공 부문 이용자를 위한 TM ONE 브랜드를 사용하는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 Berhad)가 있습니다. 텔레콤 말레이시아(Telekom Malaysia Berhad)는 최대 10Gbps의 속도로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신회사는 또한 Unifi Mobile 브랜드를 통해 무선 커버리지 솔루션 및 관리형 IT 서비스는 물론 휴대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통신 연결, 규정 및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MCMC

❖ Telekom Malaysia Berhad

Unifi Mobile 외에도 말레이시아에는 가상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를 비롯한 여러 다른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후불 및 선불 모바일 요금제를 모두 제공합니다. 현지 SIM 사용자는 적절한 신분증(예: 여권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잘리난 디지털 네가라 플랜(JENDELA, Jalanan Digital Negara Plan)이 발표된 후 말레이시아의 주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는 기존 3G 네트워크가 2021년 말까지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휴대폰 사용자는 자신의 장치가 4G/LTE 또는 2G(GSM) 중 하나를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G 네트워크는 2021년 말까지 클랑 밸리(Klang Valley) 내에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여행객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국제 로밍 적용 범위 및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현지 이동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5. 항공 화물 시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환적센터로서 특히 매력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항공화물 운송시설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6개 국제공항은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셀랑고르주(Selangor) 세팡(Sepang)의 정교한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LIA)은 현재 연간 4천만 명의 여객처리능력과 120만 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은 10,000 헥타르에 달하는 부지로 연간 최대 1억 4천만 명의 여객과 540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국제공항으로는 말레이시아반도의 페낭국제공항(Penang), 랑카위국제공항(Langkawi)과 세나이국제공항(Senai), 사바주(Sabah)의 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Kota Kinabalu), 사라왁주(Sarawak)의 쿠칭국제공항(Kuching)이 있습니다.

MAB Kargo Sdn Bhd(MASkargo)는 말레이시아항공(Malaysia Airlines)의 화물부문사업이며 Malaysia Aviation Group의 자회사입니다. MASkargo는 MH 항공사 코드에 따라 화물 항공사로 운영되며 전 세계에 걸쳐 거의 100개에 달하는 목적지에 정기 및 전세 항공 화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Skargo는 11개의 항공 화물 창고를 통해 지상 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 터미널 운영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MASkargo는 말레이시아 세팡의 자유상업지역(FCZ) 내 쿠알라룸푸르공항(KLIA)에 108 에이커의 메인 허브인 첨단 화물 센터(ACC, Advanced Cargo Centr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연간 최대 1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반자동 창고를 포함한 최신 기술과 결합된 안전하고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실시간 데이터 추적 및 원활한 통신 흐름을 보장합니다. 이 첨단화물센터(ACC)의 시설 중에는 할랄 물류 구역(HAL Zone), 우편 및 전자상거래 센터, 6성급 동물 호텔, 원스톱 부패성화물센터(one-stop Perishable Centre) 및 주요 운송 주선업체를 위한 세계 최초의 특급 비즈니스 센터(PBC, Priority Business Center)가 있습니다. .

6. 항만 시설

말레이시아의 항만은 연방 항만과 주 항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방 항만은 교통부의 관할에 속합니다. 현재 주요 연방 항만은 포트클랑항(Port Klang), 페낭항(Penang Port), 조호르항(Johor Port), 탄중펠레파스항(Port of Tanjung Pelepas), 쿠안탄항(Kuantan Port), 케마만항(Kemaman Port), 라부안항(Labuan Port), 빈톨루항(Bintulu Port) 등의 8곳이 있습니다. 이들 연방 항만은 모두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빈톨루항은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를 처리하는 항만입니다.

최근 수년 간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교역 확대에 발맞춰 항만들도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만 중 2개 항만, 즉 포트클랑항과 탄중펠레파스항은 세계 20대 컨테이너항 가운데 올라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만 관련 정보의 정책은 다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 공급 주도적, 즉 항만의 충분한 처리능력을 확보하여 선박의 대기 시간을 제로로 만듭니다.
- ❖ 다음을 통해 항만 활용도를 높입니다.
 -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 항만 민영화,
 - 부대 서비스의 개발과 개선. 그리고

- 내륙 운송의 개발과 개선.
- ❖ 로드 센터링: 포트클랑은 전국 화물 물동량의 센터 겸 환적 센터로, 반면 탄중펠레파스항(PTP)은 지역 환적 허브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7. 화물 운송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다양한 회사가 종합적인 컨테이너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운반장치, 화물운송대행, 창고보관, 선박급유(bunkering), 배송 관련 서비스, 항만과 세관 통관, 컨테이너 수리, 대여와 보수유지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수하인과 고객은 국내 지점과 사무소망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화물 운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 세계에 걸쳐 훌륭한 국제 대리점 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7.1 컨테이너 운송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륙 공공 운송 대리점 협회(Land Public Transport Agency)를 통해 내륙 컨테이너 운송업체를 규제합니다.

62 개의 운송업체가 다양한 트레일러군과 개조 차량을 포함하는 원동기 차량을 통해 다양한 화물 운송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일부는 현대적인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을 장착하여 도로에 운행 중인 운반 차량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많은 기타 중소기업들이 일반 화물을 국내 각지의 목적지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폐쇄지선철도를 이용한 철도운송서비스(Block Rail Feeder Service)와 원격지 고객을 위한 정기 화물선 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도로와 철도) 운송 시스템으로 신속한 화물 운송이 확실히 됩니다.

7.2 화물 운송 대행

말레이시아 전역에 소재하는 수백 곳의 화물운송 대행업체들이 전국에 걸친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화물도 여러 곳의 국제운송 대행업체를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운송 대행업체들은 제조업체들에 대해 상품의 통관을 위해 세관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면허, 허가 및 관세/세 면제의 신청 수속을 대행해 줍니다.

8. 고속도로

말레이시아의 도시 간 고속도로의 설계, 건설, 조정, 운영과 유지관리는 말레이시아고속도로청(Malaysian Highway Authority)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편안한 고속도로는 모든 주요 소도시와 잠재적 개발 지역을 연결하며 또는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강력한 경제성장과 함께 하여 지난 수년 간 보다 많은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해 왔습니다.

현재 남북 고속도로와 페낭대교(Penang Bridge), 쿠알라룸푸르-카라코고속도로 및 동해안 고속도로가 말레이시아 도로 인프라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 철도 운송 서비스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운영 중인 Keretapi Tanah Melayu Bhd.(KTMB)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KTM은 말레이시아 최대의 수송 회사로서 곡물에서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KTMB의 네트워크는 파당 베사르(Padang Besar)의 북부 터미널부터 남부의 조호르주 파시르 구당(Pasir Gudang)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반도 전체 길이와 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북부 라인은 페낭섬의 부두와 항만시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객 철도 서비스를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기타 철도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mot.gov.my/en/land/infrastructure/current-rail-services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디지털 인프라

MSC Malaysia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1996년 설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세계 정상급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치하기 위한 지정된 경제 회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MSC Malaysia의 지위(Status)는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인센티브, 권리 및 특권을 국내외 모두 자격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MSC Malaysia는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디지털 부문과 신형 기술 투자는 모든 시민에게 더 큰 공동 번영을 안겨주므로 말레이시아 5.0을 실현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Malaysia 5.0은 금융 기술, 블록체인 및 인공 지능과 같이 피부색, 종교 및 국가 노선에 따라 권한을 분산하고 분할에 대한 강조를 없앨 수 있는 기술을 통하여 금융 포함, 접근성, 성능 및 성장을 직접 해결합니다.

말레이시아의 ICT 기업이 (2021년 3월 현재) 2,807개가 넘는 가운데 MSC Malaysia Status는 말레이시아의 많은 국내외 ICT 기업들이 매우 선망하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C Malaysia 지위를 가진 회사로 인정되면 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ICT 산업에서 필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독점적 인센티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MSC 말레이시아 사이버시티 및 사이버센터

MSC 말레이시아 사이버시티 및 사이버센터(MSC Malaysia Cybercities and Cybercentres)

는 ICT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내 ICT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유익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MSC Malaysia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같은 부문의 기업이 함께 배치되어 빠른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발전된 디지털 경제 비전의 틀 안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익한 생태계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은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는 한편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71개의 MSC Malaysia Cybercities & Cybercentres가 있습니다.

클랑 벨리	
1.	사이버자야(Cyberjaya)
2.	UPM-MTDC
3.	KL 타워
4.	아이시티(i-City)
5.	미드 벨리 시티(Mid Valley City)
6.	방사라 사우스 시티 (Bangsar South City)
7.	신포니 하우스(Symphony House)
8.	더 인터마크(The Intermark)
9.	자야 33
10.	메나라 월드와이드 (Menara Worldwide)
11.	페르소프트 타워(Persoft Tower)
12.	메나라 메이뱅크 (Menara Maybank)
13.	캡 스퀘어 타워(Cap Square Tower)
14.	다만사라 업타운 (Damansara Uptown)
15.	린데(Linde) ROC
16.	메나라(Menara) LGB
17.	룩소르 테크 센터(Luxor Tech Centre)

18.	오아시스 다만사라 (Oasis Damansara)
19.	UOA 비즈니스 파크 (Business Park)
20.	플라자 합 쉑(Plaza Hap Seng)
21.	APM 테크놀로지 센터 (Technology Centre)
22.	위즈마 E&C(Wisma E&C)
23.	JKG 타워
24.	다타란 메이뱅크 (Dataran Maybank)
25.	메나라(Menara) AIMS
26.	더 익스체인지 106(The Exchange 106)
27.	선웨이 벨로시티(Sunway Velocity)
28.	IOI 리조트 시티(IOI Resort City)
29.	테크놀로지 파크 말레이시아(TPM)
30.	쿠알라룸푸르 시티 센터(KLCC)
31.	KL 센트럴(KL Sentral)
32.	TM 사이버센터 단지(TM Cybercentre Complex)
33.	반드라 우타마(Bandar Utama)
34.	지타워(GTower)
35.	퀸9(Quill 9)
36.	위즈마 함자 쉑 흥(Wisma Hamzah Kwong Hing)
37.	푸총 금융 기업 센터 (Puchong Financial and Corporate Centre, PFCC)
38.	메나라 빈자이(Menara Binjai)
39.	메나라(Menara) OBYU

40..	UOA 다만사라(Damansara)
41..	선웨이 리조트 시티 (Sunway Resort City)
42.	원 시티(One City)
43.	아이허브센툴파크 (iHubSentulPark)
44.	푸트라자야(Putrajaya)
45.	더 패러다임(The Paradigm)
46.	메나라 메시니아가 (Menara Mesiniaga)
47.	아이콘 시티(Icon City)
48.	네오 다만사라(Neo Damansara)
49.	메나라(Menara) KEN TTDI
50.	다만사라 시티(Damansara City)
51.	뉴클레우스 타워(Nucleus Tower)
52.	심포니 스퀘어(Symphony Square)
53.	K KYM 타워
54.	플라티눔 파크(Platinum Park)
55.	메나라 프루덴셜(Menara Prudential)
페낭(PENANG)	
1.	페낭 사이버시티 1(Penang Cybercity 1, PCC1)
2.	사이프레스(Cypress, 종전에는 Spansion으로 알려져 있었음)
3.	원 프리싱트(One Precinct)
4.	알부카리 빌딩(Albukhary Building)
5.	리빙스톤 타워(Livingston Tower, 종전에는 Menara Zurich로 알려져 있었음)
6.	GBS@Mayang

조호르(JOHOR)	
1.	메나라 MSC 사이버포트 (Menara MSC Cyberport)
2.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스튜디오 (Iskandar Malaysia Studios)
3.	메디니(Medini)
멜라카(MELAKA)	
멜라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Melaka International Trade Centre, MITC)	
케다(KEDAH)	
쿨림 하이테크 파크 (Kulim Hi-Tech Park, KHTP)	
파항(PAHANG)	
메루 라야(Meru Raya)	
PAHANG	
푸트라 스퀘어(Putra Square)	
파항 테크놀로지 파크(Pahang Technology Park, PTP)	
사라왁주(SARAWAK)	
타운 스퀘어 빈톨루(Town Square Bintulu)	
사바주(SABAH)	
ITCC-페남팡(ITCC-Penampang)	
디지털 아세안의 심장,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는 국가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 통계국(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은 2020년 GDP 기여도를 20%로 추산하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7%로 예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공사(MDEC)는 상향 성장 궤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아세안'	

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야심을 과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동 번영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계속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확립하기 위해 MDEC은 세 가지 전략 추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가진 말레이시아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가속화하며, 디지털 투자를 유치하여 사회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히할 것입니다.

디지털투자청(DIO)

디지털 투자청(DIO, Digital Investment Office)은 디지털 투자 프로젝트를 조정, 사정, 평가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투자청(DIO)은 또한 인재 요건 및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미래 대비 정책 및 지침을 제시하고, 현재 전염병 및 그 이후에 기업이 직면할 운영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디지털 투자청(DIO)의 중심에는 말레이시아에 디지털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말레이시아, 아세안의 심장부’(MHODA, Malaysia, Heart of Digital ASEAN) 포털이 있습니다. MHODA를 통해 디지털 투자청(DIO)은 디지털 인에이블러, 고소득 일자리 창출, 지역 인력 및 기업의 디지털 기술 향상을 통해 신규 및 기존 경제 클러스터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MyDIGITAL의 목표에 발 맞추어 진입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 양질의 디지털 투자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이와 같은 단일 진입점을 통해 투자 관심을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시설 및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및 정보는 MD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C 말레이시아란?

mdec.my/what-we-offer/msc-malaysia/

사이버시티 및 사이버센터란?

mdec.my/what-we-offer/cybercities-cybercentres-digital-hubs/

디지털 투자청 Digital Investment Office 웹사이트.

mdec.my/dio/

디지털 아세안의 심장 말레이시아

www.heartofdigitalasean.my

제 10 장

기타 투자 촉진 기관





1.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
2. 동부해안경제지역개발위원회(ECERDC)
3. 할랄개발공사(HDC)
4. InvestKL
5. 이스칸다르지역개발청(IRDA)
6.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
7. 북부회랑시행국(NCIA)
8. 지역회랑개발청(RECODA)
9. 사바 경제 개발 투자청(SEDIA)

기타 투자 촉진 기관

투자진흥청(MIDA)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투자 진흥 기관(IPA)이지만, 이 주요 기관은 또한 다른 IPA와 공동 협력하여 국가 투자 의제를 이끌어 갑니다. 이들 투자 진흥 기관 국내의 다양한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인재 및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육성하려는 투자진흥청(MIDA)의 진행 중인 노력을 보완합니다.

1.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

바이오경제공사는 말레이시아에서 바이오 기반 산업을 위한 선도적 개발 기관입니다. 이 공사는 국가 생명 공학 정책(NBP)의 목표를 실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또한 R&D 및 상업 분야 모두에서 가치 제안을 식별하고 재정 지원 및 개발 서비스를 통해 이와 같은 벤처회사들을 지원합니다. 자체의 기타 책무 중에서 바이오경제공사(Bioeconomy Corporation)는 지원, 촉진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레이시아의 바이오 기반 회사들의 성장을 육성하고 가속화하며 바이오 기반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또한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이오경제공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bioeconomycorporation.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동부해안경제지역개발위원회(ECERDC)

이 위원회는 동부 해안 경제 지역(ECER)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목표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며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ECERDC의 역할은 전략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구현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해당사자 문제가 처리되고 지역 수요가 충족되도록 하는 협의 및 협력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의 정부의 노력을 보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ECER에는 켈란탄(Kelantan)주가 포함됩니다.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의 테렝가누(Terengganu), 파항(Pahang) 및 조호르(Johor).

ECERD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ecerdc.com.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할랄개발공사(HDC)

HDC는 말레이시아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할랄(halal) 생태계 및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며 세계 최초의 정부 지원을 받는 할랄(halal) 산업 개발 기업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생태계 개발에 참여를 촉진하고 업계 참가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앙 조정 기관입니다.

HDC는 할랄 생태계 내에서 기회, 투자, 무역, 고용, 정보 공유 및 기술 이전의 창출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세계 할랄 산업의 선도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HD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hdcglobal.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InvestKL

InvestKL은 Fortune 500 및 Forbes 2000 다국적 기업, 유니콘, 급성장하는 기업 및 '히든 챔피언' 유형의 기업을 유치하여 그들의 지역 허브를 구축하고 광역 쿠알라룸푸르에서 지역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InvestKL은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미국,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그들이 혁신 및 인재 허브를 구축하고 광역 쿠알라룸푸르 지역 내에서 지역 비즈니스 및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여 아시아에서 회사의 성장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InvestKL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investkl.gov.my/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이스칸다르지역개발청(IRDA)

IRDA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Iskandar Malaysia)를 국제적 위상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대도시로 개발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규제하고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Iskandar Malaysia)는 풍부한 토지, 천연 자원 및 인적 자원이 있으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이 풍부한 말레이시아 최남단 Johor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다르지역개발청(IRDA)은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Iskandar Malaysia) 투자의 기획, 홍보 및 촉진 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IRD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irda.com.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

말레이시아디지털경제공사(MDEC)는 25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의 ICT 및 디지털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온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MDEC의 열망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글로벌 챔피언을 출범시키는 지역 디지털 강국인 디지털 아세안의 심장부로 말레이시아를 확고히 확립시켜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공동 번영을 디지털 경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DEC는 국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포용적이며 보상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 말레이시아인에게 권한을 주고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며 디지털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주요 동인에 중점을 둡니다.

MDE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dec.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북부회랑시행국(NCIA)

북부회랑시행국(NCIA)은 NCER(Northern Corridor Economic Region, 북부회랑경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전략을 고안하는 책임이 있는 법정 기관입니다. NCIA는 고부가가치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실행하며 또한 이 지역의 민간 부문 참여를 촉진합니다.

NCI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ncer.com.my/about-ncer/about-ncia/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지역회랑개발청(RECODA)

지역회랑개발청(RECODA)은 사라왁재생에너지회랑(SCORE,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합니다. RECODA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로 첫째 신규 및 기존 시장을 창출하고 자극을 주어 SCORE를 홍보하고 둘째 사라왁주(Sarawak)의 야심찬 투자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SCORE는 7만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과 60만명의 인구, 800만 헥타르의 산림과 500만 헥타르의 경작지 그리고 농업에 적합한 이탄 땅에 걸쳐 있습니다. SCORE의 수력 발전 인프라가 제공하는 풍부한 재생 에너지는 특히 에너지가 부족한 산업들에서 핵심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RECOD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recoda.gov.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사바 경제 개발 투자청(SEDIA)

SEDIA는 사바 개발 회랑(Sabah Development Corridor, SDC)을 주도하는 원스톱 권한입니다. 즉, 사회 개발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우선 순위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면서 SDC의 개발을 계획, 조정, 촉진 및 가속화합니다.

SEDI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sedia.com.my/ 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연락처





행정 부서

관련 기관

MITI 해외 지부

MIDA 해외사무소

MIDA 주 사무소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해외사무소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주 사무소

행정 부서

수상실(PRIME MINISTER'S OFFICE)

Block B8, Prime Minister's Department Complex
62502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8 3904
Website : www.pmo.gov.my
E-mail : ppm@pmo.gov.my

농업 및 농업 기반 산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Block 4 G1, Wisma Tani
No. 28,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24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70 1200/1400
Fax : (603) 8888 6906
Website : www.moa.gov.my
E-mail : pro@moa.gov.my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Wisma Pertahanan
Jalan Padang Tembak
50634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059 8400
Fax : (603) 2691 4163
Website : www.mod.gov.my
E-mail : portal@mod.gov.my

국내거래협동조합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No. 13,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23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2 5983
Website : www.kpdnkk.gov.my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Block E8,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04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000 8001
Website : www.moe.gov.my
E-mail : kpkpkm@moe.gov.my

에너지과학기술환경기후부 (MINISTRY OF ENERGY, SCIENCE, TECHNOLOGY, ENVIRONMENT & CLIMATE)

Level 1 - 7, Block C4, C5, & C7, Complex C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62662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9 3712
Website : www.mestecc.gov.my
E-mail : enquiry@mestec.gov.my

연방령부(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

Block 1 & Block 2, Menara Seri Wilayah
Precinct 2, 62100 Putrajay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9 7957
Website : www.kwp.gov.my
E-mail : webmaster@kwp.gov.my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Complex
No.5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2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3000
Fax : (603) 8882 3893/3894
Website : www.treasury.gov.my
E-mail : pro@treasury.gov.my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sma Putra Complex
No. 1, Jalan Wisma Putr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02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9 1717 / 8889 2816
Website : www.kln.gov.my
E-mail : pro.ukk@kln.gov.my

보건부(MINISTRY OF HEALTH)

Block E1, E3, E6, E7 & E10, Complex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8 6187
Website : www.moh.gov.my
E-mail : kkm@moh.gov.my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Block D1, D2 & D9, Complex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46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86 8000/3000
Fax : (603) 8889 1613/1610
Website : www.moha.gov.my
E-mail : webmaster@moha.gov.my

주택지방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DEVELOPMENT)

No. 51,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621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91 3182
Website : www.kpkt.gov.my
E-mail : pro@kpkt.gov.my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Level 6-9, Block D3, Complex D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3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86 5000/5200
Fax : (603) 8889 2381
Website : www.mohr.gov.my
E-mail : akpukk@mohr.gov.my

통신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Lot 4G9,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2693 5114
Website : www.kkmm.gov.my
E-mail : webmaster@kkmm.gov.my

에너지자연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Wisma Sumber Asli
No. 25,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4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9 2672
Website : www.nre.gov.my
E-mail : aduanre@nre.gov.my

1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No. 15, Level 6-13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54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0 3441
Website : www.mpic.gov.my
E-mail : webmaster@mpic.gov.my

농촌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No. 47,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91 2000
Website : www.rurallink.gov.my
E-mail : webmaster@rurallink.gov.my

관광예술문화부 (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No. 2, Tower 1, Jalan P5/6, Precinct 5
622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91 7100
Website : www.motac.gov.my
E-mail : info@motac.gov.my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No. 26, Jalan Tun Hussein,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1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8 0158
Website : www.mot.gov.my
E-mail : aduan@mot.gov.my

여성가족지역사회개발부(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
No. 55,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621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323 2000
Website : www.kpwkm.gov.my
E-mail : info@kpwkm.gov.my

노동부(MINISTRY OF WORKS)
Tingkat 1 – 14, Kompleks Kerja Raya
Jalan Sultan Salahuddin
5058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2711 1101
Website : www.kkr.gov.my
E-mail : pro@kkr.gov.my

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Menara KBS
No.27, Persiaran Perdana, Precinct 4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71 3333/88713000
Fax : (603) 8888 8770
Website : www.kbs.gov.my
E-mail : webmaster@kbs.gov.my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Blok B5 & B6
Prime Minister's Department Complex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7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8 3755
Website : www.mea.gov.my
E-mail : webmaster@mea.gov.my

기업가정신개발부(MINISTRY OF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Blok E4/5, Kompleks Kerajaan Parcel E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668 Putrajaya, Malaysia
Fax : (603) 8889 3712
Website : www.med.gov.my
E-mail : webmaster@med.gov.my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Blok F11, Kompleks F
Lebuh Perdana Timur, Presint 1
Pusat Pentadbiran Kerajaan Persekutuan
620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91 7000
E-mail : pro@kasa.gov.my

관련 기관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

Wisma HRDF
Jalan Beringin, Damansara Heights
50490 Kuala Lumpur, Malaysia
Tel : 1800-88-4800
Fax : (603) 2096 4999
Website: www.hrdf.com.my
E-mail : support@hrdf.com.my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Level 1 - 7(Podium),
No.15, Persiaran Perdana, Precinc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5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000 8000
Fax : (603) 8880 1200
Website: www.imi.gov.my
E-mail : opsroom@imi.gov.my

내국세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Menara Hasil
Persiaran Rimba Permai Cyber 8
63000 Cyberjaya, Selangor, Malaysia
Tel : (603) 7713 6666
Fax : (603) 8313 7801
Website: www.hasil.gov.my
E-mail : callcentre@hasil.gov.my

말레이시아지적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Unit 1-7, Ground Floor, Tower B Menara UOA
Bangsar
No.5, Jalan Bangsar Utama 1
590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299 8400
Fax : (603) 2299 8989
Website: www.myipo.gov.my
E-mail : ipmalaysia@myipo.gov.my

라부안금융감독청(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라부안 FSA)

Level 17, Main Office Tower
Financial Park Complex, Jalan Merdeka
87000 Federal Territory Labuan, Malaysia
Tel : (6087) 591 200
Fax : (6087) 453 442
Website: www.labuanibfc.com
E-mail : communication@labuanfsa.gov.my

말레이시아바이오경제개발공사(MALAYSIA BIOECONOM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Level 16, Menara Atlan
161B,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116 5588
Fax : (603) 2116 5411
Website: www.bioeconomy.com.my
E-mail : strategic.coms@bioeconomycorporation.my

말레이시아산업개발금융공사(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BHD, MIDF)

Level 21, Menara MiDF
82, Jalan Raja Chulan
502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173 8888
Fax : (603) 2173 8877
Website: www.midf.com.my
E-mail : inquiry-feedback@midf.com.my

말레이시아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MALAYSIA)

Galeria PjH
Aras 9 Jalan P4W
Persiaran Perdana, Presint 4
621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70 5800
Fax : (603) 8870 5900
Website: www.seda.gov.my
E-mail : enquiry@seda.gov.my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SSION)

No.12, Jalan Tun Hussein, Precinct 2
621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70 8500
Fax : (603) 8888 8637
Website: www.st.gov.my

말레이시아 기술개발공사(MALAYSIAN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MTDC)

Ground Floor, Menara Yayasan Tun Razak
Jalan Bukit Bintang
551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172 6000
Fax : (603) 2163 7541
Website: www.mtdc.com.my
E-mail : comms@mtdc.com.my

**말레이시아 첨단기술민관공사(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

Prime Minister's Department
MiGHT Partnership Hub
Jalan Impact
63000 Cyberjaya, Selangor, Malaysia
Tel : (603) 8315 7888
Fax : (603) 8312 0300
Website: www.might.org.my
E-mail : info@might.org.my

**말레이시아 관광청(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9th Floor, No. 2, Tower 1
Jalan P5/6, Precinct 5
62200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91 8000
Fax : (603) 8891 8889
Website: www.tourism.gov.my
E-mail : enquiries@tourism.gov.my

**멀티미디어개발공사(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MDeC)**

2360, Persiaran APEC
63000 Cyber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 : (603) 8315 3000
Fax : (603) 8315 3115
Website: www.mdec.com.my
E-mail : cltc@MDeC.com.my

**말레이시아 생산성본부(MALAYSIA PRODUCTIVITY
CORPORATION, MPC)**

Lorong Produktiviti, Off Jalan Sultan
46200 Petaling Jaya, Selangor, Malaysia
Tel : (603) 7955 7266
Fax : (603) 7957 8068
Website: www.mpc.gov.my
E-mail : marketing@mpc.gov.my

클랑항만청(PORT KLANG AUTHORITY)

Mail Bag Service 202, Jalan Pelabuhan Utara
42005 Port Klang, Selangor, Malaysia
Tel : (603) 3168 8211
Fax : (603) 3168 7626
Website: www.pka.gov.my
E-mail : onestopagency@pka.gov.my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CUSTOMS MALAYSIA)

Ministry of Finance Complex, Precinct 2
No.3 Persiaran Perdana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6 Putrajaya, Malaysia
Tel : (603) 8882 2100
Fax : (603) 8889 5901
Website: www.customs.gov.my
E-mail : cpa@customs.gov.my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No. 3, Persiaran Bukit Kiara, Bukit Kiara
5049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6204 8777
Fax : (603) 6201 5078
Website: www.sc.com.my
E-mail : cau@seccom.com.my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공사
(SME CORPORATION MALAYSIA)**

Level 6, SME 1, Block B
Platinum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2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775 6000
Fax : (603) 2775 6001
Website: www.smecorp.gov.my
E-mail : info@smecorp.gov.my

중소기업은행(SME BANK)

Menara SME Bank 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Malaysia
Tel : 1-800-88-3133
Fax : (603) 26981748
Website: www.smebank.com.my
E-mail : customercare@smebank.com.my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SATION,
SOCSO)**

Menara Perkeso, 281 Jalan Ampang
50538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4264 5000
Fax : (603) 4256 7798
Website: www.perkeso.gov.my
E-mail : perkeso@perkeso.gov.my

TELEKOM MALAYSIA BERHAD

Level 51, North Wing
Menara TM Jalan Pantai Baru
50672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240 1221
Fax : (603) 2283 2415
Website: www.tm.com.my
E-mail : feedback@telekom.com.my

테나가 나쇼날(TENAGA NASIONAL BERHAD)

129, Jalan Bangsar,
592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296 5566
Fax : (603) 2283 3686
Website: www.tnb.com.my
E-mail : ird@tnb.com.my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MITI)

Block 10, Government Office Complex, Jalan Dut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6203 3022 Fax: (603) 6201 2337 / 6203 1303
Website: www.miti.gov.my E-mail: webmiti@miti.gov.my

MITI 해외 지부

벨기에(BELGIUM)

Minister Counsellor (Economy) Mission of Malaysia to the EU Embassy of Malaysia in Belgium Avenue de Tervuren 414A 1150 Brussels Belgium
Tel : (322) 776 0376/762 5939
Fax : (322) 771 2380
E-mail : miti.brussels@skynet.be

중국(CHINA, PEOPLE'S REPUBLIC OF)

Minister Counsellor (Economy) Embassy of Malaysia (Economic Section) No.2 Liang Ma Qiao Bei Jie Chaoyang District, 100600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610) 6532 2533/7990
Fax : (8610) 6532 3617
E-mail : ongcy@miti.gov.my

인도(INDIA, REPUBLIC OF)

Minister Counsellor (Economy) High Commission of Malaysia in New Delhi 50-M, Satya Marg Chanakyapuri New Delhi 110021 Republic of India
Tel : (91- 11) 2611 1297
Fax : (91-11) 2688 2372
E-mail : safinaz@miti.gov.my

인도네시아(INDONESIA)

Counsellor (Economics)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Jalan H.R. Rasuna Said, Kav X6 No.1-3, Kuningan Jakarta 12950 indonesia
Tel : (6221) 522 4947/522 4962
Fax : (6221) 522 4963
E-mail : zulhilmi@miti.gov.my

싱가포르(SINGAPORE)

Counsellor (Economics) Malaysian Trade Commission 80 Robinson Road #01-02 Singapore 068896
Tel : (0265) 6222 1356
Fax : (0265) 6221 5121
E-mail : syedfaizal@miti.gov.my

스위스(SWITZERLAND)

Permanent Representative of Malaysia to the WTO International Centre Cointrin (ICC) 3rd Floor, Block C 20, Route de Pre-Bois Case Postale 1909 CH 1215, Geneva 15 Switzerland
Tel : (4122) 799 4042
Fax : (4122) 799 4041
E-mail : mariam@miti.gov.my

태국(THAILAND)

Counsellor (Economics)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35, South Sathorn Road Tungmahamek, Sathorn Bangkok 10120 Thailand
Tel : (662) 679 2190-9 poste 2303/ 2304/ 2305
Fax : (662) 679 2200
E-mail : ezral@miti.gov.my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Minister Counsellor (Economy) Embassy of Malaysia 3516 International Court NW Washington DC 20008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 (1202) 572 9700/10/34
Fax : (1202) 572 9782/882
E-mail : hairil@miti.gov.my

MIDA 해외사무소

아시아태평양지역 (ASIA-PACIFIC)

싱가포르(SINGAPORE)

Consul (Investment)/Directo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No.7, Temasek Boulevard
26-01,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Tel : (65) 6835 9326/9580/7069
Fax : (65) 6835 7926
E-mail : singapore@mida.gov.my

호주(AUSTRALIA)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evel 6, 16 Spring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 (6102) 9251 1933
Fax : (6102) 9251 4333
E-mail : sydney@mida.gov.my

중국 상하이(CHINA, PEOPLE'S REPUBLIC OF SHANGHAI)

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Unit 807-809, Level 8
Shanghai Kerry Centre
No.1515, Nanjing Road (West)
Shanghai 200040,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621) 6289 4547
Fax : (8621) 6279 4009
E-mail : shanghai@mida.gov.my

광저우(GUANGZHOU)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Unit 1804B-05
CITIC Plaza Office Tower
233 Tianhe Be Road Guangzhou
510610,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620) 8752 0739
Fax : (8620) 8752 0753
E-mail : guangzhou@mida.gov.my

베이징(BEIJING)

Counselor (Investment)/Director
Embassy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Unit C, 12th Floor, Tower A, Gateway Plaza
No. 18, Xiaguangli, East Third Ring North Road
Chaoyang District, 100600 Beijing, China
Tel : (8610) 8440 0071/0072
Fax : (8610) 8440 0076
E-mail : beijing@mida.gov.my

일본(JAPAN)

도쿄(TOKYO)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32F, Shiroyama Trust Tower
4-3-1, Toranomom, Minato-Ku
Tokyo 105-6032, Japan
Tel : (813) 5777 8808
Fax : (813) 5777 8809
E-mail : tokyo@mida.gov.my

오사카(OSAKA)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ainichi Intecio 18-F
3-4-5, Umeda, Kita-ku
Osaka 530-0001, Japan
Tel : (816) 6451 6661
Fax : (816) 6451 6626
E-mail : osaka@mida.gov.my

대한민국(KOREA, REPUBLIC OF)

Counselor (Investment)/Director
Embassy of Malaysia
(Malaysian Trade and Investment Centre)
Level 17,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
Building
47, Jongro, Jongro-gu
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Tel : (822) 733 6130/6131
Fax : (822) 733 6132
E-mail : seoul@mida.gov.my

대만(TAIWAN)

Director (Investment)
Malaysian Friendship & Trade Centre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12F, Suite A, Hung Kuo Building
167, Tun Hua North Road, Taipei
105 Taiwan
Tel : (8862) 2713 5020 / 2718 6094
Fax : (8862) 2514 7581
E-mail : taipei@mida.gov.my

인도(INDIA)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81 & 87, 8th Floor
3rd North Avenue Maker Maxity
Bandra Kurla Complex, Bandra (E)
Mumbai 400051
India
Tel : (9122) 2659 1155/1156
Fax : (9122) 2659 1154
E-mail : mumbai@mida.gov.my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Unit 2205, 22nd Floor, Tower A,
Business Central Tower, Dubai Media City
(P.O. Box 502876) Dubai
United Arab Emirates
Tel : (9714) 4343 696/4343 697
Fax : (9714) 4343 698
E-mail : dubai@mida.gov.my

유럽(EUROPE)

프랑스(FRANCE)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42, Avenue Kleber
75116 Paris, France
Tel : (331) 4727 6696/3689
Fax : (331) 4755 6375
E-mail : paris@mida.gov.my

독일(GERMANY)

프랑크푸르트(FRANKFURT)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evel 9, HAT 64
Bleichstrasse 64-66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 +49 (0) 698700 679-0
E-mail : frankfurt@mida.gov.my

뮌헨(MUNICH)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evel 6, Bürkleinhaus
Bürkleinstrasse 10
80538 Munich, Germany
Tel : (4989) 2030 0430
Fax : (4989) 2030 0431-5
E-mail : munich@mida.gov.my

이탈리아(ITALY)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2nd Floor, via Albricci 9
20122 Milan (MI), Italy
Tel : (3902) 8909 3824
Fax : (3902) 8909 545 418
E-mail : milan@mida.gov.my

스웨덴(SWEDEN)

Economic Counsell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c/o Embassy of Malaysia
Karlavaegen 37
P.O. Box 26053
S-10041 Stockholm, Sweden
Tel : (468) 440 8400 / (468) 440 8416
Fax : (468) 791 8761
E-mail : stockholm@mida.gov.my

영국(UNITED KINGDOM)

Counsellor for Investment/Directo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c/o Embassy of Malaysia
17 Curzon Street
London W1J 5HR
United Kingdom
Tel : (4420) 7493 0616
Fax : (4420) 7493 8804
E-mail : london@mida.gov.my

TÜRKIYE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APA-GIZ Plaza,
Büyükdere Caddesi
No: 191 Level: 12, No:24
34330 Levent-
Istanbul/TÜRKIYE.
Tel : +90212 905 11 00
E-mail : istanbul@mida.gov.my

북아메리카 (NORTH AMERICA)

산호세(SAN JOSE)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226, Airport Parkway, Suite 480
San Jose, CA 95110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 (1408) 392 0617/8
Fax : (1408) 392 0619
E-mail : sanjose@mida.gov.my

시카고(CHICAGO)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John Hancock Centre, Suite 1515
875, North Michigan Avenue
Chicago, IL 60611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 (1312) 787 4532
Fax : (1312) 787 4769
E-mail : chicago@mida.gov.my

뉴욕(NEW YORK)

Consul (Investment)/Directo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Investment Section)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313 East, 43rd Street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 (1212) 687 2491
Fax : (1212) 490 8450
E-mail : newyork@mida.gov.my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MIDA Sentral, No 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 2267 3633 Fax: (603) 2274 7970
Website: www.mida.gov.my E-mail: investment@mida.gov.my

MIDA 주 사무소

케다 & 펠리스(KEDAH & PERLIS)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evel 4, East Wing
No. 88, Menara Bina Darulaman Berhad
Lebuhraya Darulaman
05100 Alor Setar
Kedah, Malaysia
Tel : (604) 731 3978
Fax : (604) 731 2439
E-mail : kedah@mida.gov.my

플라우 피낭(PULAU PINANG)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Unit 14.01, Level 14, Menara Boustead Penang
39, Jalan Sultan Ahmad Shah
10050 Pulau Pinang, Malaysia
Tel : (604) 228 0575
Fax : (604) 228 0327
E-mail : penang@mida.gov.my

페락(PERAK)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4th Floor, Perak Techno Trade Centre (PTTC)
Bandar Meru Raya
Off Jalan Jelapang
P.O. Box 210
30720 Ipoh
Perak, Malaysia
Tel : (605) 5269 962/961
Fax : (605) 5279 960
E-mail : perak@mida.gov.my

멜라카(MELAKA)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3rd Floor, Menara MITC Kompleks MITC
Jalan Konvensyen
75450 Ayer Keroh
Melaka, Malaysia
Tel : (606) 232 2877
Fax : (606) 232 2875
E-mail : melaka@mida.gov.my

네게리 쎬빌란(EGERI SEMBILAN)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Suite 13.01 & 13.02
13th Floor Menara MAA
70200 Seremban
Negeri Sembilan, Malaysia
Tel : (606) 762 7921
Fax : (606) 762 7879
E-mail : nsembilan@mida.gov.my

조호르(JOHOR)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No. 5, Level 13, Menara Tabung Haji
Jalan Ayer Molek
80000 Johor Bahru
Johor, Malaysia
Tel : (607) 224 2550/5500
Fax : (607) 224 2360
E-mail : johor@mida.gov.my

파항(PAHANG)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Suite 3, 11th Floor Kompleks Teruntum
P.O.Box 178,
25720 Kuantan
Pahang, Malaysia
Tel : (609) 513 7334
Fax : (609) 513 7333
E-mail : pahang@mida.gov.my

켈란탄(KELANTAN)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Aras 5-C, Menara Pejabat Kelantan Trade Centre
Jalan Bayam
15000 Kota Bharu
Kelantan, Malaysia
Tel : (609) 748 3151
Fax : (609) 744 7294
E-mail : kelantan@mida.gov.my

셀랑고르(SELANGOR)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22nd Floor, Wisma MBSA Persiaran
Perbandaran
40000 Shah Alam
Selangor, Malaysia
Tel : (603) 5518 4260
Fax : (603) 5513 5392
E-mail : selangor@mida.gov.my

테렝가누(TERENGGANU)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5th Floor, Menara Yayasan islam Terengganu
Jalan Sultan Omar
20300 Kuala Terengganu
Terengganu, Malaysia
Tel : (609) 622 7200
Fax : (609) 623 2260
E-mail : terengganu@mida.gov.my

사바주(SABAH)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Lot D9.4 & D9.5, 9TH Floor
Block D, Bangunan KWSP Karamunsing
88100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Tel : (6088) 211 411
Fax : (6088) 211 412
E-mail : sabah@mida.gov.my

사라왁주(SARAWAK)

Director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Room 404, 4th Floor, Bangunan Bank Negara
No.147, Jalan Satok, P.O.Box 716
93714 Kuching
Sarawak, Malaysia
Tel : (6082) 254 251 / 237 484
Fax : (6082) 252 375
E-mail : sarawak@mida.gov.my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TRADE)

Menara MATRADE, Jalan Sultan Haji Ahmad Shah, Off Jalan Tuanku
Abdul Halim, 5048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6207 7077

Fax: (603) 6203 7037

Toll Free: 1800-88-7280

Website: www.matrade.gov.my

E-mail: info@matrade.gov.my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MATRADE) 해외사무소 호주(AUSTRALIA)

Trade Commissioner
Trade Section (MATRADE)
Level 7, 432 St. Kilda Road
Melbourne 3004, Victoria, Australia
Tel : (613) 9832 8600
Fax : (613) 9832 8610
E-mail : melbourne@matrade.gov.my

아시아(ASIA) 동아시아(EAST ASIA)

중국(CHINA, PEOPLE'S REPUBLIC OF)
BEIJING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
Unit E, 11th Floor, Tower B, Gateway
Plaza No. 18, Xiaguangli
North Road Dongsanhuan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610) 8451 5109/ 5110/ 5113
Fax : (8610) 8451 51123
E-mail : beijing@matrade.gov.my

청두(CHENGDU)
Trade Commissioner
マレーシア貿易開発公社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Chengdu Representative Office)
Level 14, Unit 1402 - 1404
The Office Tower, Shangri-La Centre
9 Binjiang Road (East)
Chengdu 610021, Sichuan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628) 6687 7517
Fax : (8628) 6687 7524
E-mail : chengdu@matrade.gov.my

광저우(GUANGZHOU)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Unit 2009 - 2010, 20th Floor, Central Tower
No. 5 Xiancun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510623 Guangdong Provinc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620) 3877 3865
Fax : (8620) 3877 3985
E-mail : guangzhao@matrade.gov.my

홍콩(HONG KONG)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1901, 19th Floor, Malaysia Building
50 Gloucester Road, Wanchai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52) 2527 8109
Fax : (852) 2804 2866
E-mail : hongkong@matrade.gov.my

상하이(SHANGHAI)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Unit 807-809, Level 8
Shanghai Kerry Centre
No. 1515 Nan Jing Road (West)
Shanghai, 200040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 (8621) 6289 4420/4467
Fax : (8621) 6289 4381
E-mail : shanghai@matrade.gov.my

대만(TAIWAN)

Trade Commissioner
Malaysian Friendship & Trade Centre
(Trade Section)
10F-D, Hung Kuo Building
No. 167 Dun Hua North Road
Taipei 105, Taiwan
Tel : (8862) 2545 2260
Fax : (8862) 2718 1877
E-mail : taipei@matrade.gov.my

일본(JAPAN)

도쿄(TOKYO)
マレーシア貿易開発公社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 8-14-14
銀座昭和通りビル 6階
Tel : (813) 3544 0712/0713
Fax : (813) 3544 0714
E-mail : tokyo@matrade.gov.my

오사카(OSAKA)

Marketing Officer
マレーシア貿易開発公社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530-0001 大阪市北区梅田3-4-5
☒日インテシオ18階
Tel : (816) 6451 6520
Fax : (816) 6451 6521
E-mail : osaka@matrade.gov.my

대한민국(KOREA, REPUBLIC OF)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Malaysian Trade and Investment Centre)
17th Floor,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mited Building
47, Chongro, Chongro-gu
Seoul, 03160 Republic of Korea
Tel : (822) 739 6813/6814
Fax : (822) 739 6815
E-mail : seoul@matrade.gov.my

SOUTH ASIA

인도(INDIA)

첸나이(CHENNAI)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Capital 2A, 2nd Floor, 554 & 555, Anna Salai
Teynampet, Chennai 600018
India
Tel : (9144) 2431 3722/3724
Fax : (9144) 2431 3725
E-mail : chennai@matrade.gov.my

뭄바이(MUMBAI)

Consul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MATRADE)
Suite 301, 3rd Floor, Naman Centre
Block G, Bandra Kurla Complex, Bandra (E)
Mumbai 400051, India
Tel : (9122) 2659 7272/7273
Fax : (9122) 2659 7274
E-mail : mumbai@matrade.gov.my

동남아시아(SOUTH EAST ASIA)

캄보디아(CAMBODIA)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No. 220-222, Preah Norodom Boulevard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rmor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 2372 1224
Fax : (855) 2372 1225
E-mail : phnompenh@matrade.gov.my

인도네시아(INDONESIA)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マレーシア貿易開発公社
12th Floor, Plaza Mutiara
Jl. Lingkar Kuningan
Kav. E.1.2. No1 & 2, Kawasan Mega Kuningan
Jakarta 12950, Indonesia
Tel : (6221) 576 4297/4322
Fax : (6221) 576 4321
E-mail : jakarta@matrade.gov.my

필리핀(PHILIPPINES)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Level 4, Canseri Building
107, Tordesillas Stree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Tel : (632) 8662 8270
Fax : (632) 8662 8271
E-mail : manila@matrade.gov.my

태국(THAILAND)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and Investment Office
4th Floor, Unit 401
Sathorn Square Office Tower
98, North Santhorn Road
Khwaeng Silom
Khet Bang Rak
Krung Thep Maha Nakhon
10500 Bangkok
Tel : (662) 2108 1792/1793/1794
Fax : (662) 2108 1795
E-mail : bangkok@matrade.gov.my

베트남(VIETNAM)

ホーチミン市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Trade Section)
1206-1207, 12th Floor, Me Linh Point Tower
2, Ngo Duc Ke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28) 3822 1468
Fax : (8428) 3823 1882
E-mail : hcmc@matrade.gov.my

하노이(HANOI)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45-46 Dien Bien Phu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 (8424) 3734 7521
Fax : (8424) 3734 7520
E-mail : hanoi@matrade.gov.my

미얀마(MYANMAR)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No. 82, Pyidaungsu Yeiktha Road
Dagon Township, 11191 Yangon
Myanmar
Tel : (951) 230 1951/1952
Fax : (951) 230 1954
E-mail : yangon@matrade.gov.my

서아시아(WEST ASIA)

사우디(SAUDI ARABIA)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No. 5 & 7, 14th Floor
Saudi Business Centre
Madina Road, P.O.Box 20802
Jeddah 21465
Saudi Arabia
Tel : (96612) 653 2143/2198
Fax : (96612) 653 0274
E-mail : jeddah@matrade.gov.my

카타르(QATAR)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Office No. 939, 9th Floor
Al Fardan Office Tower
PO Box 31316, West Bay
Doha, Qatar
Tel : (9744) 4410 1604
Fax : (9744) 4410 1605
E-mail : doha@matrade.gov.my

아랍 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Malaysia Trade Centre
c/o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Lot 1-3 Ground Floor &
6-10 Mezzanine Floors
Al-Safeena Building Near Lamcy Plaza
Zaabeel Road P.O.Box 4598, Dubai
United Arab Emirates
Tel : (9714) 335 5528
Fax : (9714) 335 2220
E-mail : dubai@matrade.gov.my

유럽(EUROPE)

프랑스(FRANCE)

Trade Commissioner
Service Commercial De Malaisie
De L' Ambassade De Malaisie
90, Avenue Des Champs Elysees
75008 Paris
France
Tel : (331) 4076 0000/0034
Fax : (331) 4076 0001
E-mail : paris@matrade.gov.my

독일(GERMANY)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of Malaysia (Trade Section)
Level 9, HAT 64
Bleichstrasse, 64 - 66,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 49 (0) 69 247 5015 - 10
Fax : 49 (0) 69 247 5015 - 20
E-mail : frankfurt@matrade.gov.my

헝가리(HUNGARY)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Hazman utca 8
1026 Budapest, Hungary
Tel : (361) 461 0290
Fax : (361) 461 0291
E-mail : budapest@matrade.gov.my

이탈리아(ITALY)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of Malaysia
Via Albricci 9
20122 Milan
Italy
Tel : (3902) 669 81839
Fax : (3902) 670 2872
E-mail : milan@matrade.gov.my

네델란드(THE NETHERLANDS)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Rustenburgweg 2
2517 KE The Hague
The Netherlands
Tel : (3110) 4627 759
Fax : (3110) 4627 349
E-mail : rotterdam@matrade.gov.my

러시아(RUSSIA)

Trade Commissioner
The Embassy of Malaysia (Trade Section)
2nd Floor, R01-209
Dobrynya Business Centre
#8, 4th Dobryninskiy per.
119409 Moscow, Russian Federation
Tel : (7495) 933 5626/5636
Fax : (7495) 933 5646
E-mail : moscow@matrade.gov.my

터키(TURKEY)

Trade Commissioner
Matrade Istanbul
No.76, 20th Floor, Buyukdere Caddesi
Maya Akar Center Plaza,
34394 Esentepe Istanbul
Turkey
Tel : (90212) 217 8003
Fax : (90212) 217 8005
E-mail : istanbul@matrade.gov.my

폴란드(POLAND)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Premises 3, 9th Floor
Zlote Tarasy Tower
59, Zlota Street
00-120, Warsaw
Republic of Poland
Tel : (4822) 222 1765/1766
Fax : (4822) 222 1764
E-mail : warsaw@matrade.gov.my

영국(UNITED KINGDOM)

Trade Commissioner
Malaysian Trade Commission
3rd & 4th Floor, 17 Curzon Street London W1J
5HR United Kingdom
Tel : (4420) 7499 5255/4644
Fax : (4420) 7499 4597
E-mail : london@matrade.gov.my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Trade Commissioner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777 South South Figueroa Street, Suite 600
Los Angeles, CA 90071
アメリカ合衆国
Tel : (1213) 892 9034
Fax : (1213) 955 9142
E-mail : losangeles@matrade.gov.my

뉴욕(NEW YORK)

Trade Commissioner/Consul Commercial
Consulate General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3rd Floor, 313 East, 43rd Street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 (1212) 682 0232
Fax : (1212) 983 1987
E-mail : newyork@matrade.gov.my

마이애미(MIAMI)

Director
Malaysia Trade Centre
703 Waterford Way, Suite 150
Miami, Florida 33126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 (1305) 267 8779
Fax : (1305) 267 8784
E-mail : miami@matrade.gov.my

남아메리카 - 라틴아메리카(SOUTH MERICA - LATIN AMERICA)

아르헨티나(ARGENTINA)

Marketing Offic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MATRADE)
Villanueva 1040
C1426BMD Buenos Aires
Republic of Argentina
Tel : (54) 11 4776 0504/2533
Fax : (54) 11 4776 0604
E-mail : buenosaires@matrade.gov.my

칠레(CHILE)

Trade Commissioner
Oficina Commercial de Malasia
Embajada De Malasia
Avda Tajamar 183
Oficina 302, Las Condes
Santiago, Chile
Tel : (5622) 234 2647
Fax : (5622) 234 2652
E-mail : santiago@matrade.gov.my

브라질(BRAZIL)

Trade Commissioner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771, Alameda Santos, Suite 72
7th Floor, 01419-001, Sao Paulo
Brazil
Tel : (5511) 3285 2966
Fax : (5511) 3289 1595
E-mail : saopaulo@matrade.gov.my

멕시코(MEXICO)

Trade Commissioner
MATRADE Mexico City
Embassy of Malaysia (Trade Office)
Paseo de Las Palmas # 425
Torre Optima 3, Office 1102
Col. Lomas de Chapultepec
Del. Miguel Hidalgo, C.P. 11000
Mexico City, Mexico
Tel : (5255) 5201 4540
Fax : (5255) 5202 7338
E-mail : mexicocity@matrade.gov.my

아프리카(AFRICA)

이집트(EGYPT)

Embassy of Malaysia
Commercial Section (MATRADE)
21, El-Aanab Street
Level 2, Mohandessine, Giza
Arab Republic of Egypt
Tel : (202) 376 10013
Fax : (2012) 376 10216
E-mail : cairo@matrade.gov.my

케냐(KENYA)

Marketing Office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Trade Section (MATRADE)
Block 91/404, Gigiri Groove
P.O Box 42286
00100, Nairobi
Kenya.
Tel : (25420) 712 0915
Fax : (25420) 712 0916
E-mail : nairobi@matrade.gov.my

남아프리카(SOUTH AFRICA)

Trade Commissioner
High Commission of Malaysia
Economic Office (MATRADE)
8th Floor, Sandton City Office Tower
Cnr Rivonia Road and 5th Street
Sandhurst Ext 3
Sandton, Johannesburg
Republic of South Africa
Tel : (2711) 268 2380/2381
Fax : (2711) 268 2382
E-mail : johannesburg@matrade.gov.my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 주 사무소

남부지역사무소(Southern Regional Office)

Director
Matrade Southern Regional Office
Suite 6B, Level 6
Menara Ansar, 65 Jalan Trus
80000 Johor Bahru, Johor, Malaysia
Tel : (607) 222 9400
Fax : (607) 222 9500
E-mail : johor@matrade.gov.my

북부지역사무소(Northern Regional Office)

Director
Matrade Northern Regional Office
Bangunan KWSP, Ground Floor
No. 3009, Off Lebuhr Tenggiri 2
13700 Bandar Seberang Jaya
Pulau Pinang
Tel : (604) 398 2020
Fax : (604) 398 2288
E-mail : penang@matrade.gov.my

동부지역사무소(Eastern Regional Office)

Director
Matrade Eastern Regional Office
Level 5, Menara Yayasan Islam Terengganu
Jalan Sultan Omar
20300 Kuala Terengganu
Terengganu, Malaysia
Tel : (609) 624 4778/6778
Fax : (609) 624 0778
E-mail : terengganu@matrade.gov.my

사라왁주(SARAWAK)

Matrade Sarawak Office
Level 10, Menara Grand
Lot 42, Section 46, Ban Hock Road
93100 Kuching
Sarawak, Malaysia
Tel : (6082) 246 780
Fax : (6082) 256 780
E-mail : sarawak@matrade.gov.my

사바주(SABAH)

Director
Matrade Sabah Office
Lot C5.2A, Tingkat 5, Block C
Bangunan KWSP, Jalan Karamunsing
88100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Tel: (6088) 240 881/ 242 881
Fax: (6088) 243 881
E-mail : sabah@matrade.gov.my

부록 I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I. 농업 생산

1. 화해원에

II. 농업 생산물의 가공

1. 초콜릿과 초콜릿 제과점
2. 야채, 덩이줄기 또는 뿌리 & 과일
3. 축산 제품
4. 농업 폐기물 또는 농업 부산물
5. 수경 제품
6. 수경 사료
7. 의료, 향수, 화장품 또는 식품 산업과 에센셜 오일을 위한 식물 추출물
8. 보조 식품
9. 첨가제, 향, 채색 및 기능성 성분

III. 고무 제품의 제조

1. 땅 고르는 기계, 농업 차량, 공업 차량, 상업용 차량, 모터사이클 및 항공기용 타이어
2. 라텍스 제품
 - a) 안전 또는 특수 기능 장갑
3. 건식 고무 제품
 - a) 벨트류
 - b) 호스, 배관 및 튜브
 - c) 고무 프로파일
 - d) 싼, 가스켓, 와셔, 패킹, 링 및 고무 라이닝
 - e) 방진, 제동 및 소리 절연 제품

IV. 팜오일 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1. 유지화학제품 또는 유지화학제품의 파생품 또는 제재
2. 팜 기반 건강기능식품, 팜오일 구성품 또는 팜핵유
3. 팜 기반 식품 및 성분
 - a. 특수 동물 지방 대체물질
 - b. 팜 기반 마요네즈 및 샐러드 드레싱
 - c. 우유 또는 코코넛 가루 대체품
 - d. 레드팜오일 및 관련 제품
 - e. 팜 기반 식품 성분
 - f. 변형 팜오일 및 팜핵유 제품
 - g. 마가린, 바나스파티, 쇼트닝 또는 기타 제조 지방 제품
 - h. 코코아 버터 대체재료, 코코아 버터 대용재료, 코코아 버터 동등품, 팜중부유 (palm mid fraction, PMF) 또는 특수 올레인(olein)
4. 다음의 가공 제품
 - a. 팜핵 과자
 - b. 팜오일 추출공정 폐수(palm oil mill effluent)
 - c. 팜 바이오매스

V. 화학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1. 유기물 또는 무기물의 화학적 파생품 또는 제재
2. 석유화학 제품

VI. 의약품과 관련 제품의 제조

1. 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
2. 건강기능식품
3. 미생물제와 생균제

VII. 목재 기반 제품의 제조

1. 목재 가구의 디자인, 개발 및 생산
2. 합판을 제외한 가공 목재 제품

VIII.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조

1. 골심지, 테스트라이너 또는 크라프트라이너 또는 크라프트지 및 판지

IX. 케나프 기반 제품의 제조

1. 동물, 사료, 케나프 입자 또는 섬유, 재생 패널 판지 또는 제품(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MDF)) 및 몰드 제품과 같은 케나프 기반 제품

X. 섬유 및 섬유 제품의 제조

1. 천연 또는 인공 섬유
2. 천연 또는 인공 섬유사
3. 직물
4. 편직물
5. 부직포
6. 표백, 염색 및 나염과 같은 직물의 마무리작업
7. 특수 의류
8. 산업용 또는 기능성 섬유 및 섬유 제품

XI. 점토 기반, 모래 기반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의 제조

1. 고알루미눔 또는 기본적 내화제품
2. 실험실용, 화학적 또는 산업용 제품
3. 합성다이아몬드
4. 벽돌, 타일, 슬래브, 펠릿, 보도블록과 벽돌 같은 결정화 또는 성형 유리 제품
5. 흡수성이 좋은 광물성 점토
6. 대리석 및 화강암 제품
7. 시멘트, 플라스터 또는 기타 광물성 결합재료 응집시킨 천연 및 합성 섬유의 패널, 보드, 타일, 블록 또는 유사한 물품

XII. 철강 제조

1. 강철 블룸 또는 슬래브
2. 200mm를 초과하는 높이의 형강 또는 단면 형강
3. 후판, 강판,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 a) 열간압연
 - b) 냉간압연 또는 냉간환원
4. 무계목 강관
5. 망간철, 규소망간 또는 규소철
6. 전기아연도금 강대

XIII. 비철금속 및 그 제품의 제조

1. 주석을 제외한 주괴, 빌릿 또는 슬래브 등 1차 비철금속
2. EC 구리 봉을 제외한 비철금속 바, 봉, 형재 또는 단면형재
3. 비철금속 후판, 판재, 코일, 후프 또는 스트립
4. 비철금속 배관 또는 튜브
5. 알루미늄 복합패널

XIV. 기계류 및 기계류 구성품의 제조

1. 특정 산업용 특수 기계류 또는 장비
2. 발전 기계류 또는 장비
3. 일반 산업용 기계류 또는 장비
 4. 기계류 또는 장비의 모듈 및 공업용 부품 또는 구성품
5. 금속가공 기계류 또는 장비
6. 중장비를 포함한 기계류 또는 장비의 개량 또는 수리

XV. 지원 제품 또는 서비스

1. 금속 구조
2. 금속 단조
3. 표면 공학
4. 기계 가공, 지그 및 고정구
5. 몰드, 공작기계 및 다이
6. 열처리

XVI. 전기 전자 제품과 그 구성품 및 부품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

1. 반도체
 - a) 웨이퍼 가공
 - b) 반도체 조립
 - c) 반도체 구성품과 부품
 - i) 고급 기관
 - ii) 납땜 재료
 - iii) 결합 패드
 - d) 반도체 틀
 - i) 웨이퍼 캐리어
 - ii) 집적회로(IC) 캐리어
 - iii) 포토마스크 및 마스크 블랭크
 - e) 반도체 관련 서비스
 - i) 다이 또는 웨이퍼 제조
 - ii) 집적회로(IC) 검사
 - iii) 웨이퍼 프로빙(probing) 또는 분류(sorting)
 - iv) 웨이퍼 범핑(bumping)
2.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및 부품
 - a) 고급 디스플레이 제품
 - b) 고급 디스플레이 모듈
 - c) 백라이트(backlighting) 시스템
3.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시스템 또는 장치
 - a) 디지털 통합 제품 또는 장치
 - b) 데이터 저장 시스템 또는 장치

4.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포테인먼트 제품
 - a) 디지털 TV
 - b) 디지털 홈시어터 시스템 또는 그 제품
 - c)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또는 영상 녹화장치 또는 재생장치
5. 광전자 장비,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 a) 광자(photonics) 장치 또는 구성품
 - b) 광전자 장비 또는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 c) 광섬유 또는 광섬유 제품
6. 전자 추적 또는 보안 시스템 또는 장치
 - a) 음성 또는 패턴 또는 시각 인식 또는 합성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 b) 전자 내비게이션 및 추적 장비 또는 시스템 또는 장치
 - c)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 또는 장치
7. 전자 구성품
 - a) 다층 또는 연성 인쇄회로기판
 - b) 고급 커넥터
8. 대체에너지 장비, 제품,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
 - a) 태양 전지 또는 패널 또는 모듈 또는 시스템
 - b) 충전식 배터리 또는 저장 시스템
 - c) 연료 전지
9. 에너지 절약 조명
10. 전기 제품
 - a)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 b) 인버터 또는 컨버터

XVII. 전문, 의료, 과학 및 측정 장치 또는 부품의 제조

1.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수의과 장치 또는 장비 및 부품 또는 구성품 또는 그 부속품
2. 검사, 계측 또는 실험 장비 또는 기구

XVIII.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1. 특수 플라스틱 필름 또는 시트
2. 지구환경시스템 제품
3.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4. 클린룸 환경에서 성형된 제품
5. 생체고분자(biopolymer) 또는 그 제품

XIX. 보호 장비 및 장치

1. 코팅 또는 편직 안전장갑
2. 고급 방탄 유리
3. 추락 보호 장비

XX. 제조 관련 서비스

1. 통합 물류 서비스
2. 식품 저온 유통 시설 및 서비스
3. 가스 및 방사선 멸균 서비스
4. 환경 관리
 - a) 다음과 같은 폐기물 재활용
 - i) 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
 - ii) 화학물질
 - iii) 재생고무
5. 산업디자인 서비스

XXI. 호텔업과 관광산업

1. 중저가 호텔의 건립(3성급 이하)
2. 4-5성급 호텔의 건립
3. 기존 호텔의 확장 또는 현대화
4. 관광 프로젝트의 구축
5. 관광 프로젝트의 확장 또는 현대화
6. 휴양 캠프의 설치
7. 컨벤션센터의 건립

XXII. 기타

1. 스포츠 용품 또는 장비
2. 귀금속 보석
3. 모조 보석류
4. 생분해성 1회용 포장재 및 가정용품

부록 II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I. 첨단 전자제품 및 컴퓨터의 설계, 개발 및 제조

1. 다음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a) 고밀도 모듈 또는 시스템
 - b) 첨단 디스플레이
 - c) 첨단 반도체 장치
 - d) 고급 커넥터
 - e)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시스템
 - f) 고급 기관
 - g) 정보통신 제품, 시스템 또는 장치
 - h)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포테인먼트 제품
 - i) 광전자 장비, 시스템 또는 장치
 - j) 전자 보안 및 감시 시스템 또는 장치
 - k) 전자 기계, 장비, 시스템 또는 장치
 - l) 첨단 전자 구성품

II. 전문, 의료, 과학 및 계측 장치 또는 부품

1. 다음의 설계, 개발 및 제조
 - a) 의료 장비, 부품 또는 구성품
 - b) 의료용 임플란트, 의료 장치, 부품 또는 구성품
 - c) 검사, 계측 또는 실험 장비 또는 기구

III. 생명공학

1. 다음의 개발, 시험 및 제조
 - a) 의약품
 - b) 정밀 화학제품
 - c) 생체진단(biodiagnostics)

IV. 첨단 소재

1. 다음의 개발 및 제조
 - a) 폴리머 또는 바이오폴리머
 - b) 파인 세라믹스 또는 첨단 세라믹스
 - c) 고강도 복합재료
2. 나노 입자 및 나노 입자 조성물

V. 대체 에너지 기술

1. 대체 에너지 부문에서 사용할 제품, 장비, 시스템, 장치 또는 구성품의 설계, 개발 및 제조

VI. 철강

1. 직경 2.0mm 이하의 초정밀 와이어

부록 III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I 농업 활동

1. 수산 양식
2. 양봉

II 농업 생산물의 가공

1. 커피
2. 차
3. 과일
4. 약재
5. 허브 또는 향신료
6. 코코아 및 코코아 제품
7. 코프라(copra) 및 미가공 코코넛유를 제외한 코코넛 제품
8. 전분 및 전분 제품
9. 곡물 제품
10. 설탕 및 제과류
11. 식물 추출물
12. 양봉 제품
13. 동물 사료 성분

III 임업 제품

1. 등나무(rattan) 제품(등나무대, 꺾질과 토막 제외)
2. 대나무 제품
3. 기타 임업 제품

IV 고무 제품의 제조

1. 고무 몰딩 제품
2. 사출성형 고무 제품
3. 일반 고무 제품

V 오일 팜 제품 및 그 파생품의 제조

1. 팜오일 가공 제품
2. 팜 바이오매스/폐기물/부산물 가공 제품

VI 화학제품과 의약품의 제조

1. 안료 제재, 분산제 및 특수 코팅제
2. 건조제
3. 바이오 수지(생체 고분자)
4. 잉크젯 잉크

VII 목재 및 목제품의 제조

1. 장식용 패널 보드(일반 합판 제외)
2. 목재 몰딩
3. 건축용 목공품 및 목공업(joinery)
4. 목재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예컨대, 활성탄, 숯, 나무섬유)
5. 가정용 및 사무용 목재용품

VIII 종이 및 판지 제품의 제조

1. 성형 종이 제품

IX 섬유 및 섬유 제품의 제조

1. 바틱(batik) 또는 송켓(songket) 또는 푸아(pua)
2. 섬유산업용 액세서리

X 점토 기반 및 모래 기반 제품과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의 제조

1. 세라믹 또는 유리의 공예품, 장식품 및 장신구
2. 연삭, 광택 및 뾰족하게 만들기 위한 연마제

XI 철강 제품, 비철 금속 및 그 제품의 제조

1. 와이어 및 와이어 제품
2. 조립 제품

XII 지원 제품 및 서비스

1. 금속 스탬핑
2. 산업용 씰링 자재(seal) 또는 씰링 재료

XIII 수송 구성품, 부품 및 부속자재의 제조

1. 수송 구성품, 부품 및 부속자재

XIV 기계류와 장비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

1. 기계류와 장비 부품 및 구성품

XV 전기전자 제품, 구성품 및 그 부품의 제조

1. 소비자 전기 제품, 부품 및 구성품
2. 전자 제품, 부품 및 구성품
3. 산업용 전기 제품, 부품 및 구성품
4. 산업용 전자 제품, 부품 및 구성품

XVI 가구, 부품 및 구성품의 제조

1. 가구, 부품 및 구성품

XVII 게임 및 부속자재의 제조

1. 게임 및 부속자재

XVIII 기념품의 제조

1. 기념품, 선물용품 미 장식용품

XIV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1. 장식 패널 및 장식품
2. 에폭시 캡슐 성형 화합물

부록 IV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I. 기계류 및 장비

1. 공작 기계
2. 자재 취급 장비
3. 로봇과 공장 자동화 장비
4. 공작 기계, 자재 취급 장비 및 로봇과 공장 자동화 장비용 모듈 및 구성품

II. 특수 기계류 및 장비

1. 특수 산업용 특수 공정 기계 또는 장비
2. 포장 기계류
3. 특정 산업과 포장 기계류용 특수 공정 기계류 또는 장비를 위한 모듈 및 구성품

III. 오일 팜 바이오매스

1.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 생산

IV. 재생 에너지

1. 재생 에너지 생산

V. 에너지 보존

1. 에너지 보존

부록 V

1986년 투자촉진법에 따라
개척자 지위 및
투자세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권장 활동 및 제품 목록

I. 자원 기반

1. a) 고무
b) 오일 팜
c) 목재

II. 식품 가공

1. 식품 가공 활동

III. 연구 및 개발 활동

1. 연구 및 개발 활동

IV. 호텔업과 관광산업

1. 호텔업과 관광산업

V. 오일 팜 바이오매스

1.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부가가치 제품 생산

VI. 저온유통 시설과 서비스

1. 소멸할 수 있는 농업 생산물(과일, 야채, 꽃, 고사리류, 육류 및 수경 제품)용 저온유통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Published by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Sentral

No.5,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 2267 3633

Fax : (603) 2274 7970

Website : www.mida.gov.my

E-mail : investment@mida.gov.my

2021 EDITION